



제5부 만화 정책 동향

제1장 만화산업 법제도 및 지원정책 현황

제2장 해외 만화산업 정책 동향

제1장 문화산업 법제도 및 지원정책 현황

제1절 문화산업 관련 법제도 동향

문화산업과 관련된 법률은 크게 문화산업을 진흥하는 법률, 문화산업과 관련된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 그리고 이를 규제하는 법률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문화산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등에 의하여 진흥되고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청소년보호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규제를 받는다.

1. 진흥목적의 법제도

1)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문화산업이 국가의 주요 전략산업으로 부각됨에 따라 그간 개별 법제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던 지원으로는 미흡하여, 문화산업의 지원 및 진흥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문화산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본 법은 제1조 '목적' 규정에서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지원 내용을 마련하고 있다. 주의하여야 할 것은 문화상품을 통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산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는 점이다. 즉 문화내지 문화예술을 진흥하는 목적이라기보다는 경제적인 가치를 지는 문화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법은 2002년과 2006년 개정을 거쳐 2009년에는 완성보증제도 도입, 공정 거래질

서의 구축을 위한 조치, 콘텐츠 가치평가 제도 도입,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의 창작전담부서 인정제도를 도입,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등 대폭적인 개정이 있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완성보증계정의 설치에 대해서 규정하였다(법 제10조의2). 문화상품 제작의 완성은 불확실성이 높아 제작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투자 또는 용자를 받는 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문화상품 제작 완성에 대한 위험도를 낮추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상품 제작자가 문화상품을 유통하는 자에게 계약의 내용대로 완성하여 인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아 부담하게 된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완성보증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문화상품 투자위험도의 감소에 따라 투자환경 조성 및 문화상품 제작 회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공정 거래질서의 구축을 위한 조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법 제12조의2). 영화, 방송, 온라인콘텐츠, 모바일콘텐츠 등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 있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문화산업 영위와 관련한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제·개정할 수 있게 하고,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문화콘텐츠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다(법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문화상품에 대한 우수한 제작프로젝트 및 우수 문화상품 제작자를 선택적으로 육성·발굴하여 경쟁력 있는 문화상품을 적극 개발하고 독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창작성 및 성공 가능성이 높은 문화상품 제작 프로젝트를 우수문화프로젝트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문화상품 제작자 및 기술 개발자를 우수문화사업자로 각각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다(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 까지 신설). 무형자산인 문화콘텐츠는 객관적 가치의 산정이 어려워 우수문화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조달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문화상품의 사업성과 문화기술의 기술성에 관한 가치평가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치평가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가치평가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비용을 지원하거나 가치평가를 받은 자에게 가치평가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투자자 등에게 문화콘텐츠 가치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의 창작전담부서의 인정에 대하여 신설 하였다(법 제17조의3). 문화산업 발전에 있어 창조성이 중요하나, 기업의 창작개발력을 축적시킬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한 실정이다. 문화산업에 대한 창작개발을 활성화하기 위

하여 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을 갖춘 기업의 연구기관이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의 창작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창작중소기업의 합병절차 간소화에 대하여 규정하였다(법 제17조의4 신설). 창작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략적 제휴 등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기업부설창작연구소를 보유한 주식회사인 비상장 중소기업(창작중소기업)을 주식회사인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보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합병절차 간소화 등의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는 문화콘텐츠를 창작하는 중소기업 간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기업의 대형화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투자금 회수 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곱째, 문화산업진흥지구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간주하도록 하였다(법 제28조의3제3항). 문화산업의 지역별 성장거점을 구축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이 활성화되어야 하나, 문화산업진흥시설과 달리 문화산업진흥지구에 대한 유인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문화산업진흥지구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보고 간접적으로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여덟째,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에 대하여 규정하였다(법 제31조).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에 따라 다수의 콘텐츠 진흥 관련기관을 하나로 통합하여 문화산업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법정법인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재단법인인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을 통합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콘텐츠산업진흥법

이 법은 2002년 제정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이 2010년 5월 19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명칭이 「콘텐츠산업진흥법」으로 바뀐 것이다. 이 법은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은 콘텐츠, 콘텐츠산업, 콘텐츠제작자 등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콘텐츠산업 진흥과 관련하여서 범정부적인 콘텐츠산업 진흥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콘텐츠산업진흥을 위하여 3년마다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콘텐츠 제작의 활성화를 비롯하여 콘텐츠의 유통 합리화를 위하여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진·콘텐츠 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콘텐츠 식별체계와 관련하여서는 독립조항으로 재편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콘텐츠산업 유통환경의 현황분석과 평가를 할 수 있는 등 콘텐츠 유통사업자 등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통한 제작자 보호를 위한 조항이 개선되어 정보통신망사업자가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콘텐츠를 유통서비스 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각종 사업의 실시, 청약철회, 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콘텐츠사업자 간,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설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분쟁조정의 효력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하였다.

3)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법률과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 관한 법률이 통합되어 2002년에 제정된 출판 및 인쇄 진흥법이 2007년 7월 출판 및 인쇄 진흥법에서 인쇄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을 따로 제정함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으로 변경하고, 관련 규정이 정비되었다.

위 법률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출판문화산업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양서출판의 장려·지원, 국제교류의 지원 등 진흥시책을 매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간행물의 유통질서 정착을 위하여 간행물을 출판하는 자는 도서관법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때에는 이를 당해 출판물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 확충과 단지 조성에 관하여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배포를 목적으로 만화를 비롯한 소설·사진집·화보집·잡지나 북한에서 출판한 간행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수입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출판사 등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유지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건전한 출판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불법복제 간행물 및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수거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과거 5년 한시조항인 도서정가제의 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도서정가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서정가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정가제 적용기간을 간행물의 발행일부 1년에서 18개월로 확대하되, 도서 정가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할인하여 판매 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인쇄문화산업진흥법

2007년 7월 “출판 및 인쇄 진흥법”에서 인쇄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을 따로 제정된 본 법은 인쇄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쇄문화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인쇄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쇄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며,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인쇄기술의 연구·개발, 인쇄물 제작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인쇄문화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쇄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쇄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인쇄사를 경영하려는 자는 인쇄사의 명칭·소재지와 경영자의 주소·성명을 그 인쇄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인쇄사 신고 제도를 두었다.

2. 보호목적의 법제도

1) 저작권법

가. 개요

저작권법은 창작행위에 대한 보호체계를 형성해온 것이었기 때문에 창작성 있는 콘텐츠 제작자들의 보호법제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저작권법은 ‘창작성’ 있는 저작물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창작성이 없는 비저작물 또는 저작권법상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경우는 동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03년과 2006년 전면적인 개정이 있었고, 2009년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 저작권법에 통합되었으며,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자의 개인 계정의 정지를 명하고, 전송된 불법복제물을 게시하는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나. 주요 내용

(1) 개관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만화 저작자의 저작자 보호,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보호, 비영리목적의 공연방송, 사적 복제 등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공정 이용부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권리보호와 공정한 이용이라는 저작권법의 두 가지 축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문화발전의 목적을 이루게 된다 할 것이다.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창작성 있는 저작물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작물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 :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독창적으로 만들어진 만화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된다. 만화의 글 부분은 어문저작물로, 그림 부분은 미술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작물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저작권법 제4조 (저작물의 예시 등)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술·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연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 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6.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그림 5-1-1 저작권 개요



(2) 저작권

만화에 창작성이 구비되면 저작물이 되며, 이를 창작한 자인 글·그림에 대한 창작자 등은 저작자가 되며, 양도·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저작권을 가진다. 또한 저작권의 효력발생에는 어떠한 방식이 필요 없으므로 창작한 때로부터 권리가 발

생하게 된다. 이러한 저작권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크게 나누면 인격적 이익을 대별하는 저작인격권과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재산권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①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며 일신전속권이다.

표 5-1-1 저작인격권의 종류	
공표권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
성명표시권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동일성유지권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공표권은 아직 공표하지 않은 작품을 제3자가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경우에 공표권 침해에 해당된다. 그리고 성명표시권은 만화가 등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거나 제3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경우가 성명표시권 침해에 해당된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그의 예명을 사용하는 만화가의 경우 그 예명이나 필명, 아호를 그대로 사용해 주어야 한다. 예명을 실명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성명표시권 침해에 해당된다. 동일성유지권의 경우 양도 또는 이용허락 받은 만화저작물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무단 편집·각색 등으로 동일성을 저해하는 경우 이에 해당된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사망과 동시에 소멸하는 것이 옳으나, 사후에라도 저작인격권이 침해되는 방법으로 저작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 유족이나 유언집행자는 침해금지청구, 명예회복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

저작권의 또 다른 특징은 저작물을 단순히 최종 사용자로서 보는 등 향유하는 행위에는 저작권이 미치지 않고, 이를 2차적으로 이용하는 일정행위만을 지분권 형식으로 규정하여 이에 대해 배타적 허락권인 저작재산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형태에 따라 각종의 저작재산권을 저작자에게 인정, 물권유사의 배타적 지배권(현실적으로는 위탁 또는 대리·중개를 통하여 저작재산권을 관리)이다.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이 있다.

표 5-1-2 저작재산권의 종류 및 내용

복제권	복제 :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	
공연권	공연 :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을 포함	
공중 송신권	방송	방송 :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
	전송	전송 :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
	디지털 음성송신	디지털음성송신 :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게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
전시권	미술저작물 등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	
배포권	배포 :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	
대여권	배포권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	
2차적 저작물작성권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3) 출판권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출판권이라고 한다. 한편 출판권을 설정 받은 사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권리를 독점적으로 향유하게 되는데, 이를 통하여 출판권자는 저작자와 유사하게 안정되고 독점적인 지위에서 출판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저작자는 출판으로 인한 이익을 함께 향유할 수 있게 된다. 출판권자는 저작자가 아니지만, 저작자와 유사한 지위를 향유하게 되므로 출판권을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라고 하는 것이다.

출판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출판권을 설정 받은 사람은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다. 한편 출판권자는 원작 그대로 출판할 의무 및 9개월 이내에 출판할 의무, 계속출판의무, 복제권자표지의무, 재판통지의무, 원고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4) 저작권의 제한

① 비보호저작물

입법부의 헌법이나 법률, 행정부의 고시나 공고, 사법부의 판결이나 결정도 저작물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들은 모두 공익적인 견지에서 국민에게 널리 알려져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당해 저작물의 이용에 저작권이 방해되지 않도록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이들의 편집물이나 번역물도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없다.

사실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또한 비보호저작물로 규정되어 있는데, 단지 사실만을 보도하는 기사는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기에 애당초 저작물로도 인정될 여지가 없어 보이지만, 저작권법상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

② 보호기간

저작인격권의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기간이다. 다만, 저작자 사망 후라도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될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경우 저작자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 창작과 동시에 별도의 절차나 형식의 이행 없이 발생하며,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망 후 다음 해부터 50년이 되는 날까지 보호된다. 이를 사망 시 기준이라 하는데, 공동저작물의 경우 최후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시를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결정된다. 한편, 사망시점을 특정하기 곤란한 무명저작물이나 업무상저작물 또는 권리관계가 복잡한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조문을 두고 공표 후 다음 해로부터 50년간을 보호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표 시 기간주의에 의하여 보호기간이 결정되는 경우에 창작 후 50년이 경과하여도 당해 저작물이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 후 50년이 되는 해에 저작권이 만료된다.

③ 공정이용

저작권제도는 오로지 저작자의 권리보호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저작자의 권리보호와 함께 이용자의 권리 역시 보호함으로써 양자 간에 균형을 유지하면서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저작자의 배타적인 지배권을 어느 범위까지 허용하고, 그 이외의 어느 범위까지를 이용자의 자유이용영역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경우와 그 범위는 각국의 저작권법을 논함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논의대상이 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판례법을 통하여 공정이용(fair use)의 법리를 발전시켜 왔고, 이를 통하여 일반대중이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규칙을 정립하여 왔다. 우리나라는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다른 대륙법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허락되는 범위, 바꿔 말하면 저작권이 제한되는 범위를 개별적인 법규정들로서 설정하였다. 이는 저작권법 제23조 내지 제38조까지에 해당한다.

④ 법정허락

이 밖에 법정허락도 저작권 제한의 한 유형인데, i)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ii) 공익상 필요한 공표된 저작물을 방송하거나, iii) 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당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5)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Online Service Provider)’란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일정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즉,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관련된 서비스와 관련하여 제3자에 의한 복제·전송으로 저작권 등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 저작권 등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된다.

자신의 저작권 등이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는 서비스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당해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는 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는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서비스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다. 권리주장자와 복제·전송자는 정당한 권한 없는 서비스 중단 내지 재개 요구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밟고 이러한 사실들을 서비스이용자들에게 공지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

2006년 개정법에서는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제하는 내용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신설하였다(제104조).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제공자’는 P2P 서비스업자를 염두에 둔 것이다. P2P는 사용자들 간의 자유로운 파일(저작물) 교환(전송)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앞으로 권리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신의 저작물이 더 이상 공유되지 못하도록 기술적인 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서비스 업체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제142조).

(6)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명령 등

2009년 저작권법의 개정으로 불법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및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반복적인 불법 복제·전송자 대한 계정 정지, 불법복제물 유통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위 “3진 아웃제”가 실시되었다.

먼저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및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관련하여서는 온라인을 통하여 불법복제물,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 및 이들의 위치정보 등이 유통되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해당 권리자의 신고에 의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대하여 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킬 것과 해당 불법복제물 전송자에게 경고 조치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복적인 불법 복제·전송자에 대한 계정 정지와 관련하여서는 불법복제물등의 전송으로 인하여 이미 3회 경고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다시 불법복제물을 전송한 경우에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정지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불법복제물 유통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와 관련하여서는 상업적 이익이나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에 수록된 게시물에 대해 3회 이상 삭제 또는 중단명령이 내려지고, 해당 게시판의 형태, 불법 복제물의 수량, 불법 복제물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게시판이 불법 복제물을 유통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한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적법한 자료를 올린 선량한 게시판 이용자들이 해당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게시판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10일 동안 OSP의 홈페이지와 해당 게시판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하며, OSP와 게시판 운영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OSP가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해당 사실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7) 등록 및 집중관리제도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권리발생에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하지 않는 소위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고, 따라서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하면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 및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등에 있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된다. 특히 아직까지는 음원의 귀속처 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 등록을 해 두는 것이 좋다.

표 5-1-3 저작권 등록의 효과

추정력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성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창작년월일 또는 공표년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년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 등록권리자는 추정사실에 있어 입증책임을 면하며 이러한 추정사실을 부인하려는 자가 법률상 추정을 번복할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는 입증책임전환의 효력
대항력	저작재산권의 변동, 출판권의 설정 및 변동, 저작인접권의 변동사실을 등록하면 이를 제3자에게 대항,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3자가 권리변동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변동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음
보호기간 연장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으로 공표한 저작물의 경우 실명등록을 하면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공표 후 50년에서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연장

저작물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생성되어 이용되며 그 침해의 형태 또한 복잡 다양한 관계로, 각각의 저작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침해에 대응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제3의 주체에게 저작권 등의 권리를 위탁하여 그 주체로 하여금 그 권리를 대리, 중개 또는 신탁관리하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저작권법 제7장에서는 저작권위탁관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도 역시 개개의 저작물에 접근하여 이용하고자 할 때에 일일이 그 저작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보다는 창구를 단일화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을 영위하는 주체와 접촉하는 것이 더 편리할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이러한 저작권위탁관리단체(이를 ‘집중관리단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각 영역에서 저작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만화와 관련된 직접적인 집중관리단체는 없지만 어문, 연극, 사진, 미술저작물과 관련하여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어문저작물의 복사·전송과 관련하여 ‘한국복사전송권센터’ 등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신탁관리에 대한 허가를 받고 있다.

(8) 저작권 침해와 구제제도

저작권법상의 권리침해는 ‘저작재산권의 침해’, ‘저작인격권의 침해’, ‘출판권 침해’, ‘저작인접권 침해’의 4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또한 상기 저작권 침해형태에 직접 해당되지 않더라도 이들 침해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도 저작권법은 권리침해로 보고 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저작권자는 민사상의 구제제도를 통해 저작권 침해를 금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상의 구제제도를 통해 저작권 침해자에게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을 가할 수 있다.

① 민사상 구제제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민사상 구제로는 침해행위정지 및 예방청구권, 폐기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명예회복 등의 조치청구권이 있다. 침해행위정지 및 예방청구권은 권

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권리는 저작권의 준물권적 성질에 유래한 일종의 물권적 청구권이며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묻지 않는다. 폐기청구권은 침해행위정지 및 예방을 청구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손해배상청구권은 고의·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손해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명예회복 등의 조치청구권은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② 형사상 구제제도

저작권의 침해는 민사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적 책임도 지게 되는데, 미국 등의 압력, 저작권에 대한 일반의 인식 향상과 관계 당국의 보호에 대한 의지로 말미암아 보호강도도 높아져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 병과 할 수도 있어 그 강도가 크게 강화되었다.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고의범만이 해당되며, 과실범 및 미수범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저작권범죄는 저작권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저작권법 제140조)에 해당한다. 그러나 디지털 및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침해행위도 다양하고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바,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 이용질서를 해쳐 저작권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점을 고려하여 저작권을 영리의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비친고죄로 하였다. 그리고 등록허위, 부정발행, 무허가저작권관리 위탁업 등과 같이 공익과 관련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친고죄인 저작권 침해 등에 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하는 기간의 제한이 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고소는 법률상으로 대리행사가 가능하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 중에서 침해자나 인쇄자, 배포자,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이를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일반인에게 인계된 것에는 그 적용이 없다.

③ 조정에 의한 구제

소송 이외에 중재나 조정 등을 통한 방식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저작권분쟁과 관련하여서는 저작권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분쟁 당사자의 조정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에 의한 조정이 실시되며,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2) 상표법

가. 개요

만화의 캐릭터 등이 상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상표법상 보호를 받는다. 상표권은 타인의 상품과 식별할 목적으로 선점한 일정한 標章¹⁷⁾에 대하여 출원절차를 통해 식별력이 인정된 경우¹⁸⁾ 지정상품에 있어 상표로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창작행위와는 별개의 과정으로 형성된 가치를 보호하며, 영업적 성격이 강한 가장 이질적인 지적재산권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특정인의 표지의 독점적 사용이 부적당한 경우 또는 일반 수요자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받을 수 없으며,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미등록 상태일지라도 상표적 사용에 의하여 일정한 가치가 형성된 상표와 저촉하는 경우에도 등록받을 수 없다.¹⁹⁾ 한편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상표법 제1조).

나. 상표의 개념

상표법상의 상표는 사회 통념상의 상표(일반적으로 '브랜드'라고 불리는 것)와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상표법 제2조에서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상표란 시각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소리 상표, 냄새 상표, 맛 상표 등과 같이 청각·미각·후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표장은 국내 상표법상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없다. 또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 표장은 상표가 아니므로 상품에 사용된 것이라 하여도 그것이 단순히 상품의 심미감을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 디자인이거나 자타상품식별의사와 무관한 가격표시 등은 상표법상 상표가 아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상표 개념으로는 상표 외에 서비스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업무표장을 포함하며 개략적인 개념은 다음과 같다.

17) 우리 상표법은 標章을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며, 입체적 형상이나 색채도 최근 새로이 추가된 것이다. 이외에도 소리, 향기 등 상표적 역할을 하는 것은 다양하다.

18) 우리 상표법은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보통명칭, 관용상표, 記述的 표장 등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식별력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해석된다.

19) 상표법에서도 권리의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선출원주의가 적용된다. 그러나 상표의 경우 특정인의 계속된 사용으로 보호가치가 발생하며, 창작물과 달리 권리가 소멸되거나 거절 결정된 상표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여도 공익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에서 상표법상 선원주의는 특허법이나 디자인보호법과 달리 출원종인 상표 사이에서만 적용되며, 같은 날 출원된 상표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추첨에 의하여 등록 받을 수 있는 자를 결정한다. 다만, 등록상표와 저촉하는 경우 별도로 부등록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상표권 소멸 후 1년 이내에는 그 상표에 대한 기억과 신용이 잔존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출처 혼동 우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표 5-1-4 상표 관련 개념 구분

구분	내용
서비스표	'서비스표'란 서비스업(광고업, 통신업, 은행업, 운송업, 요식업 등 용역의 제공업무)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단체표장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공동으로 생산·판매 등을 하는 업자 등이 설립한 법인이 그 감독 하에 있는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 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 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기 위한 단체표장
업무표장	'업무표장'이란 YMCA, 보이스카웃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 예: 대한적십자사, 청년회이스, 로타리클럽 등

다. 상표등록요건

상표를 출원·등록하기 위해서는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실질적 요건으로서의 등록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선 출원주의와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먼저 출원한 자에게 등록을 인정하고 독점 배타권을 부여한다. 다만, 식별력이 없거나 특정인에게 독점을 주는 것이 공익에 반할 경우 등록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상표의 등록요건은 출원의 형식 등 절차적 요건과 상표의 구성 자체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진 것인지, 부등록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지에 관한 실체적 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실체적 요건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식별력(적극적 요건)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타상품식별기능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우선 식별력을 가져야 한다. 상표법상 식별력이라 함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식별력 유무의 판단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상표법 제 6조 제1항 각호에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들을 열거하여 상표등록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표 5-1-5 자타상품식별력이 없는 상표

① 상품의 보통명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그 상품의 명칭을 나타내는 상표 예) 옥수수건과자-Corn Chip, 호도로만든과자-호도과자, 자동차-Car
② 관용상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업자들 사이에 특정 종류의 상품에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장 예) 과자류-강, 청주-정종, 직물-Tex
③ 성질표시적 상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표시 : 당해 상품의 생산지 표시 예) 사과-대구, 모시-한산, 굴비-영광 • 품질표시 : 당해 상품의 품질의 상태, 우수성 등을 표시 예) 상, 중, 하, 특선, Super • 원재료표시 : 당해 상품의 원재료로 쓰이는 상품의 명칭 표시 예) 양복-Wool, 넥타이-Silk • 효능표시 : 당해 상품의 효과나 성능 등을 표시하는 상표 예) TV-HITEK, 복사기-Quick Copy • 용도표시 : 당해 상품의 쓰임새를 나타내는 상표 예) 가방-학생, 의류-Lady • 수량표시 : 2컬레, 100미터 등 • 형상표시 : 당해 상품의 평상·모양·크기 등을 표시 예) 소형, 대형, 캡슐, SLIM • 생산방법·가공방법·사업방법표시 : 당해 상품의 생산·가공·사용방법을 표시하는 상표 예) 농산물-자연농법, 구두-수제, 책상-조립 • 시기표시 : 당해 상품의 사용 시기 등을 표시 예) 타이어-전천후, 의류-봄·여름·가을·겨울
④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지리적인 명칭을 말한다. 예) 금강산, 백두산, 뉴욕 등
⑤ 흔히 있는 자연인의 성 또는 명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흔히 있는 자연인의 성 또는 법인, 단체, 상호임을 표시하는 명칭 예) 이씨, 김씨, 사장, 상사, 조합, 총장 등
⑥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의 구성이 간단하고 또한 흔히 있는 표장 예) 123, ONE, TWO, 등
⑦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쓰이는 구호, 표어, 인사말 등 예) Believe it or not, www, I can do 등

※ ③, ④, ⑤, ⑥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그 상표가 수요자 간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현저히 인식되어 있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다(상표법 제6조 제2항).

(2) 부등록사유(소극적 요건)

비록 상표가 적극적 요건으로서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상표를 등록하여 독점배타적 성질의 상표권을 부여하는 경우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의 등록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상표법 제7조).

상표등록이 배제되는 경우

- ① 대한민국의 국기·국장, 파리협약동맹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체약국의 훈장·포장, 적십자·올림픽 등의 공공마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예) 무궁화 도형, IMF, WTO 등
- ② 국가·민족·공공단체·종교 등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할 염려가 있는 상표
예) 양키, Negro 등, 외설적인 도형이나 문자, 사기꾼, 소매치기 등의 문자
- ③ 국가·공공단체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예) YMCA, KBS, 적십자 등
- ④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예) 외설적인 도형이나 문자, 사기꾼, 소매치기 등의 문자

- ⑤ 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 또는 외국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 ⑥ 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 등을 포함하는 상표
예) DJ, JP, 한전, 주공 등
- ⑦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⑧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 ⑨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⑩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 ⑪ 주지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⑫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 ⑬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 ⑭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 ⑮ 주지·저명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 ⑯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 ⑰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표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
- ⑱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내의 포도주·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서 구성되거나 동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증류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

라. 상표권

상표권은 적극적으로는 당해 표지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소극적으로는 동일·유사 상품에 있어 동일·유사 표지에 대한 타인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상표권이 다른 지적재산권과 구별되는 특징으로는 먼저,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무한히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편의상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존속기간갱신절차에 의하여 계속하여 10년씩 연장할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은 상표권의 유지를 위하여 다른 지적재산권보다 많은 의무를 요구하는 점이다. 즉, 상표권자나 사용권자의 등록상표 부정사용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야기하거나, 계속하여 3년 이상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취소심판에 의하여 상표권이 소멸될 수 있다.

마. 침해와 구제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하며,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형사적으로도 상표권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다른 지적재산권의 침해와 달리 상표권 침해 죄는 비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 상표권자의 고소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

3) 부정경쟁방지법

타인과 주지저명한 상표나 상호, 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함)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은 개별적인 부정경쟁행위를 나열함으로써 열거적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법행위라 보기 어렵다.

또한 특허 등을 통하여 공개하지 않은 기업의 내부적인 비밀을 영업비밀이라고 한다.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첫째,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정보이어야 한다. 둘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하였어야 한다. 셋째, 정보자체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이어야 한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이기 위해서는 위의 세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보호될 수 있는 가치를 가진다. 만약 공개된 것이라고 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업비밀이 아니기 때문이다.

4) 콘텐츠산업진흥법

콘텐츠산업진흥법은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기도 하지만 콘텐츠제작자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보호법적인 성격도 가진다.

콘텐츠제작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콘텐츠제작자가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한 콘텐츠를 또는 그 포장에 제작연월일, 제작자명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라는 사실을 표시한 경우 5년간 보호되며(제37조 제1항), 그 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경쟁사업자가 무단으로 복제·배포·방송·전송하여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콘텐츠의 불법복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한 기술적보호 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서비스·장치의 제조·제공·수입 등을 금지하고 있다(제37조 제2항).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친고죄이다(제40조). 콘텐츠제작자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이 우선 적용된다(제4조).

3. 규제목적의 법제도

많은 만화규제 관련 법률들이 제정되고 시행되어 왔으며, 이들 법률들의 가장 큰 특징은 청소년보호를 명목으로 너무 포괄적인 규제를 해왔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것이 만화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청소년보호법과 동법에 의하여 통합·폐지되었던

미성년자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밖에도 학교보건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1)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이 강력한 청소년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되면서, 여전히 만화는 규제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청소년보호법에서 만화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며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에 만화대여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청소년유해매체물과 마약 등 청소년유해약물에 동일한 법적 의무와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이후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를 심의하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으로 그 법적근거가 바뀌는 등의 변화가 있었으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강력한 의지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은 1997년 3월 7일 제정되어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법은 ‘청소년보호위원회²⁰⁾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매체물’, 각 심의기관 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하거나 동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확인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정의하고 있다(청소년 보호법 제8조제1항).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의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단서). 또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각 심의기관이 해당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여부의 심의를 하지 않을 경우 청소년보호를 위해 심의를 진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동법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심의기관의 요청이 있는 매체물, 각 심의기관의 청소년유해여부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는 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밖에도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매체물 심의결과 그 매체물의 내용이 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통이 금지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기 전에 관계기관에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또 제작·발행의 목적 등에 비추어 청소년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작·발행되거나, 매체물 각각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서는 당해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동법 제8조제2항내지제5항).

20) 2008년 동법의 개정으로 청소년기본법상의 국가청소년위원회 설치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심의·의결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이관하였다.

그리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지 않은 매체물에 대해 청소년 유해의 정도, 이용청소년의 연령, 매체물의 특성, 이용시간과 장소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등급을 구분할 수 있고(동법 제9조제1항),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각 심의기관에 이 내용을 요청할 수 있다(동법 제9조제2항). 심의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일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동법 제10조제1항).

이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현재 국내사회에서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동법 제10조제2항). 그런데 이 규정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다.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모호해 내용이 어떻게 되었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로인해 자의적인 판단의 우려가 높고 작품의 내용이나 성격을 전혀 고려치 않는 무차별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와 관련하여 각 심의기관 간에 동일한 내용의 매체물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이 상당한 정도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심의내용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각 심의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동법 제11조).

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은 출판문화산업에 대한 진흥 근거도 되지만 그 내용에는 규제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역학적으로 살펴보면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 관한법률’이 ‘출판및인쇄진흥법’으로 통합되었고, 다시 이 법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과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으로 분화되었기 때문이다.

동법에서는 간행물의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고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를 두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보호위원회와 다른 심의기관간의 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동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만화에 관한 한 우선적 심의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해당 만화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여부의 심의를 하지 아니 할 경우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심의를 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그리고 간행물 윤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만화, 동위원회의 청소년 유해 여부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는 만화에 대하여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 대한 유

해 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만화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 외국간행물, 정기간행물의 유해성 심의를 하여 유해간행물로 결정한다. 유해간행물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거나 체제 전복 활동을 고무(고무)하거나 선동하여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
2.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뚜렷이 해치는 것
3. 살인, 폭력, 전쟁, 마약 등 반사회적 또는 반인륜적 행위를 과도하게 묘사하거나 조장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

한편, 규제개혁 차원에서 2009년에는 소폭의 개정이 있었다. 우선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등을 위하여 출판사로 하여금 간행물 2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예산·행정상 낭비가 초래되고 출판계에게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2008년 규제개혁 추진지침에 따라 간행물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출판유통심의위원회를 폐지하였다.

3) 형법

형법에서 만화에 적용될만한 조항으로는 음화반포죄 등과 관련된 사항들이 있다.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법 제244조는 “제243조의 행위에 쏙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은 오프라인형태의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서비스되는 만화의 내용에 음란성이나 불법정보에 관한 내용 등이 있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동법에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불법정보라고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44조의7).

제2절 국내 만화산업 지원현황

1.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08년 수립한 100년 감동의 킬러콘텐츠 육성전략의 일환으로 발표한 “만화산업진흥 중장기계획(2009~2013)”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만화산업진흥 중장기계획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만화유통 채널과 그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신규비즈니스 모델 등 만화 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고, 만화계의 수요 등을 반영하여 1) 만화 창작 역량 강화, 2) 만화 유통 구조 개선 및 시장 선진화, 3) 라이선싱 비즈니스 활성화, 4) 만화의 문화가치 제고의 4가지 정책을 추진 방향으로 삼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기획만화창작지원 사업을 통해 시장성 있는 우수한 국산 만화 제작의 역량을 확대하고 성공사례를 발굴하며 우수 국산 만화의 창작-연재-상품화를 통한 국산 만화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만화 제작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국산 만화의 창작 활성화를 위해 중장편 장르만화 발굴 5편, 만화잡지와 온라인 웹진, 모바일 등을 통해 연재 지원 14편, 신규 만화 매체 창간 지원 10편 등 만화창작의 기획 단계를 지원했다. 이 사업은 국산 기획창작 만화제작 및 판매시장 활성화와 국산 만화의 국내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장편 서사만화 창작여건 조성 및 원작 만화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제작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기획만화창작지원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총 231편을 지원했으며 만화 연재 매체의 특징에 맞게 기획만화제작지원, 기획만화연재지원, 신규매체 창간지원, 연계지원 등으로 세분화되어 지원하고 있다. 2008년부터 시작된 ‘만화 전문 신규매체 프로젝트 지원’ 사업은 새로운 미디어 융합 환경에서 시장성 있는 온오프라인 만화 매체에 대한 지원으로 국산 만화 시장의 확대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만화 시스템의 한 축인 만화 전문 매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산 만화의 창작 역량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표 5-1-6 기획만화창작지원 연도별 지원작 현황

연도	기획만화제작지원	기획만화연재지원	신규매체창간지원	'08연계지원('09매니지먼트)	합계
2009	5	14	1	15	35
2008	6	16	1	2	25
2007	13	14	-	-	27
2006	12	19	-	-	31
2005	19	15	-	-	34
2004	17	14	-	-	31
2003	19	11	-	-	30
2002	18	-	-	-	18
소계	109	103	1	2	231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산 창작만화 수출은 2005년 326만불, 2006년 391만불, 2007년 398만불, 2008년 413만불로 연평균 8.2%를 성장하였다. 앙굴렘 국제만화페스티벌, 볼로냐국제아동만화전을 통해 한국만화 공동전시관을 만들고, 수출을 위한 전시를 확대해 약 175만 달러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2009년도는 만화가의 작품 소재 발굴을 위해 샌디에이고 코믹콘 등 해외전시회에 만화가들의 참관도 제공했다.

2009년 역시 <이끼>, <탐나는 도다>, <열혈장사꾼>, <식객> 등의 만화원작을 바탕으로 영화·공연·드라마화 진행이 국내에서 활발했으며, 만화원작의 해외진출을 위한 영어 디지털홍보북이 제작되어 미국에서 만화 쇼케이스를 개최하는 등 한국만화원작의 판권 판매가 어느 해보다 활발히 이루어졌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만화창작, 유통이 활발히 진행되는 환경변화에 따라 온라인 포털과 공동 사업으로 스토리 발굴, 만화 연재, 편집 가공, 홍보, 2차 라이선싱 지원 등 단계별 퍼블리싱 지원이 이루어졌다. '지역우수문화콘텐츠 발굴 및 마케팅 지원' 사업은 네이버와 공동으로 '웹툰에서 캐릭터사업까지'와 지역 문화콘텐츠 소재를 발굴하여 만화화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독자가 만화를 선택하고, 창작과정부터 유통, 2차 라이선싱 지원을 통해 만화원작의 수익 확대와 지원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했다. 그리고 만화잡지의 새로운 유통망 발행 지원, 기존의 유통망인 서점 외에도 편의점을 통해 만화잡지 <MANA>의 유통을 지원하였다.

2009년에는 한국만화 100주년을 맞이하여 이에 대한 기념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이를 통해 한국만화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국내외 만화 100주년 특별전시와 다큐멘터리 제작, 방영, 기념우표 발행, 100년사 편찬사업 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독자다변화와 만화의 문화가치 제고를 위해 서울·경기지역 20개 문화공간에서 우수만화 순회전시와 주말 만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올해도 만화산업백서 발간과 만화자료 DB 구축(만화규장각사업)을 구축해 나갔으며, 불법 스캔 만화에 대

한 피해상담, 만화저작권 보호지원 캠페인을 통해 만화콘텐츠 보호에 대한 대국민 사업도 전략적으로 펼쳐나갔다. 또한 만화산업백서, 만화규장각 사업 등 만화관련 유통망 확대와 만화의 문화가치를 제고하는 사업도 확대해 나갔다.

2009년은 한국만화 탄생 100돌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한국만화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08년 6월 출범한 '한국만화 100주년 위원회'는 2009년 6월부터 '한국만화 100주년 기념식', '한국만화 100주년 기념전시', '한국만화 100주년 조사연구 사업', '국제시사만화포럼 및 시사만화 특별전' 등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이탈리아 볼로냐 시청사에서는 한국만화 100주년을 기념해 '한국만화의 새로운 발견'이라는 주제로 한 '한국만화특별전'이 2009년 3월 23일부터 4월 4일까지 열렸다. 한국만화 특별전은 한국만화 100년사 '길', 한국만화 4인 자가전(김동화, 허영만, 윤태호, 이소영) '멋', 한국디지털 온라인만화 소개 'Next Generation', 톤 아트작품 소개 '장난스러움', 이탈리아판 한국만화관람 '만남' 등의 섹션으로 구성되었다. 영국 런던소재 주영한국문화원에서는 5월 21일부터 6월 24일까지 한국 만화를 유럽에 소개하는 'manhwa 100' 전시가 열렸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문화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6월 18일 한국만화 10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회를 개막했다. 한국만화 역사 100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연대기별로 주요 만화작품들이 전시되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만화영화 <뽀로로&뿌가> 등이 상영되었다.

한국만화 100주년 기념전시회뿐만 아니라 100주년 기념사업 및 우표 발행도 추진되었다.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한 '한국만화 100주년 기념우표' 1종 160만 장을 2009년 6월 2일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 김성환 화백의 <고바우 영감>, 이진주의 <달려라 하니>, 김수정의 <아기 공룡 돌리>, 윤승운의 <맹꽁이 서당>, 신문수의 <로봇 찌빠> 등 한국의 만화 역사를 빛낸 작품들이 기념우표로 제작되었다.

2009년에는 국내 원작 만화들이 국내외의 다양한 영상콘텐츠로 파생됨에 따라 OSMU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식객>, <쩨의 전쟁>, <타짜> 등의 성공 이후, 이현세 작가의 원작을 리메이크한 <2009 외인구단>과 박봉성의 <신이러 불리는 사나이>를 선보였다. 영화계에서도 만화원작을 다룬 영화들이 꾸준히 제작되었다. <식객2>가 배우 김정운을 주인공으로 제작, 상영되었다.

출판에 국한되어 있던 만화산업은 웹과의 조우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장하며 새로운 만화 2.0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미 웹과 만화가 합성된 웹툰은 웹에서 킬러콘텐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온라인을 넘어 다시금 영화나 드라마로의 OSMU까지 확산되어 있다. 웹툰을 대표하는 만화가 강풀은 <아파트>, <바보>, <타이밍>, <순정만화>, <26년> 등 대부분의 작품을 영화, 연극 등으로 제작했다. 2008년 4월 초연된 강풀의 원작 <그대를 사랑합니다>를 리메이크한 연극은 2009년 앙코르 공연으로 이어지면서 큰 인기몰이를 한바 있다. 이밖에도 강도하의 웹툰 <위대한 캣츠비>는 드라마와 뮤지

컬로 제작되며, 만화 2.0의 블루오션을 개척하고 있다.

2.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2009년 만화 제작 지원은 온·오프라인 환경에 최적화된 우수 만화콘텐츠의 생산과 유통 촉진, 뉴미디어에 적합한 콘텐츠의 개발·창작·라이선싱 연계, 글로벌 만화콘텐츠 제작을 기반으로 한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전개되었다. 2009년 만화 제작 지원은 기전문화원형만화창작화사업, 부천스토리공모, 웹툰스타시즌2, 12부작 웹툰, 카툰콘텐츠개발, 어린이만화소재공모, 지역문화콘텐츠 개발,古만화디지털화, 고전걸작리메이크, 고전걸작디지털화의 세부 사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우선 한국일보와의 제휴를 통해 경기문화원형소재 장편 서사만화가 연재되었다. 전세훈 작가의 〈물 위를 뛰다〉를 선정하여 한국일보에 2009년 8월부터 주5일 연재를 하였고, 2010년 3월에는 출판만화로 발간되며 파란닷컴을 통해서도 온라인 서비스될 예정이다. 야후와의 제휴를 통해서도 서정카툰 유통 및 만화스토리공모전을 공동 진행하였다. 한국카툰협회를 통해 디지털 카툰 100점을 제작하였고 이를 야후에 게재하였으며, 부천만화스토리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6작품에 대해서도 야후에서 작품화되었다.

Daum과의 제휴를 통해서도 인터넷 중심의 기획창작만화를 제작하고 유통하였는데, 12부작 웹툰 공모전 개최를 통해 12편의 작품 권리를 확보하였다. 또한 웹툰스타 콘테스트 시즌2를 통해 완성형 웹툰 〈SHOKU〉 외 3편, 기획개발 웹툰 〈꿈〉 외 4편을 선정하였다. 월간 개똥이네놀이터와는 어린이만화소재공모전을 진행하여 조아미 외 11명을 선정하였고, 네이버와의 제휴를 통해서도 명작만화 리메이크 웹툰을 유통하였고 도서를 발행하였다. 또한 명작만화 원작 디지털화를 통해 뉴미디어 유통이 가능하도록 콘텐츠를 제작하였는데, 〈번데기야구단〉 외 12편 전송권 계약이 체결되었고, 〈번데기야구단〉 외 1편은 KT 모바일 전송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 5-1-7 2009년 주요 만화 제작 지원 사업 현황

사업구분	사업명칭	유관기업과의 콘텐츠 제작 및 유통 협력 체계	산출물(총50종(편))
우수 만화 창작	기전문화원형만화창작화사업	'한국일보' / '파란' 과 공동 진행	〈남한산성〉의 1종
	부천시토리공모	YAHOO! 카툰' 과 공동 진행	〈One Point ACE〉의 5종
	웹툰니스타시즌2	'DAUM 만화속세상' 과 공동 진행	〈SHOKU〉의 4종
	12부작웹툰	'DAUM 만화속세상' 과 공동 진행	〈ACES HIGH〉의 11종
	카툰콘텐츠개발	'YAHOO! 카툰' 과 콘텐츠 유통 협력	〈코코카툰〉
	어린이만화소재공모	'월간 개똥이네 놀이터' 과 공동 진행	12편
	지역문화콘텐츠개발		1편
	古만화디지탈화		〈소년007〉의 2종
뉴미디어콘텐츠	고전걸작리메이크	'NHN 네이버' 와 공동 진행	〈진진돌이 에블루션〉의 3종
	고전걸작디지탈화	'KT 모바일' 과 전송서비스 진행	〈로봇씨씨〉의 9종
기획개발			〈DVD 3D〉의 4종
APG합작		중국과 공동제작	〈사이언스 매직킹〉

출처 :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자료 재구성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2010년 만화 제작 지원 사업에서 2009년보다 신규 사업 4개를 추가하여 확장시켰다. 2010년 만화 제작 지원 사업은 크게 우수만화창작역량강화 부문, 차세대 만화콘텐츠 개발 유통 부문, 해외시장 개척 부문으로 나뉜다.

우수만화창작역량강화 부문에서는 지역 역사, 현대 문물을 소재로 한 만화콘텐츠를 개발 유통시키는 '경기 지역문화 소재 만화콘텐츠 개발사업' 이 기존의 '기전문화원형만화화 사업' 을 정례화시키는 방향으로 자리 잡았다. OSMU가 가능한 연재만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우수 매체에 연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G-toon 창작만화 사업', 어린이 대상 순수 창작 만화를 제작지원하고 유통 출판사와의 제휴를 통해 어린이 창작 만화의 붐을 조성하고자 하는 '어린이 순수창작만화 사업', 원로작가의 고전만화를 재해석한 리메이크 작품을 지원하고 고전만화의 이슈화를 통해 OSMU를 유도하는 '명작만화 리메이크 사업', 그리고 만화의 가능성을 활용한 만화작품을 제작 및 지원하는 '기능성 만화 개발 사업' 이 있다.

차세대 만화콘텐츠 개발 유통 부문에는 기 발행된 우수 출판만화의 전송권리를 확보하고, PMP, 전자책, 휴대폰, IPTV 등의 기기 열람용으로 변환하는 '우수 출판만화의 디지탈화 및 유통 사업', 기성 웹툰작가의 신작 웹툰의 개발을 지원하고 웹툰니메이션으로 제작해서 각종 플랫폼을 통해 유통하는 '투모로우 애니스타' 로 구성되어 있다.

해외시장개척 및 교류 부문에는 우수 웹툰 작가의 신규 웹툰 제작 및 해외 매체에 연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웹툰니스타 콘텐츠 시즌 3', 기성 우수만화작품 30여 종의 일부분을 현지어로 번역한 모음집을 통해 해외 현지 시장 조사를 위한 만화가이드북을 제작하는 '우리만화 현지화 지원사업' 이 있다.

구분	추진사업	사업예산(백만원)	비고	
만화창작 역량강화	경기문화소재	100	3차	
	우수창작만화 제작지원	G-Toon창작만화	100	3차
		어린이순수창작	100	신규
		명작만화리메이크	60	2차
		기능성만화제작	23	신규
	차세대 만화 콘텐츠 개발 유통	우수 출판만화 디지털화	55	09년고전걸작 디지털화연계
투모로우 애니스타		330	신규	
해외시장 개척	웹툰니스타 콘테스트 시즌3	100	3차 웹툰니스타	
	우리만화 현지화 지원사업	100	신규	

출처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만화콘텐츠 창작 및 육성 분야 연관사업으로는 ‘만화산업클러스터 정착 및 활성화’, ‘1인 창조기업 만화출판지원’, ‘부천만화스토리공모전’ 등이 있다. 만화산업 클러스터 정착 및 활성화 사업에서는 만화작가 및 뉴미디어용 만화콘텐츠 제작 작가나 만화를 원소스로 하는 문화콘텐츠 관련 선도 기업에게 제작 공간과 장비 등을 대여해 주는 사업으로, 진흥원 내의 만화비즈니스센터와 함께 별도로 부천 만화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다.

구분	계	만화창작실	만화관련 업체	만화단체	관련기관
계	88 팀(업체) 465명	61개 팀 227명	23개 업체 173명	1개 단체 4명	3개 기관 61명
만화비즈니스센터 (진흥원 내)	47개 팀(업체) 297명	25개 팀 84명	18개 업체 148명	1개 단체 4명	3개 기관 61명
부천만화창작스튜디오 (원미구청 앞)	41개 팀(업체) 168명	36개 팀 143명	5개 업체 25명	-	-

출처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또한 1인 창조기업 만화출판 지원 사업은 웹툰 또는 미출판 만화를 대상으로 개인 만화창작자나 기획자에게 제작비 지원 및 편집, 인쇄, 제작, 유통 전담 회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원스톱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외에 부천만화스토리공모전을 통해 기획 개발 역량을 지닌 스토리텔러에게 만화를 연재할 수 있는 매체를 연계해 주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만화콘텐츠 제작을 지원해 주는 명실상부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3. 한국카툰협회

카툰 동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권인을 보호하며 카툰 작가의 위상제고와 카툰 예술문화 발전 및 창달을 위해 2005년 설립된 한국카툰협회는 최근 미디어의 발달로 대중성을 확보한 카툰이 예술적 작가관을 유지하면서 카툰의 이론적, 대중적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09년에는 한국만화100주년을 맞아 국립현대미술관과 제주현대미술관에서 카툰 전시 '방자한 명상, 유쾌한 상상展'을 열었다. 초창기 카툰부터 현재 디지털 매체에 연재되는 카툰을 소개하고 국제카툰공모전의 한국 카툰니스트들의 활약상을 보여 주었다. 이를 시작으로 2009년 한국카툰협회에서는 개인작가 및 단체들의 다양한 전시를 기획 개최하였다. 1월에 열린 '한일만화가연하엽서전'을 시작으로 총 기획전시 5회와 초청전시 2회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노인보호기관과 함께한 '노인인식 개선 카툰전'은 일반갤러리는 물론 전국공공도서관 20개소와 복지기관, 공공기관 14곳에서 릴레이로 전시되면서 노인공경과 진정한 효의 의미를 선보였고, 공익성을 강조하는 카툰전시의 변화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후원을 받아 진행한 '코코카툰'은 연재종료 후 참여 작가의 작품을 카툰집으로 출판하였다. 한국카툰협회와 함께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카툰홍신소 옆어컷'(이하 옆어컷)은 2009년에 '미디어법 반대 게릴라 전시'와 용산 참사 추모 전시 '여기에 사람이 있다'를 통해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카툰으로 보여주었으며, 2009년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부천만화상에서 카툰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국제 카툰콘테스트에서 강태용(이스라엘 Haifa국제 카툰콘테스트 특별상 수상), 남명래(제2회 사이프러스 유머아트전 2등상 수상), 오영(제2회 productivity이란국제카툰 페스티벌 2등상 수상) 작가들은 수상을 통해 한국카툰의 힘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 일조하였다.

4. 한국만화출판협회

한국의 만화출판 산업 및 만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2년 설립된 한국만화출판협회는 만화출판유통 현대화의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민·형법과 청소년보호법상의 민화윤리 실천과 자정 및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009년 한국만화출판협회의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2030 만화콘텐츠 매거진 제작 및 배급 사업"은 2030 세대를 대상으로 한 우수 국산 컬러 만화콘텐츠 매거진 <카툰마니아>를 발간하여, 국내 만화산업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확장시키고, 다양한 소비 계층의 확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원작 만화를 발굴하였다. 또한 "만화저작권 보호활동 지원사업"은 원작 만화 활성화를 위한 만화저작권 보호 활동 지원 사업으로 건

전한 만화콘텐츠의 이용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강화함으로써 질적 성장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진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만화저작권 보호 홈페이지(www.comicright.or.kr)'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 보호센터(www.cleancopyright.or.kr)를 통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모니터링'도 시행하고 있는 등 만화의 활성화 및 만화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다양하게 활동하였다.

5.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는 만화스토리작가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을 옹호하여 만화 및 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의 주요 사업은 만화콘텐츠의 질적 향상 및 만화 원작의 체계 확립, 만화 원작의 제반 윤리 사항, 회원의 지위 향상 및 권익 신장에 관한 사항, 만화 스토리와 관련된 각종 사업 등이다.

2009년도에는 오랜 시간 합의를 찾지 못했던 만화스토리작가의 저작권을 2009년 3월 23일 법원 판결을 통해 공동저작권자의 권리를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다. 만화스토리 저작권 확보는 만화스토리작가에 대한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만화스토리작가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유켄센터 사업'은 한국마사회 소속의 유켄센터와의 협약을 통해 도박 근절과 예방 시리즈 만화를 기획 제작하는 연간사업으로, 한국만화가협회와 공동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희망은 스토리텔링이다'라는 주제로 5월 27~28일 양일 간 '제1차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어 '만화 스토리를 알아야 길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12월 29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제2차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기획 및 출판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만화의 현 트렌드와 발전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6.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서울애니메이션센터는 서울시가 국내 만화 및 애니메이션 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 육성하기 위해 설립하여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운영하는 시설로,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관련 제작 및 창작 지원, 국내외 페스티벌 참가 및 마케팅 지원,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한 기술지원실 및 캐릭터원형제작실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서울애니메이션센터의 만화 제작 지원 사업은 크게 창작만화 제작지원 사업, 해외수출 기획만화 제작지원 사업, 서울 국제디지털만화 공모사업, 크리에이터뱅크 구축사업으로 나뉜다.

창작만화 제작지원 사업은 원작산업으로서 '만화'의 산업적 가치는 증대되나 급격

한 출판만화잡지의 침체 및 출판시장 불황으로 창작만화콘텐츠 제작이 위축되고 있다는 추진 배경을 통해, 다양한 소재와 주제의식을 다룬 창작만화 우수기획안을 제작지원함으로써 우수 창작인력 발굴을 통한 만화콘텐츠 창작역량 강화 및 한국만화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2009년에는 14편을 선정하여 현재 제작지원 중에 있다. 주요 성과로는 <시간이 좀 걸리는 두 번째 비법>의 소복이 작가와 <East Asia Fantasy>의 오연 작가가 프랑스주재 한국문화원 특별전시 “한국만화의 어제와 오늘전”에 초청 전시되었고, <삼천리>의 오세형 작가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호평을 받으며 불어권으로 수출되었다. 그 외에도 강민규, 황진영 작가의 <골든 글로브>, 김성희 작가의 <뭉쓸 년>, 고영일 작가의 <푸른 끝에 서다>, 김은성 작가의 <내 어머니의 이야기> 등 실력 있는 신인작가가 창작만화 제작지원을 통해 데뷔작을 발표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김준범 작가의 <코스모스 로드>, 김은희 작가의 <지니>, 유진하 작가의 <그라드 블라디> 등 기성작가 중에도 새로운 이야기와 스타일을 모색한 작품이 발표되었고, 마영신 작가의 데뷔작 <어른놀이>는 부천만화상 우수만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2009년부터는 제작비 지원 이외의 후속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지원사업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창작만화지원사업은 1999년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설립 초기부터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2009년까지 90여 편이 제작 지원되었고, 중장편 및 단편, 카툰 및 극화, 웹툰 등 다양한 형식과 주제 의식, 소재들을 다룬 창작만화들이 본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다. 특히 프랑스 등 유럽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국의 ‘작가주의 만화’의 다수 작가를 배출하였는데, <미정>의 변병준 작가, <노근리이야기>의 박건웅 작가, <남쪽손님, 빗장 열기>의 오영진 작가, <항쟁군-평행우주>의 김홍모 작가, <귀신>의 석정현 작가, <불치병 투병일기>의 임팔목 작가 등 다수의 작가가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미정>의 변병준 작가, <살인계획>의 변기현 작가 등은 프랑스의 유명 시나리오 작가와 합작만화를 작업하였으며, <ING>의 고희진 작가, <그녀의 완벽한 하루>의 채민 작가 등 다수의 작가들이 합작이나 해외출판을 제외받고 있다.

해외수출 기획만화 제작지원사업은 2008년 신규 추진된 사업으로, 한국만화의 해외수출이 확대되고 있으나 국내시장에 시판된 출판물의 해외출판권 판매에 편중되어 있어, 국내 출판만화시장 침체에 따른 신작 감소 등 수출대상작품이 적어 해외수출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국내업체의 지속적인 해외진출 및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해외수출 기획만화 제작지원 사업은 만화 출판, 기획사 및 에이전시의 글로벌 기획력 및 현지시장 마케팅력을 강화하고 국내작가의 활동영역 확대에 기여함으로써, 만화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사업모델 도출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해외수출 기획만화 제작지원 사업은 2009년 5편(장태산 작가 <라반>, 변병준 작가 <피쉬>, 김정기/박성진 작가 <TLT 시즌2>, 김보현 작가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웰의

기억), 최해웅 작가〈엔란〉을 선정하여 제작지원하고 있는 중이다. 주요 성과로는 형민우 작가의 〈고스트페이스〉가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해외출판 및 수출계약을 이뤘고 모바일게임으로 개발하여 출시되었으며 2010 오늘의 우리만화상을 수상하였다. 한혜연 작가의 〈애총〉은 ‘팝툰’을 통해 국내 연재되었고, 영화판권이 판매되었으며, 최해웅 작가의 〈엔란〉은 일본 격월간지 ‘코믹 발키리’에 연재되고 있으며, 현재 소설, 모바일 게임, 애니메이션화 등의 OSMU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변병준 작가의 〈피쉬〉 등 다른 지원작도 불어권 등으로의 출판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내고 있다.

표 5-1-10 서울애니메이션센터의 만화 제작 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지원규모	사업내용
창작만화 제작지원	14편 이내, 160백만원 (편당 5백~15백만원 차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장르별로 특화된 만화로 창의력이 뛰어난 창작만화 기획물 - 신청자격 : 만화작가 - 제작지원기간 : 12개월 - 편집자 등 업계전문가 초청 창작워크샵 및 에이전시연계 해외 홍보지원, 창작지원실 입주지원 등 후속지원 추진
해외수출 기획만화 제작지원	5편 이내, 228백만원 (편당 5천만원 이내 차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해외시장에 경쟁력 있는 만화콘텐츠 출판기획물 - 신청자격 : 서울소재 만화출판(기획)사, 에이전시 - 제작지원기간 : 17개월 - 한국문화번역원 연계 해외프로모션비 지원
서울국제 디지털만화공모	16편, 시상금 3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웹, 모바일 등 디지털매체 특성을 창의적으로 반영한 우수 창작만화 - SICAF 연계 국제공모 및 전시회, 컨퍼런스 추진 - 토포시 연계 본선진출작 온라인 전시 및 네티즌 투표 실시
크리에이터뱅크 구축	만화작가 20인, 75편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작가 온라인 포트폴리오 구축하여 국내외 문화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상시 프로모션 추진 - 소개대상 : 시장성 있는 중견 만화작가, 유망 신진크리에이터 포괄 선정 - 2009년도 국,영,불 사이트 개발 추진

출처 :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제2장 해외 만화산업 정책 동향

제1절 일본

1. 지적재산전략과 만화정책

일본정부차원의 콘텐츠산업진흥은 2002년 2월 고이즈미 총리의 ‘지적재산입국선언’이 계기가 되었다. 총리 차원에서 지적재산입국을 선언한 것은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일본의 ‘지적재산’을 국가적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하는 강력한 정책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지적재산입국이란,

발명·창작을 존중하는 국가의 방향성을 뚜렷이 하고 제조업과 함께 기술, 디자인, 브랜드 및 음악·영화 등의 콘텐츠처럼 가치 있는 ‘정보’(무형자산)의 창조를 산업적 기반으로 해 일본 경제사회의 재활성화를 도모하는 비전에 입각한 국가전략(지적재산전략대강 2002)

일본의 콘텐츠진흥정책은 고이즈미 총리의 ‘지적재산전략입국선언’에 따라 지적재산기본법과 지적재산전략본부라는 추진부서가 설치되었고, 이를 토대로 매년 지적재산전략추진계획이 발표되어 지적재산전략차원에서 콘텐츠진흥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02년 3월 지적재산전략회의가 설치되었고, 이어 2002년 7월에는 ‘지적재산전략대강’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2002년 11월에는 지적재산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성립되었고, 이듬해인 2003년 3월에 지적재산전략본부 설치가 되었다. 동본부에서의 논의를 축으로 2003년 7월에는 지적재산전략추진계획이 마련되었다.

2003년 7월에 1차 지적재산전략추진계획을 수립한 이래, 2004년, 2005년까지 1기가 완료되었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제 2기에 돌입했다.

지적재산전략추진계획 가운데 콘텐츠산업육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만화 산업진흥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장르별 지원방식이 아닌 콘텐츠전반을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의 일부로 추진되고 있다.

만화산업진흥정책의 주요 법적 근거는 콘텐츠를 포함한 지적재산의 활용을 담은 <지적재산기본법>(2003년 3월 시행)과 <콘텐츠 창조, 보호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다. 동법 제24조에 입각해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시책을 집중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적재산전략본부'가 설립되었다. 참고로 지적재산전략본부는 일본 총리가 본부장이며 내각에 설치되어 있고, 총리대신이하 모든 각료가 본부의 부원이다.

지적재산전략본부는 2004년 5월 '지적재산전략추진계획 2004' 제 4장에서 '일본의 콘텐츠(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게임소프트 등)는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공통된 이념 하에서 관계자가 일치단결해 그 진흥에 임해왔다고 할 수 없었다"²¹⁾고 지적하고, 이의 대책으로 콘텐츠 창작자와 유통사업자간의 계약관계 재검토 등을 포함한 업계 근대화 및 합리화의 실현, 콘텐츠제작자금융조달제도의 정비, 콘텐츠제작 인력양성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적재산전략과 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의 주요 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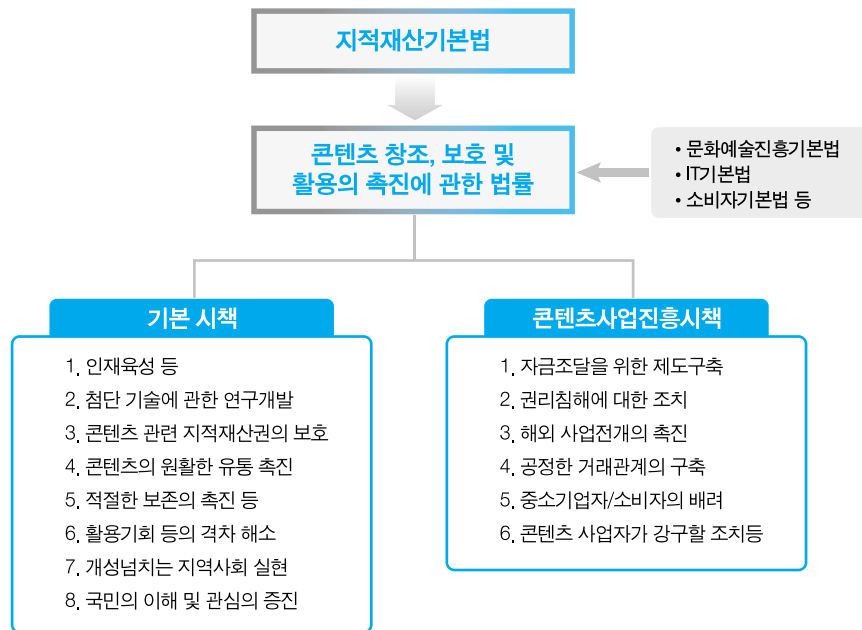
- 2002년 2월 고이즈미 총리 시정방침연설
- 2002년 3월 지적재산전략회의 설치
- 2002년 7월 지적재산전략대강
- 2002년 12월 지적재산기본법 성립, 지적재산전략본부 설치(지적재산전략추진사무국)
- 2003년 7월 지적재산추진계획 마련
- 2004년 4월 콘텐츠비즈니스진흥정책 발표
- 2004년 5월 지적재산추진계획 2004 마련,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통과
- 2005년 6월 지적재산추진계획 2005 마련
- 2006년 2월 디지털 콘텐츠 진흥전략 발표
- 2006년 6월 지적재산추진계획 2006 마련
- 2007년 3월 세계 최첨단의 콘텐츠 대국 실현을 목표로 발표
- 2007년 6월 지적재산추진계획 2007 마련
- 2008년 6월 지적재산추진계획 2008 마련
- 2009년 6월 지적재산추진계획 2009 마련

2. 콘텐츠진흥 관련법과 추진시책

1990년대에도 정부부처별로 콘텐츠진흥이 이루어져왔으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체계와 시책이 마련된 것은 <지적재산기본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이다.

지적재산기본법에 입각해 2002년에 설립된 지적재산전략본부의 업무는 지적재산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시책을 추진하는 일이다. 그밖에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시책에서 중요한 것의 기획에 관한 조사심의, 이 시책의 추진 및 종합조정에 관한 (지적재산기본법 제 25조)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그림 5-2-1 콘텐츠 육성을 위한 법체계와 주요 내용



지적재산전략기본법의 기본이념에 입각해 콘텐츠육성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2004년 5월 <콘텐츠 창조, 보호 및 활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콘텐츠진흥법')이 제정되었다.

<콘텐츠진흥법>의 기본이념은 콘텐츠의 혜택을 향수하고 문화적 활동을 행하는 기회의 확대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창조하고 다양한 콘텐츠사업의 창출, 사업의 효율화 및 고도화를 통해 경제사회의 활력을 향상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일이다.

콘텐츠진흥법의 대상은 영화, 음악, 연극, 문예, 사진, 만화, 애니메이션, 컴퓨터 게임, 영상 기타 문자, 도형, 색채, 음성, 동작 등을 가리키며, 인재육성, 선진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의 추진, 자금조달을 위한 제도구축, 권리침해 조치, 지적재산권의 보호,

해외 전개의 촉진, 유통촉진, 공정한 거래관계의 구축, 개성이 풍부한 지역사회의 실현 등을 기본 시책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2004년 말에는 콘텐츠진흥의 흐름 속에서 2004년 말, 콘텐츠산업진흥을 위한 기동부대라 할 수 있는 '영상산업진흥기구' (VIPO)를 발족시키며 구체적인 육성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문화예술진흥을 규정한 <문화예술진흥기본법>(문화청 소관)에서도 콘텐츠진흥을 규정하고 있다. 2001년에 제정된 <문화예술진흥기본법>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이념을 정하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종합적인 문화예술진흥정책을 추진해 풍요로운 국민생활과 활력 넘치는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콘텐츠진흥과 관련해서는 <동법 제 8조 2> 미디어 예술의 진흥에서 국가는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및 컴퓨터 기타 전자기기 등을 이용한 예술(이하 '미디어예술' 이라고 한다)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미디어예술의 제작, 상영 등에 대한 지원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 사회의 형성에 관한 시책을 규정한 <고도 정보통신네트워크 사회형성기본법>(2000년)에서도 콘텐츠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동법 제16조>에서는 시책의 기본방침과 관련 '콘텐츠의 충실(문자, 음성, 영상 기타 정보의 충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3. 만화진흥 관련기관

1) 콘텐츠진흥 총괄 추진체계로서 지적재산전략본부와 IT본부

(1) 지적재산전략본부

일본의 콘텐츠진흥 체계는 2002년 이전만 하더라도 관련부처가 독립적으로 진흥정책 및 사업을 실시해왔던 구조였다. 그러나 2002년 이후부터 부처별 콘텐츠 진흥전략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지적재산전략본부가 내각관방에 설치되었다.

지적재산전략본부는 지적재산의 창조·보호 및 활용으로 관한 시책을 집중적이면서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콘텐츠진흥정책의 종합적인 방향성이 구체화되었고 진흥정책추진의 체계성도 강화되었다.

콘텐츠진흥정책 방향이나 종합시책, 그리고 부처간 조정업무는 지적재산전략본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정점으로 관련 부처별로 진흥정책 및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적재산전략본부는 매년 지적재산추진계획과 이전의 추진실적을 발표하며 정책적 대비와 추진성과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매년 검토를 해 나가는 「롤링플랜방식」을 채용, 매년 「지적재

산추진계획」에서는 시책의 항목수가 450항목 이상이다. 그 밑에는 지적 창조 사이클 전문 조사회, 콘텐츠전문 조사회, 의료 관련 행위의 특허 보호의 위상에 관한 전문 조사회, 권리보호 기반의 강화에 관한 전문 조사회 등의 다양한 조사회를 운영하고 있다.

표 5-2-1 지적재산전략본부 구성멤버

구분	구성원
본부장	내각총리대신
부본부장	내각관방장관,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오키나와 및 북방정책, 과학기술정책, 혁신, 식품안전 등), 문부과학대신, 경제산업대신
본부원	총리대신, 법무대신, 외무대신, 재무대신, 후생노동대신, 농림수산대신, 국토교통대신, 환경대신, 방위대신, 국가공안위원회위원장, 내각부특명담당대신(방재), 내각부특명담당대신(금융), 내각부특명담당대신(경제재정정책), 내각부특명담당대신(규제개혁)
본부원	민간전문가 10인

2) IT전략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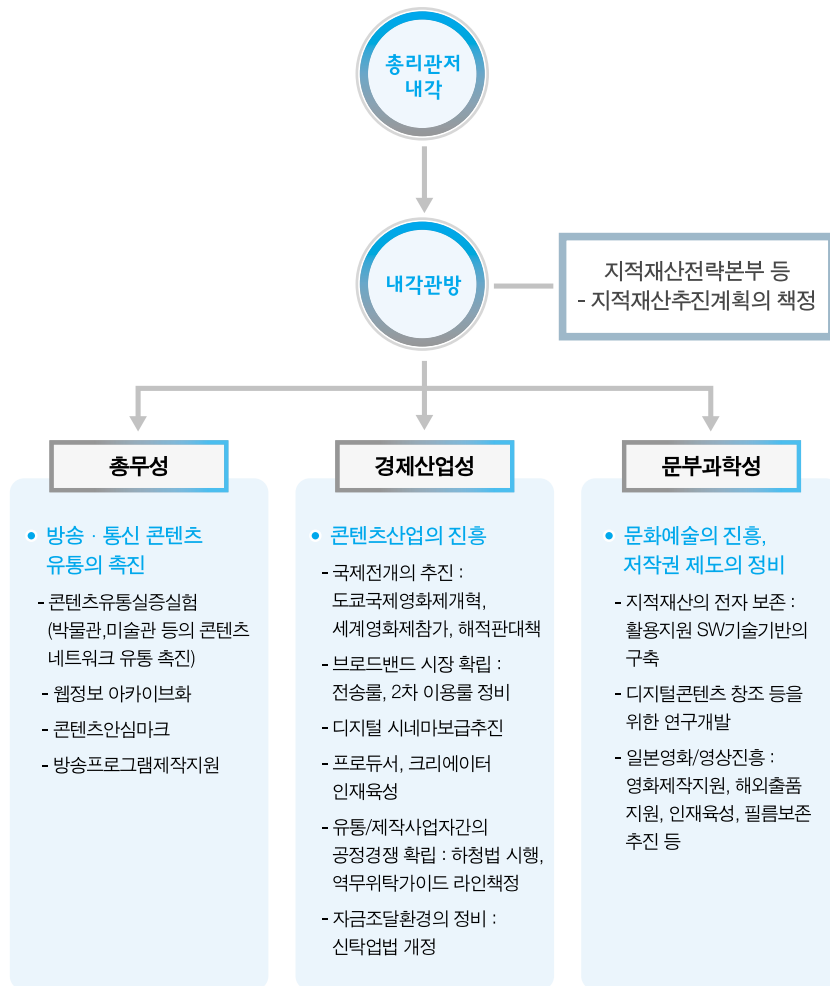
2003년 7월에 발표된 ‘e-Japan전략’의 제 2기 전략에서 기본이념을 “IT의 활용에 의해 활기·안심·감동·편리한 사회를 지향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선도적인 대책’ 7분야의 ‘지(知)’에서 콘텐츠 관련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발췌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2008년까지 모든 방송용 콘텐츠에 대해 권리주체가 희망하면 인터넷전송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정비
- 콘텐츠 관련 우수한 인력 및 자원을 확보해 콘텐츠 제작역량을 강화, 원활한 디지털콘텐츠 유통환경정비, 콘텐츠의 아카이브화 및 국내외 홍보를 추진

‘e-Japan 중점계획 2003’에서는 콘텐츠 프로듀서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정비, 콘텐츠 투자협의회 설립, 저작권 등의 권리처리 시스템 개발/실험, 브로드밴드 콘텐츠 유통기술개발/실험 등을 제시하고 있다.

‘e-Japan전략Ⅱ’ 가속화패키지에서는 기존의 콘텐츠 자산을 인터넷상에서 재이용하고, 콘텐츠 유통수단으로 인터넷 매체를 검토하며, 콘텐츠 제작기반의 강화, 정부콘텐츠의 디지털아카이브 구축과 일반이용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만화관련 진흥사업

1) 일본외무성 국제만화상

2007년에 창설된 국제만화상은 일본외무성이 주최하는 만화상으로 일본국적 이외의 만화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제만화상은 만화팬으로 알려진 당시 아소다로외무대신이 2006년 4월에 한 연설에서 “세계 각국에서 등장하고 있는 젊은 만화가에게 만화의 본가인 일본에서 권위 있는 상, 이른바 만화의 노벨상과 같은 그런 상을 주고 싶다”로 발언한 것이 계기가 되어 외무성 내부검토를 거쳐 이듬해인 2007년 5월에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대중문화외교 활용의 일환으로 해외에서 만화문화의 보급 활동에 공헌한 만화가를 포상하기 위해 ‘국제만화상’을 창설하기로 하고 ‘제1회 국제만화상 실행위원회’가 발

족되었다. 동실행위원회는 외무대신을 위원장으로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이사장 및 해외교류심의회/팝컬처전문부회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실시는 사단법인 일본 만화가협회에서 선고위원이 파견된다. 선고방식은 처음에는 추천 작품만을 대상으로 심사했으나 2차부터는 공모제로 전환되었다.

국제만화상의 내용은 국제만화최우수상 1작품, 국제만화우수상 3작품 정도를 수상하고 있다.

각 수상자에는 표창장/트로피가 주어지며 수상식에 맞춰 국제교류기금이 수상자를 10일간 정도 초청해서 일본의 만화가와의 간담, 출판사 등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표 5-2-2 국제만화상 역대 수상자 및 작품

년도	부문	수상작
제 1회 2007년	국제만화상	이지칭(홍콩)-전자병법
	국제만화장려상	KAI(홍콩)-십오이십 마도레누로스카(호주)-HOLLOW FIELDS BEN(말레이시아)-Le.Gardenie
제 2회 2008년	국제만화상	유운찬-백분백감각
	국제만화장려상	윤찬-서 Chezhina Svetlana Igorevna-초상 Alice Picard-Okheania
제 3회 2009년	국제만화상	TON JAKRAPHAN-SUPER DUNKER
	국제만화장려상	Morvan-ZAYA Corveyran-natty Kim Jeaen-Running on empty
	특별상	프레데릭 쇼트(번역가만화연구가)

2) 미디어 예술제

문화청이 주최하는 미디어 예술제에서 만화와 애니메이션 관련 시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문화청에서 정의하는 ‘문화예술’이란 디지털 표현 및 첨단기술을 이용한 미디어 아트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성이 강한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등을 포함한 개념이다. 기존의 문화장르를 넘어서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틀과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청의 미디어 예술제는 문화청과 CG-ARTS협회가 주최하고 있는 아트와 엔터테인먼트 축제이다. 미디어예술의 창조와 이의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1997년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아트부문, 엔터테인먼트부문, 애니메이션 부문, 만화부문 4개 부분에 대해 대상과 우수상을 선정하고 표창하고 있다. 수상자에게는 각각 트로피, 상금, 그리고 문화과학 대상상이 주어진다.

만화부문의 대상작품은 다음과 같다.

구분	년도	작품(수상자)
제1회	1997년	만화 일본의 고전(22명의 만화가)
제2회	1998년	사카모토료마(구로데쓰히로시)
제3회	1999년	아이 엠 홀(이시자카케이)
제4회	2000년	베가본드(이노우에다케히코, 요시가와에이치)
제5회	2001년	F씨적 일상(후쿠야마요이치)
제6회	2002년	섹시 보이스 안드로보(구로다 이오)
제7회	2003년	가지무누가다아-바람이 말하는 오키나와전(히가)
제8회	2004년	사쿠라의 나라(고우노시요)
제9회	2005년	실종일기(고즈마히데오)
제10회	2006년	태양의 묵시록(가와구치기이치)
제11회	2007년	모리노야사가오(고다마모리)
제12회	2008년	피아노의 숲(잇시키마코도)
제13회	2009년	빈란드 사기(고오무라마코토)

제2절 유럽

유럽만화의 대표적인 국가는 이른바 ‘불어권 만화’의 양대 주자, 프랑스와 벨기에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프랑스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가장 대표적이다. 이러한 역량의 증거물로서 국립규모의 만화진흥기관인 ‘국제만화이미지 도시(Cité internationale de la bande dessinée et de l’image : 이하 CIDBI)’가 존재한다. 만화라는 특정 장르의 진흥을 위한 기관으로서의 현재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고 있다. 벨기에는 유사한 시기에 ‘벨기에 만화센터(le Centre Belge de la Bande Dessinée : CBBD)’를 개관했으나 규모나 역할 면에서 아직 프랑스를 따르고 있지 못하다. 반면 유럽의 다른 국가들은 전통적으로는 주로 미국만화나 불어권 만화, 최근엔 일본만화를 수입, 번역해서 유통하는 경우가 많아 자국만화 영역을 제대로 지니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다. 일반적인 문화예술 범위 전체에 대한 지원책을 제외하고 만화만 별도로 정책을 진행하는 곳을 보기 힘들다. 유럽국가들 중에서 이탈리아나 스페인이 자국 만화시장을 지니고 있는 편이며, 유럽에서 중요한 만화축제를 개최하고 있지만 아직 진흥기관은 지니고 있지 못하며, 영국은 자국만화시장의 규모가 아주 약하지만, 최근에 만화박물관이 생겨남으로써 만화문화발전의 근간을 쌓았으나 엄밀히 만화정책을 편다고 하기 힘들다.

따라서 유럽의 정책동향을 제시하기 위해,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프랑스

의 대표적인 축제나 기관을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보이는 프랑스의 CIDBI의 존재목적과 미션, 그 활동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분석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려고 한다.

1. 영국

영국은 50년대부터 출판된 미국만화가 직접 배급되었고, 이후에는 마벨이나 DC사가 직접 회사를 세우거나 유통사를 거쳐 왔기에 자국 만화보다는 미국만화 위주로 만화시장이 형성되었다. 오늘날에는 그래픽노블과 만가가 그 영역을 나누고 있다. 자국 만화시장이 미약한 편이고, 만화관련기관으로는 2006년에 에딘버러 공작이 런던에 세운 '만화박물관(The Cartoon Museum)'이 대표적이다. 영국 만화, 카툰,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자료의 보관 및 연구, 많은 대중에게 소개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시회 및 약 3,000권에 달하는 만화책을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을 개방하고 있다.

- 주소 : 35 Little Russell Street London WC1A 2HH.
- 홈페이지 : <http://www.cartoonmuseum.org>

2. 이탈리아

이탈리아에서 만화는 '퓌메토(Fumetto)' 라며, 말풍선을 지칭하는 명사에서 기인했다. 세르쵸 보넬리(Sergio Bonelli), 마벨(Marvel), 파니니(Panini), 디즈니(Disney)같은 만화전문 거대출판사들이 이탈리아의 만화시장을 독차지해왔으며, 마벨이나 디즈니처럼 해외만화가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프랑스의 앙굴렘 페스티벌이 이탈리아의 만화페스티벌에서 영감을 받아 생겨났듯이 자국만화의 파워가 적지 않았으나 점차 줄어들어왔다. 현재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만화축제로는 1999년에 만들어진 '나폴리 코믹콘(Napoli comicon)'이 있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프랑스의 앙굴렘과 더불어 유럽의 3대 만화페스티벌로 분류되며, 약 10만 명의 관객들이 찾는다.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만화진흥정책이나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 나폴리 코믹콘의 주소 : via Chiaia, 41
80121 Napoli (Italy)
- 홈페이지 : <http://www.comicon.it>

3. 스페인

스페인에서 만화는 '테베오(Tebeo)' 라고 불리는데, 이는 1917년 최초로 스페인에 생겼던 만화잡지의 이름에서 유래한다. 대부분의 스페인 만화는 브루게라(Bruger) 계열에서 출판된 전체 연령층을 위한 만화와 80년대에 투테인(Toutain)같은 진취적인 출판사에서부터 시작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화로, 그리고 작가주의 만화로 진화했다. 비록 미국이나 프랑스, 일본처럼 만화 강국은 아니지만, 자국 만화를 지니고 있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직적인 정책지원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국제만화페스티벌(FICOMIC)' 이 유럽에서 중요한 행사이며, 2010년으로 28회를 맞았다는 점이다. 특히 2010년에는 2012년 '만화일러스트레이션 박물관' 이 바르셀로나의 북쪽인 바달로냐(Badalona)에 개관할 것이라는 점을 발표했다. 축제에 이어 박물관이 만들어지는 것은 지속적인 형태의 만화관련 문화진흥기관이 생긴다는 의미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볼 수 있다.

- 국제만화페스티벌 위원회의 주소 : Palau, 4
08002 Barcelona (Spain)
- 홈페이지 : <http://www.ficomic.com/>

비록 미국이나 프랑스, 일본처럼 만화 강국은 아니지만, 자국만화를 지니고 있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직적인 정책지원을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벨기에

벨기에는 프랑스와 더불어 전통적인 만화 강국으로 '불어권 만화' 를 함께 형성해왔다. 1989년 벨기에의 국왕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벨기에 만화센터(le Centre Belge de la Bande Dessinée : CBBD)' 가 개관했다. 1년에 약 20만 명의 방문객을 맞는 이 센터는 아르누보 건축가로 유명한 빅토르 호르타(Victor Horta)가 1906년에 지은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다. 국가차원의 지원은 이 건물을 센터에 무료로 대여하는 것에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센터에서는 전체 운영비를 전시회와 도서관 입장료 수익, (유명한 건물이므로) 결혼식이나 행사를 위한 공간 대여, 또는 우체국과 더불어 만화우표 제작 판매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작가들의 오리지널 원고를 무료로 보관해 주면서, 기획전시를 한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오리지널 원고의 무료 보관 및 전시이며, 그 외의 정책적 차원에서의 작가나 작품지원은 없으며 할 수도 없다. 이처럼 만화의 문화적 기능을 보존 및 확대 서비스하는 것으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 벨기에 만화센터 주소 : Rue des Sables 20
1000 Brussels
- 홈페이지 : <http://www.cbdb.be>

5. 프랑스

앞에서 언급한대로 우리는 CIBDI의 존재목적과 미션, 그 활동을 분석하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진흥기관’의 역할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변별점이 생기는 지점이 어디인가를 살펴보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만화관련 정책을 고민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이를 위해 우선 국립기관으로의 변모과정에서 CIBDI의 목적과 미션의 정의를 살펴보고, 이어서 2009년 활동보고서를 통해 CIBDI의 활동영역을 짚어보려고 하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을 정리하려고 한다.

1) 국립기관으로의 변모

① ‘국립만화이미지센터(CNBDDI)’에서 ‘국제만화이미지도시(CIBDI)’로

1974년부터 시작한 ‘앙굴렘 국제만화페스티벌’이 성공리에 지속됨에 따라, 앙굴렘시의 미술관은 행복한 고민에 빠져든다. 만화가들이 앙굴렘시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페스티벌 기간동안 활용했던 오리지널 만화원고들을 지속적으로 기증했기 때문이다. 1983년 앙굴렘 미술관은 프랑스 만화의 아버지중의 한 명이라고 볼 수 있는 생 오간(Saint-Ogan)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그의 이름이 붙은 전시실을 만들면서, 더 이상 원고들을 보관할 공간이 없다고 보고했다. 1984년, 당시 문화부 장관이었던 자크 랑(Jack Lang)은 프랑스의 대통령 프랑스와 미테랑의 주요 프로젝트중의 하나로써, 앙굴렘시에 ‘국립만화이미지센터(Centre national de la bande dessinée et de l’image : 이하 CNBDDI)’ - 박물관, 미디어관, 디지털 이미지센터를 가지게 될 종합센터-를 건설할 계획을 발표했다. 1985년 롤랑 카스트로(Roland Castro)와 장 르몽드(Jean Remond) 건축가가 이끄는 팀이 센터의 건축가로서 뽑혔고, 이들은 폐쇄된 공장의 구조를 그대로 활용해서 건물을 설계했다.

CIBDI는 1990년에 개관하는 동시에 만화도서관도 개관했고, 다음해에는 만화박물관을 개관했다. 약 7여 년간의 성공적인 활동이라는 평가에 힘입어, 만화부문에서의 센터의 활동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2007년 9월 역할만 ‘국립’이었던 센터는 명실공히 ‘상공업적 문화협력 공공기관(Etablissement public de coopération culturelle à caractère industriel et commercial)’으로 승격한다. 이는 문화부와 앙굴렘시, 샤랑트 도(Charantes Département), 포와투-샤랑트 지방(Poitou-Charentes Région)²²⁾, 즉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정부들의 합작품이다. ‘문화협력 공공기관

(EPCC)'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는데, CIBDI는 '상공업적' 활동을 벌일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이 문화협력공공기관(이하 EPCC)은 한 지방자치정부나 또는 지방자치제연합 공공기관(Etablissement public de coopération intercommunale : EPCI)이 공공의 문화적 목적을 위해 설립할 수 있는 것으로 재단법인이자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특수법인으로 2002년 1월 4일자 법에 의해 선포되었다. EPCC는 기존의 공공기관들의 형태로 보장할 수 없는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 만들어졌다. 예컨대 지방자치정부가 출자하는 기관들에 중앙 예산을 안정적으로 투입할 수 없었다거나, 또는 예산 투여기간이 제한 적이었다거나 등의 문제들이다.

② CIBDI의 목표 및 미션

CIBDI의 설립 목표는 '프랑스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만화와 이미지를 진흥하고 가치를 부여하며, 그 생산물들을 풍부하게 하고, 그 유물들을 잘 보관하는 것'이다.

CIBDI의 미션은 크게 두 가지로, 일반적 미션과 특수한 미션으로 분류한다.

첫 번째 범주의 미션은,

- 모든 종류의 미디어를 활용하는 오리지널 작품들, 오브제들, 자료들, 특히 만화박물관과 앙굴렘 시에 귀속된 물품들을 모으고 보관하고 연구, 평가하고 유통시키는 것
- '창작지원관((Maison des Auteurs)'을 통해 작가들을 지원하고 창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그들의 출판 및 유통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는 것
- 지역의 그리고 전국의 작가들에게 창작활동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것
- 행사, 전시, 상영, 스펙터클, 컨퍼런스, 인턴십, 그리고 만화와 이미지에 관련된 모든 다른 예술적 문화적 행사들을, 가장 광범위하고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도록 조직하도록 돕는 것. 특히 앙굴렘 국제만화페스티벌 기간 동안에 관련된 모든 기관들과 협력하여 이러한 활동들을 조직하는 것
- 만화와 이미지의 영역 내에서 변화와 소통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

두 번째 범주, 특수한 미션으로는, 우선 창작지원관과 연관된 임무로서,

- 창작지원관은 시각적 창작(만화, 일러스트레이션, 멀티미디어, 애니메이션)을 진흥하고,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품들을 공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를 지닌다

- 이러한 목표 하에 창작지원관은 CIBDI의 디렉터가 허용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한된 기간 동안 지내는 초청작가들에게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프로젝트들을 실현 하는데 필수적인 작업장 및 물품들을 제공한다.
- 지역의 또는 전국의 작가들 단체들에 대해 창작활동을 진흥할 수 있는 서비스 전체를 보장해야 한다. 예컨대 창작지원관 내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기들, 자료실 및 내부 및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벌여야 한다.

그리고, 국립박물관인 만화박물관과 연관된 임무들로서,

- 박물관의 컬렉션들을 보관, 복원, 연구 및 풍부화하는 것
- 더 광범위한 대중들에게 컬렉션들을 접근가능하게 하는 것
- 모두에게 문화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육과 접근기회를 확대시키는 것
- 접근기회를 확대시키는 것만 아니라 지식과 연구 분야에 있어서 진보하게끔 만드는 것

③ CIBDI의 조직 및 예산

CIBDI의 상층조직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공무원 13인들로 구성된 이사회, 그리고 전체 실무를 총괄하는 1인의 총 디렉터, 만화와 이미지관련 전문가들 16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창작지원관 작가선정위원회로 구성된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미션들을 실행하기 위해 CIBDI는, 창작지원관, 만화도서관, 만화박물관, 만화서점, 두 상영관을 포함한 영화관, 멀티미디어 기술센터들을 보유해야 한다.

매년 지원예산은 도정부가 39%, 국가가 26.5%, 시정부가 24.5%, 그리고 지방정부가 10%를 감당하게끔 고정되어있다. 즉, 예산규모는 변동이 가능하더라도, 각급 정부들이 출연해야 하는 비율은 정해져있다. 지원예산 이외에 필요한 예산은 총 디렉터의 기량에 달려있다. 수익사업 또는 디렉터의 범주(유럽연합, 국가, 다양한 법인, 기업)의 지원금 및 후원금을 확보해야 한다.

2) 2009년 CIBDI의 업무 요약

2010년에 발간된 CIBDI의 업무보고서를 보면, 위에서 언급한 자신들의 미션을 6가지 업무영역으로 분류해서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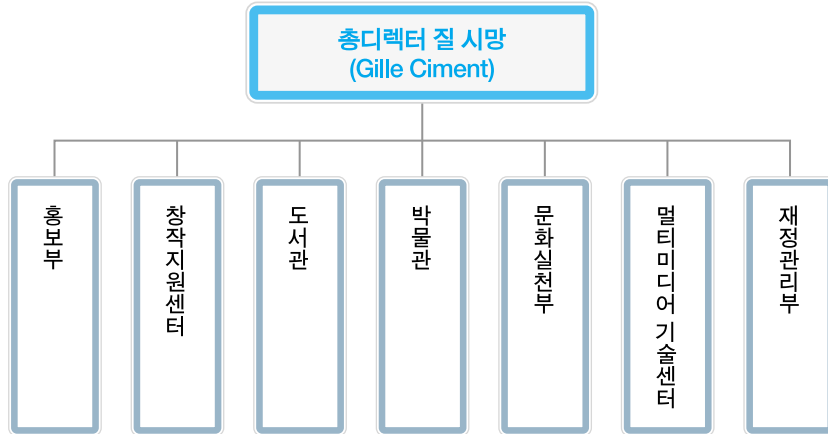
첫 번째 조직과 인원, 예산항목은 별도로 정리했다.

- ① CIBDI의 조직과 인원, 예산
- ② 유산의 보고(寶庫)로서의 CIBDI
- ③ 창작자와 창작으로서의 CIBDI
- ④ 문화적 야망으로서의 CIBDI
- ⑤ 주요 자료들의 집합체로서의 CIBDI
- ⑥ 멀티미디어 기술센터로서의 CIBDI
- ⑦ 다양한 회의 개최장소로서의 CIBDI

① CIBDI의 조직과 인원, 예산

총 66명이 7개의 부서에서 일하고 있으며, 조직도는 아래 그림과 같다. 2009년에 지원받은 총 예산규모는 약 230만 유로, 약 36억원에 해당하지만, 이 규모는 인건비(약 160만 유로)를 제외하고 나면 사업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안정적인 지원예산 이외에도 약 100만 유로를 자체 수입 및 기타 다른 국내외 기관들 및 후원으로 채우고 있다. 따라서 총 예산규모는 약 330유로, 약 51억 규모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5-2-3 CIBDI 조직도



② 유산의 보고(寶庫)로서의 CIBDI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박물관협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CIBDI의 첫 번째 임무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만화라는 유산을 아래 세대에 잘 물려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새 국립만화박물관이 2009년 6월에 개관했는데, 그 총 비용은 965만 유로가 투입되었다. 비용의 40%를 유럽연합에서, 각기 17.23%씩을 중앙정부와 지방

(region) 정부가, 그리고 25.54%를 마젤리스(Magelis)²³⁾에서 제공했다. 박물관 총 면적은 4,068㎡로, 이 중에서 상설전시실이 1,330㎡, 기획전시실이 390㎡, 서점이 266㎡, 사무실공간이 81㎡, 컨퍼런스실이 90㎡(70좌석)이며, 3개의 수장고가 총 550㎡를 차지한다.

2009년 한해 박물관은 31점의 오리지널 원고를 총 4만 유로에 구입했다. 이는 기부까지 포함한 숫자이다. 2009년 한해 도서관은 5,612권의 만화서적을 구입 또는 납본제 덕분에 인수하여 현재 총 53,178권을 보유하고 있다. 잡지는 2,821권을 구입 또는 납본제 덕분에 인수하여 총 118,896권이 되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지원으로 885권의 원어 만화책을 구입하여 현재 14,260권의 원어 만화책을 보유하고 있다.

그 외 보유하고 있던 오리지널 원고들 및 오브제들을 10여개의 프랑스 내·외부 대역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마블사의 복본 만화책들을 한국의 부천만화정보센터(현 한국만화영상진흥원)와 바르셀로나의 만화도서관에 기증하기도 했다. 그리고 디지털화시킨 1800년대 말기의 잡지들, 70여장에 이르는 복원한 오리지널 원고들을 인터넷상에 제시했다.

③ 창작자와 창작으로서의 CIBDI

창작지원관은 2009년에 총 32명의 창작자들을 맞이했다. 약 80%에 해당하는 창작자들은 약 1년간만 이곳에서 머무르며, 이중 12명이 외국인이다. 32명중 11명이 창작지원관만 아니라 CIBDI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지원자들이 늘어감에 따라 창작지원실 및 아틀리에를 더 늘려야하는 필요성은 많이 제기되고 있으나 예산상의 한계로 선불리 접근하고 있지 못하다. 창작지원관 내외의 작가들 30명이 법률조언의 도움을 받았다.

창작지원관은 앙굴렘 페스티벌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대표적으로 '24시간'이 있는데, 이는 한 작가가 24시간 내에 24장의 원고를 완성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총 453명의 작가들이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참여했고, 만여 장에 이르는 원고들이 모였으며, 이는 상시적으로 www.24hdelabandedessinee.com라는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페스티벌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CIBDI측의 배려중의 하나이다. 이 중 세 작가의 작품이 출간되기도 했다. 그 외 국립게임학교와 더불어 게임 배틀을 진행했고, 그리고 CNC(국립영화진흥위원회)와 더불어 시나리오 공모전을 진행했다.

④ 문화적 야망으로서의 CIBDI

2009년 한해, CIBDI의 유무료 관람객 전체가 약 9만 7천 명이다. 앙굴렘 페스티벌 기

23) 원어로는 '혼합조합'(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조직이다)인데, 이해하기 쉽기로는 '지역 클러스터'라고 생각하면 된다. 교육, 경제, 문화라는 세 축의 상호보강을 목적으로 선정된 이미지 관련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자체 건물들을 보유하여 앙굴렘으로 이전하는 애니메이션 제작사에게 싸게 대여하기도 한다.

간동안의 CIBDI 관람객이 1만 5천여 명 정도인 것을 보면, 페스티벌 기간 이외에도 상시적인 관람객수가 꽤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좀 더 많은 이들에게 더 창조적이고, 더 문화적이고, 더 다이나믹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CIBDI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연극, 무용, 영화 등 다양한 매체들과 접합시키고, 국내외 대표적인 문화진흥기관들과의 교류를 넓혀나가면서 명실공히 국립의, 또는 국제적인 지위를 확장시켜나가고 있다.

2009년 한 해 동안 진행한 행사들 중 대표적인 것만을 뽑아본다면, 13개의 국내외 만화작가들을 다룬 전시들, 매달 한번 목요일마다 만나는 만화독자들 간의 대화, 페스티벌 동안에 진행되는 '세계적인 만화가들과의 만남', 현재 진행 중인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가와의 대담', 한 달에 한번씩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만화가의 목소리', 현실적인 과제들에 대한 컨퍼런스들, 만화와 관련된 문화적 공연 등을 주재했다.

또한 CIBDI의 영화관에서는 일반 영화관에서 보기 힘든 예술영화 애니메이션 및 기획 상영회들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들은 또한 '앙굴렘 불어권 영화 페스티벌'이나, '애니메이션 페스티벌'과 함께 연계해서 진행되기도 한다. 한 해 동안 영화관 입장객수만 약 38,000명으로, 14만유로 가량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만화전문서점에서는 2009년 한해 약 48,000권의 만화책을 팔았고, 그 규모는 총 46만 유로에 이른다.

문화적 활동 중 빠트릴 수 없는 것이 CIBDI의 교육 프로그램이다. 2009년 6월 박물관 개관 때부터 시작한 교육 프로그램들에 총 1,197명이 등록했다.

⑤ 주요 자료들의 보고(寶庫)로서의 CIBDI

CIBDI는 앙굴렘 지역의, 프랑스 전역의, 또한 국제적으로도 주요한 자료들의 집합처이자 만화를 통한 소통의 중심지이다. 만화도서관의 2009년 1년간 대출회수가 85,459회로, 2008년 대비 6.27% 증가했다. 2009년 열람실에 비치된 만화책 숫자는 총 27,423권으로 이 중에서 15,716권이 성인용이고, 8,169권이 아동용이다. 만화책 이외에도 아동용 자료 278개, 성인용 1,486개, 그리고 만화잡지 1,774개종이 비치되어 있으며, 이는 2008년보다 2,578권이 더 추가된 것이다.

연구 및 현안에 대한 토론이나 컨퍼런스의 조직은 CIBDI의 주요 미션중의 하나이다. 2009년에는 도서관 사서들과 함께 '만화와 각색'이라는 테마로 컨퍼런스를 조직했고, '디지털 매체환경에서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가?', '디지털 세계에서 의 만화' 등의 주요 토론회를 열었다.

그 외 지방 예술교육위원회, 지방 서적센터, 파리의 과학관 등 다양한 기관들과 함께 만화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거나 협약을 맺어 공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국내만이 아니라 빌바오 미술관, 포르투갈, 러시아,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등의 다양한 만화관련 기관 및 페스티벌과 함께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현지에서만이 아니라 거리가 떨어져도 자료들을 즐길 수 있도록, 웹상에서 불어권 만화 약 100종을 발견할 수 있는 웹사이트, www.bdmix.org를 열었다. 공식

인터넷 사이트는 2009년 총 46만 명이 다녀갔고, 2,900만 페이지뷰가 기록되었다.

다양한 테마별, 작가별, 작품별 전문자료들을 제공하는 만화자료센터는 2009년 반일 서비스가 96회, 그리고 일일 서비스가 67회 요구되었다.

⑥ 멀티미디어 기술센터로서의 CIBDI

CIBDI의 멀티미디어센터는 2008년부터 전체 컴퓨터 및 프로그램, 장치들의 교환을 위한 준비에 나섰고, 결국은 2009년에 실행에 옮겼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기들은 300여개의 컴퓨터(노트북 포함), 110개의 전화, 25개의 무선전화기, 25개의 무선전화 지점 등이다.

⑦ 다양한 회의 개최장소로서의 CIBDI

총 225명을 수용할 수 있는 CIBDI는 식당, 넓고 쾌적한 주차장, 문화적 분위기까지 포함함으로써 매력적인 회의장이 되고 있다. 회의규모에 따라 8개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다양한 중소기업의 영상 페스티벌이나 모임에 활용되었다.

3) CIBDI의 시사점

CIBDI의 설립목적과 미션, 그에 따른 활동을 점검해보자면 우리의 진흥정책과는 많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국립규모의 만화 진흥기관이 없다. 부천시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있지만 부천시 출연기관이다. 국립규모의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만화만을 다루는 곳이 아니며, 인력부족으로 만화관련 정책을 원활하게 생산하고 있지는 못하다. 프랑스의 CIBDI는 여러 가지 점에서 한국의 만화진흥정책이 고심해야 할 점들을 보여준다.

첫째로, CIBDI는 문화적인 원칙에 중요성을 둔다는 점이다. 한국의 만화진흥정책이 만화의 산업적 측면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면, CIBDI는 철저하게 문화적인 원칙을 지키고 있다. 이는 만화의 산업적 특성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산업적 질서가 건전하게 지켜지도록 관리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인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경제적 이윤을 산출할 수 있을 것 같은' 작품과 작가에 지원하지 않는다. 정확히는 작품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제도가 아예 없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작품지원 시스템이 전혀 없느냐하면 그건 아니며, 이런 직접적인 지원은 다른 공공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앙기관인 '국립서적센터(Centre national du Livre)'에서 뛰어난 만화책 프로젝트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만화가에 대한 지원은 일반적인 창작자라는 범주에 함께 포함되어 지원된다. 위에서 언급했던 '마즐리스' 역시 작품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하고 있다. 달리 말하자면, 이미 지원하고 있는 영역에 또다시 중복지원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대신 창작지원관 같은 작업실이나 거주 아파트 제공, 법률 서비스, 좋은 작품 선정을 통한 작품 홍보 등 간접적인 지원이 주를 이룬다.

두 번째로, CIBDI는 미션중의 하나를 만화라는 표현양식의 보관 및 관리, 연구, 소
 통으로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만화책이나 원고의 보관원칙이
 나 수집원칙을 확고히 세우고 그에 따라 실행한다. 오리지널 원고는 박물관이, 만화책
 은 도서관이 보관하고 관리한다. 점점 더 올라가는 오리지널 원고의 가격 덕분에 아주
 오래된 비싼 원고 대신, 그보다는 저렴한 중진급 원고의 구입이라는 원칙을 만들고 지
 킨다. 출판된 만화서적은 전수보관이라는 원칙 하에, 국립중앙도서관과의 협약 하에,
 납본제로 유입되는 만화들 중 한 권은 무조건 CIBDI로 들어온다. 이 책들은 전량 수
 장고에 들어가고, 이 중에서 열람실에 비치할 책들을 선정, 구입하여 독자들에게 서비
 스한다. 연구 없이, 또는 연구자들과의 네트워크 없이 어떤 책들을 구입하고 보관할
 것인지 알 수 없다.

세 번째로 모든 만화적 실천의 장을 포괄하고 있으며, 필요한 논의꺼리에 대해 즉각
 적으로 개입한다는 점이다. CIBDI의 운영위원회에는 만화가, 서점, 출판사, 만화관
 련기자 등 다양한 직업군들이 포괄되어 있다. 이들은 필요할 때 회의를 요청할 수 있으
 며, 각 영역의 상황과 입장을 CIBDI에 전달할 수 있다. 또한 CIBDI와 만화가노조와
 의 밀접한 관계 역시 많은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열려있는 만화내부의 네트워크를 통해
 만화계의 문제점이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감지되면 CIBDI는 바로 컨퍼
 런스나 세미나를 통해 제기하며,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발언하고 조율한다.

네 번째로 국내외 다양한 장르, 다양한 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이다. 좀 더 광범한
 대중과 만나기 위해, CIBDI는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을 고민한다. 만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일반 도서관 사서들, 문화예술 교육자들, 학교 선생님들에게 만화교양 프로그
 램을 생성해서 그를 실현한다. 이들을 위한 좋은 만화책 리스트를 선정하고, 그를 경
 험하게 하고, 그를 통해 미래의 만화애호가들을 길러내려고 한다. 그리고 영화, 애니
 메이션, 무용 등 다양한 장르들과 만화를 결합시키는데 고민하거나, 관련 페스티벌과
 의 협약을 통해 만화를 선전한다. 예컨대 '서적 살롱'에 만화의 날을 만든다든가, 영화
 페스티벌을 CIBDI에서 진행한다든지, 라디오방송국과 만화관련 프로그램을 만들게
 한다든가 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을 통해 다양한 기타 기관들로부터 예산
 을 확보한다. 예컨대 국립중앙도서관은 CIBDI의 도서관 수장고가 '오리지널 만화책'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다. 즉, 번역본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출간된 형태
 그대로 구입한다는 의미이다. 또 '박물관의 친구들'이라는 후원단체는 1년에 몇 장의
 오리지널 원고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입한다. 이러한 네트워크가 부족한 예산
 을 충당하고, 더 많은 독자들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다섯 번째로, 국내외 만화전문가 네트워크이다. CIBDI는 형식적인 만화진흥기관
 이 아니라, 만화를 좋아하고 연구하는 이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한
 다. 그렇기에 해외의 만화진흥기관, 또는 일반 문화예술진흥기관이 이들과 즐겁게 일
 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형성된 다양한 네트워크가 CIBDI의 컬렉션이나

정보들을 풍부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 예컨대 앞에서 언급한 해외 오리지널 만화책의 선정은 그 나라의 만화전문가들이 직접 도움을 주는 것이다. 박물관 개막전에 열렸던 100%라는 전시에서 해외의 만화가들과 컨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역시 각 나라의 만화전문가들이다.

한국과 프랑스의 만화시장 상황은 동일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정책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시장의 상황이 비판해야 할 만큼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그냥 내버려 두고, 시장의 본래적 목적에서 벗어난, 공공적인 만화진흥책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CIBDI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라는 부분은 성찰을 야기한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몇 세대 이후의 사람에게도) 양질의 만화를, 만화를 통한 문화적 체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경제적 이윤을 산출할 수 있을 것 같은 작품은 시장이 알아서 선택하게 되어있다. 현재 한국의 만화진흥책이 문화와 시장 양자를 모두 잡겠다는 의도 하에 양자 모두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성을 던져준다. 10년에 이르는 지원에도 불구하고, 만화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은 진흥정책의 원칙을 비교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이는 이러한 정책을 제시하고 실현할 수 있는 국립급 진흥기관, 정책을 산출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와 네트워킹이 가능한 인력, 만화계를 구성하는 각 영역의 논의 테이블 등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제3절 중국

중국의 동만 산업(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은 21세기 초 정책적인 입안이 시작되어 2003년부터 중국 청소년과 아동들의 절대적인 호응을 바탕으로 유행을 타기 시작했다. 그 후, 2004년부터 동만 산업의 육성정책이 가시화 되어 11차 5개년시기(2006-2010)는 중국 동만 산업을 보호 육성하는 체계적인 정책이 추진되었다. 현재는 외형적으로 일정한 산업규모를 갖추었지만 내용적으로는 한계와 문제점을 여전히 지니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에서도 동만의 유행이 계속되고 있지만 본질적인 경쟁력과 인프라를 갖추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수익화 역시 여전히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성공모델은 있지만 비즈니스 모델이 없는 매우 모호한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PWC와 해외 연구기관이 제시한 수치에 따르면 연평균 성장률이 있어서 만화산업이 5.2%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성장세가 다른 중국의 문화산업 분야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 영화산업과 게임 산업이 최근 5년간 평균 성장세가 각각 24.3%, 30%로 나타나는 것과 비교하여도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문화부는 만화,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고, 2009년 7월에는 원자바오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문화산업진흥 계획이 통과하여 9월 27일에 발표 된 바 있다.

문화산업진흥계획

1. 문화산업진흥을 가속시키는 중요성, 긴박성

2. 지도사상, 기본원칙, 계획 목표

- 1) 지도 사상
- 2) 기본 원칙
- 3) 계획 목표
 - (1) 문화시장 주체를 한층 더 성숙시킨다.
 - (2) 문화산업 구조를 최적화시킨다.
 - (3) 문화창신 능력을 한층 제고시킨다.
 - (4) 현대문화 시장시스템을 성숙시킨다.
 - (5) 문화상품과 서비스수출을 한 단계 확대시킨다.

3. 중점 임무

- 1) 중점 문화산업 발전
- 2) 중대 프로젝트 유도전략 실시
- 3) 중견 문화기업 육성
- 4) 문화산업원구와 기기 건설 강화
- 5) 문화소비 확대
- 6) 현대 문화시장시스템 건설
- 7) 신흥 문화산업형식 발전
- 8) 대외 문화무역 확대

4. 정책 조치

- 1) 진입장벽을 낮춘다.
- 2) 정부투입을 증가한다.
- 3) 세금정책을 실시한다.
- 4)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 5) 중국문화산업 투자펀드를 설립한다.

5. 보증 조건

- 1) 조직지도를 강화한다.
- 2) 문화시스템 개혁을 심화한다.
- 3) 문화산업 인재를 육성한다.
- 4) 입법 사업을 강화한다.

출처: 문화산업진흥계획

2010년 1월에는 북경에서 열린 전국 만화, 애니메이션 좌담회에서 문화부, 재정부, 국가 세무국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만화, 애니메이션 100대 인증기업을 발표했다.

표 5-2-4 2009년 전국 만화, 애니메이션 기업 인증관리 판공청 인증 100대 기업명단

번호	기업명	번호	기업명
1	央视动画有限公司	51	常州泰奥影视动画有限公司
2	北京辉煌动画公司	52	常州宏图动画有限公司
3	北京卡酷全卡通动画文化有限公司	53	常州恐龙动画文化创意有限公司
4	北京水晶石影视传媒科技有限公司	54	常州悦辰动画发展有限公司
5	北京随手互动信息技术有限公司	55	常州卡龙影视动画产业有限公司
6	北京梦工场动画科技有限公司	56	常州卡米文化(传媒)有限公司
7	华益天信科技(北京)有限公司	57	常州三浦灵狐动画产业有限公司
8	北京青青树动画科技有限公司	58	常州仁永影视动画有限公司
9	北京千雅文化(传媒)有限责任公司	59	常州浩昊文化(传媒)有限公司
10	北京万方幸福数字科技有限公司	60	常州水木数字信息技术有限公司
11	北京魔屏科技有限公司	61	常州中广笑一笑影视动画制作有限公司
12	北京阳光力加传媒科技有限公司	62	浙江中南集团卡通影视有限公司
13	北京妙音动画艺术设计有限公司	63	杭州九越数字动画有限公司
14	北京神笔动画制作有限公司	64	杭州保石石器数字科技有限公司
15	北京百穗文化传媒有限公司	65	福建金牛动画艺术设计有限公司
16	北京迪生通传媒科技有限公司	66	福州五朵动画数字科技有限公司
17	北京羊羊兔文化发展有限责任公司	67	泰豪集团江西动画产业有限公司
18	北京华映星球国际文化发展有限公司	68	江西慧谷泛投资建设发展有限公司
19	北京华娱无线科技有限公司	69	江西泛美动画影视传媒有限公司
20	开群网络科技有限公司	70	萍鄉市凯天网络有限责任公司
21	北京龍文鼎盛國際傳媒科技有限公司	71	萍鄉市凯天网络有限责任公司
22	北京東方万象文化有限公司	72	鄭州小雙桃卡通藝術有限公司
23	北京藍月谷文化傳媒有限公司	73	江通动画股份有限公司
24	北京三浦灵狐动画艺术设计有限公司	74	湖南宏夢卡通传媒有限公司
25	北京浩昊科技發展有限公司	75	湖南金鷹卡通有限公司
26	北京动画梦工场影视文化有限公司	76	湖南山猫卡通有限公司
27	天津神界漫画有限公司	77	湖南互动传媒有限公司
28	天津畫國动画创意有限公司	78	湖南哆咪七朵影视文化(传媒)有限公司
29	天津福丰達影視科技投資發展有限公司	79	湖南盈豐數碼卡通產業發展有限公司
30	天津天影动画有限公司	80	湖南九天星文化(传媒)有限公司
31	天津市灵感创意动画制作有限公司	81	湖南金鹿夢馬影視傳媒文化有限公司
32	天津市仁永影视动画制作(传媒)有限公司	82	湖南浩丰文化(传媒)有限公司
33	天津市豪峰动画科技有限公司	83	湖南藍猫卡通傳媒有限公司
34	河北精英影视文化(传媒)有限责任公司	84	广东宇航鼠动画有限公司
35	河北极限科技有限公司	85	广州漫友文化科技發展有限公司
36	石家庄市深度动画科技有限公司	86	广州奧飛文化(传媒)有限公司
37	山西會景影視动画有限公司	87	深圳市深動力动画艺术设计有限公司
38	山西匯眾动画科技開發有限公司	88	深圳華強數字动画有限公司
39	內蒙古東聯影視动画科技有限責任公司	89	深圳市点石数字科技有限公司
40	大連水晶石数字科技有限公司	90	深圳市盈富通科技有限公司
41	長春市銘諾文化(传媒)有限公司	91	深圳市哈哈动画文化(传媒)有限公司
42	黑龍江新行羊科技有限公司	92	四川博隆动画有限公司
43	哈爾濱智慧动画藝術有限公司	93	成都附騰數碼藝術設計有限公司
44	牡丹江大鵬盛影視动画有限公司	94	成都陈青英设计制作有限公司
45	上海水木动画艺术设计有限公司	95	貴州崑崙文信息傳媒有限公司
46	上海今日动画影视文化有限公司	96	陝西嘉荷空間圖像設計有限責任公司
47	江蘇久通动画产业有限公司	97	西安新昆信息科技有限公司
48	常州安利动画有限公司	98	西安長風影視文化(传媒)有限公司
49	常州漁夫动画有限公司	99	西安創夢數碼有限公司
50	常州情韻影視数字科技有限公司	100	西安市亿利達網絡信息技術有限公司

2010 만화산업백서

Cartoon Industry White Paper 2010

1. 만화산업 주요 통계 현황
2. 국내 만화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현황
3. 국내외 만화관련 전시회
4. 2009 대한민국콘텐츠어워드 만화부문 수상작
5. 2009 유럽 수출 작품 현황
6. 만화콘텐츠계약매뉴얼(수출분야)
7.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Appendix

1. 만화산업 주요 통계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추정)	2009 점유율(%)	전년대비(%)	2001~2009 CAGR(%)
만화 단행본	1,225	1,030	922	879	807	936	902	897	25.8	-3.8	-3.85
어린이 만화	1,985	2,073	2,316	2,111	2,334	2,065	2,361	2,450	67.5	12.6	3.75
일일만화	347	283	283	205	198	163	150	130	4.3	-9.1	-13.19
만화잡지	35.0	35.0	36.0	24.0	16.9	15.1	13.4	11.9	0.4	-12.2	-11.59
어린이 만화잡지	0.5	14.4	53.1	57.8	66.2	66.4	69.4	71.8	2.0	4.3	3.40
합계	3,593	3,435	3,610	3,277	3,422	3,246	3,496	3,496	100	7.2	0.01

(단위: 억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01~2006 CAGR(%)
만화단행본(억 원)	1,225	1,029	922	879	807	936	902	-3.85
발행종수	6,283	5,467	4,558	4,095	3,750	3,755	3,730	
판매부수	31,071,733	25,414,679	21,954,935	22,423,535	18,615,000	19,413,350	17,254,980	
중당판매부수	4,945	4,649	4,817	5,476	4,964	5,170	4,626	
평균면수	194	193	193	192	193	197	196	
평균정가	3,943	4,052	4,202	4,112	4,336	4,823	5,228	
일반출판물(억 원)	20,976	20,861	24,582	24,025	30,965	24,182	27,253	1.58%
발행종수	26,290	27,524	35,992	38,035	33,804	36,558	36,456	
판매부수	78,090,894	82,092,920	96,389,652	92,425,050	114,392,736	89,603,658	92,962,800	
중당판매부수	2,970	2,982	2,678	2,430	3,384	2,451	2,550	
평균면수	278	270	269	283	288	285	290	
평균정가	13,432	12,708	12,752	12,997	13,533	13,494	14,148	

일반출판물 관련 통계수치는 대한출판문화협회(http://www.kpa21.or.kr) 자료실에서 인용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일반출판물	26,290	27,524	35,992	38,035	33,804	36,558	36,456
만화단행본	6,283	5,467	4,558	4,095	3,750	3,755	3,730
구성비(%)	19.29	16.57	11.24	9.72	9.99	9.31	9.28
전년대비 증감율(%)	-0.39	-2.72	-5.33	-1.52	-8.42	0.13	-0.67
증수변화(%)	-0.39	-816	-909	-463	-345	5	-25

구분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한국만화	발행종수	2,472	2,046	1,383	1,248	1,110	1,190	1,259
	점유율(%)	39.34	37.42	30.34	30.48	29.6	31.7	33.8
	증감율(%)	0.2	-17.2	-32.4	-9.8	-11.1	7.2	5.8
	증감종수	4	-426	-663	-135	-138	80	69
번역만화	발행종수	3,811	3,421	3,175	2,847	2,640	2,565	2,471
	점유율(%)	60.66	62.58	69.66	69.52	70.4	68.3	66.2
	증감율(%)	-8.8	-10.2	-7.2	-10.3	-7.3	-2.8	-3.7
	증감종수	-368	-390	-246	-328	-207	-75	-94
합계(발행종수)		6,283	5,467	4,558	4,095	3,750	3,755	3,730

만화단행본에서 번역만화와 한국만화의 상위 출판사 현황

구분	한국만화		번역만화		합계	
	종수	점유율(%)	종수	점유율(%)	종수	점유율(%)
(주)학산문화사	93	11.1	747	88.9	840	100
대원씨아이(주)	139	15.5	758	84.5	897	100
(주)서울문화사	103	21.5	375	78.5	478	100
그외출판사	855	55.5	685	44.5	1,540	100
합계	1,190		2,565		3,755	

만화단행본 국적별 통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종수	구성비 (%)	종수	구성비 (%)	종수	구성비 (%)	종수	구성비 (%)	종수	구성비 (%)	종수	구성비 (%)	종수	구성비 (%)	종수	구성비 (%)
한국만화	2,472	39.3	2,046	37.42	1,383	30.3	1,248	30.5	1,110	29.6	1,190	31.7	1,259	33.8	10,708	28.0
번역만화	3,811	60.7	3,421	62.58	3,175	69.7	2,847	69.6	2,640	70.4	2,565	68.3	2,471	65.8	20,930	54.7
일본	3,633	57.8	3,335	61.00	3,131	68.7	2,819	68.8	2,630	70.1	2,539	67.6	2,420	64.4	20,507	53.6
호주	1	0.02	-	-	-	-	-	-	-	-	-	-	-	-	1	0.00
스페인	1	0.02	-	-	-	-	-	-	-	-	1	0.03	-	-	2	0.01
중국	-	-	-	-	-	-	-	-	-	-	-	-	6	0.16	6	0.02
독일	-	-	1	0.02	1	0.02	3	0.07	-	-	-	-	-	-	5	0.01
프랑스	4	0.06	-	-	4	0.09	18	0.44	4	0.11	1	0.03	2	0.05	33	0.09
홍콩	139	2.21	67	1.23	29	0.64	3	0.07	2	0.05	-	-	-	240	0.63	
대만	32	0.51	17	0.31	5	0.11	3	0.07	-	-	-	-	-	57	0.15	
영국	1	0.02	1	0.02	3	0.07	-	-	-	-	-	-	2	0.05	7	0.02
미국	1	0.02	-	-	2	0.04	3	0.07	4	0.11	24	0.64	41	1.09	75	0.20
합계	6,283	100	5,467	100	4,558	100	4,095	100	3,750	100	3,755	100	3,730	100	31,638	83

만화단행본 장르별 통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종수	구성비 (%)	종수	구성비 (%)	종수	구성비 (%)	종수	구성비 (%)	종수	구성비 (%)	종수	구성비 (%)	종수	구성비 (%)	종수	구성비 (%)
순정	1,033	16.44	937	17.14	836	18.34	699	17.08	699	17.6	823	20.6	894	23.8	5,921	18.4
드라마	1,830	29.13	1,495	27.35	1,199	26.31	1,044	25.49	1,004	25.2	1,091	27.3	882	23.5	8,545	26.6
성인	1,208	19.23	1,052	19.24	643	14.11	894	21.93	731	18.4	729	18.2	840	22.4	6,097	19.0
판타지	439	6.99	489	8.94	510	11.19	462	11.27	461	11.6	375	9.4	400	10.7	3,136	9.8
액션	456	7.26	432	7.90	427	9.37	360	8.79	307	7.7	207	5.2	181	4.8	2,370	7.4
스포츠	416	6.62	282	5.16	190	4.17	221	5.40	191	4.8	186	4.7	139	3.7	1,625	5.1
학원	201	3.20	182	3.33	202	4.43	166	4.05	95	2.4	106	2.7	137	3.6	1,089	3.4
SF	172	2.74	135	2.47	123	2.70	93	2.27	92	2.3	109	2.7	92	2.5	816	2.5
야오이	236	3.76	274	5.01	317	6.95	97	2.37	105	2.6	60	1.5	49	1.3	1,138	3.5
무협	220	3.50	138	2.52	66	1.45	43	1.05	27	0.7	31	0.8	21	0.6	546	1.7
언더	4	0.01	3	0.05	2	0.04	0	0.00	4	0.1	0	0.0	0	0.0	13	0.0
기타	68	1.08	48	0.88	43	0.94	16	0.39	233	5.9	282	7.1	120	3.1	810	2.5
합계	6,283	100	5,467	100	4,558	100	4,095	100	3,949	99	3,999	100	3,755	100	32,106	100

만화단행본 점유율별 통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주요3사	대원씨아이㈜	1,163	1,126	1,058	922	892	915	897	5,570
		18.5%	20.6%	23.2%	22.5%	23.8%	24.4%	24.0%	20.6%
	(주)학산문화사	1,084	1,077	1,047	99	845	830	840	5,420
		17.3%	19.7%	23.0%	2.4%	22.5%	22.1%	22.5%	20.0%
	(주)서울문화사	950	842	786	555	535	557	478	4,136
		15.1%	15.4%	17.2%	13.6%	14.3%	14.8%	12.8%	15.3%
소계		3,197	3,045	2,891	2,476	2,272	2,302	2,215	15,126
3사 점유율		50.9%	55.7%	63.4%	60.5%	60.6%	61.3%	59.4%	55.92%
그 외 출판사		3,086	2,422	1,667	1,619	1,478	1,453	1,515	11,924
		49.1%	44.3%	36.6%	39.5%	39.4%	38.7%	40.6%	44.1%
총계		6,283	5,467	4,558	4,095	3,750	3,755	3,730	27,050

주요 장르별 추이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단위: %)
드라마		16.4	17.1	18.3	17.1	17.6	20.6	23.8	
순정		29.1	27.4	26.3	25.5	25.2	27.3	23.5	
성인		19.2	19.2	14.1	21.9	18.4	18.2	22.4	
판타지		7.0	8.9	11.2	11.3	11.6	9.4	10.7	
액션		7.3	7.9	9.4	8.8	7.7	5.2	4.8	
스포츠		6.6	5.2	4.2	5.4	4.8	4.7	3.7	

한국만화단행본의 장르별 발행현황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성인		926	869	491	551	425	435	559	4,256
순정		789	584	426	353	347	377	293	3,166
드라마		212	133	131	75	76	134	192	953
판타지		126	105	72	74	121	98	65	661
학원		74	55	50	33	23	29	27	291
액션		101	125	117	79	59	22	23	526
SF		28	19	6	15	7	15	18	108
스포츠		64	35	30	30	7	18	17	201
무협만화		97	97	39	22	25	23	9	306
야오이		5		4	3	6	5	4	27
연더		4	3	2		3			12
기타		49	37	15	10	11	34	52	208
합계		2,472	2,046	1,383	1,248	1,110	1,190	1,259	6,459

한국만화단행본의 장르별 발행현황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순정		1,044	911	773	691	657	798	589	4,874
드라마		821	804	705	624	623	631	702	4,208
성인		282	193	152	343	306	170	281	1,446
판타지		313	384	438	388	340	310	335	2,173
액션		355	307	310	281	248	184	158	1,685
스포츠		352	247	160	191	184	169	122	1,303
야오이		231	274	313	94	86	105	88	1,103
SF		173	163	19	151	88	88	119	682
학원		98	80	73	60	69	82	65	462
무협만화		123	57	27	18	2	22	12	249
기타		19	11	28	6	37	6	0	107
합계		3,811	3,431	2,998	2,847	2,640	2,565	2,471	18,292

만화단행본 실적출판사 현황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500이상	3	3	3	4	3	3	2
200~499	5	1	2	1	3	2	2
100~199	6	8	4	6	1	2	3
50~99	2	7	2	2	3	4	2
20~49	6	5	6	7	4	3	10
10~19	5	5	5	3	4	6	7
5~9	21	12	8	5	11	6	9
4	3	0	3	4	5	4	4
3	6	2	5	4	5	8	9
2	14	6	10	4	4	12	12
1	40	21	15	5	11	32	48
합계	111	70	63	45	54	82	108

월별 만화단행본 발행중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3	527	494	514	514	539	536	544	490	484	545	529	573
2004	502	523	504	459	458	453	499	402	421	402	418	426
2005	366	397	429	398	384	386	365	351	371	357	374	384
2006	384	371	347	317	350	318	332	333	349	322	330	340
2007	330	308	322	300	295	331	321	322	279	299	311	332
2008	308	294	330	319	334	323	338	303	291	327	278	310
2009	263	308	345	296	300	306	339	292	332	296	296	357
합계	3,289	3,208	3,380	3,227	3,264	3,180	3,301	3,022	3,044	3,218	3,048	3,220
평균	432	414	434	419	423	411	423	390	387	405	393	409

기간별, 장르별 출간현황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순정	59	76	81	87	69	68	88	71	81	64	68	70	882
드라마	59	75	76	78	62	71	54	74	87	86	83	89	894
성인	65	64	99	62	71	74	79	59	75	55	62	75	840
판타지	21	38	29	23	39	27	35	38	36	39	36	39	400
액션	18	17	18	11	12	20	13	18	12	15	11	16	221
스포츠	16	10	11	8	14	14	11	10	15	14	6	13	139
학원	11	7	11	9	6	10	14	3	2	9	5	5	92
SF	8	10	8	4	13	13	21	8	11	4	18	19	137
야오이	3	1	3	5	8	5	7	4	7	4	1	1	49
무협	1	2	1	3	1	2	1	3	3	1	2	1	21
기타	5	8	8	6	5	2	16	4	3	5	4	29	80
합계	263	308	345	296	300	306	339	292	332	296	296	357	3,730

만화단행본 실적상위출판사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출판사명	점유율 총수	출판사명	점유율 총수	출판사명	점유율 총수	출판사명	점유율 총수	출판사명	점유율 총수	출판사명	점유율 총수	출판사명	점유율 총수
순위	총합계	100% 6,283	총합계	100% 5,467	총합계	100% 4,558	총합계	100% 4,095	총합계	100% 3,750	총합계	100% 3,755	총합계	100% 3,730
1	대원 씨아이(주)	18.5 1,163	대원 씨아이(주)	20.6 1,126	대원 씨아이(주)	23.2 1,058		24.4 999	대원 씨아이(주)	23.8 892	대원 씨아이(주)	24.4 915	대원 씨아이(주)	24.0 897
2	(주)화산 문화사	17.3 1,084	(주)화산 문화사	19.7 1,077	(주)화산 문화사	23.0 1,047	대원 씨아이(주)	22.5 922	(주)화산 문화사	22.5 845	(주)화산 문화사	22.1 830	(주)화산 문화사	22.5 840
3	(주)서울 문화사	15.1 950	(주)서울 문화사	15.4 842	(주)서울 문화사	17.2 786	(주)서울 문화사	13.6 555	(주)서울 문화사	14.3 535	(주)서울 문화사	14.8 557	(주)서울 문화사	12.8 478
4	(주)삼양 출판사	7.2 455	(주)삼양 출판사	8.3 452	(주)삼양 출판사	9.3 426	(주)삼양 출판사	8.6 352	(주)삼양 출판사	8.2 309	(주)삼양 출판사	7.9 297	(주)삼양 출판사	6.4 240
5	(주)시공사	6.3 394	현대 지능 개발사	3.6 195	현대 지능 개발사	5.1 231	현대 지능 개발사	5.1 208	현대 지능 개발사	6.3 235	현대 지능 개발사	6.4 240	현대 지능 개발사	5.1 190
6	(주)이킵	4.9 308	자유구역	3.4 188	랜덤 하우스 중앙(주)	3.2 147	(주)귀족 출판사	3.6 146	랜덤 하우스 코리아(주)	5.6 210	(주)대명중	4.4 165	(주)대명중	4.7 176
7	(주)대명중	3.6 226	도서출판 우보	3.5 193	도서출판우 보	3.2 145	(주)대명중	3.1 126	(주)대명중	5.0 187	도서출판우 신	3.5 131	도서출판우 신	3.9 147
8	(주)세주 문화	3.3 207	(주)시공사	2.5 138	(주)대명중	2.8 128	도서출판 우보	2.8 115	도서출판우 보	2.2 81	랜덤 하우스 코리아(주)	2.6 99	랜덤 하우스 코리아(주)	1.1 42
9	현대 지능 개발사	2.7 170	(주)세주 문화	2.1 114	자유구역	2.6 119	도서 출판 귀족	2.5 103	도서 출판 우신	1.9 73	도서출판자 유구역	2.3 86	도서출판자 유구역	2.2 83
10	서울 플래닝	2.4 151	(주)대명중	2.0 107	도서출판 귀족	1.3 61	랜덤 하우스 중앙(주)	2.2 89	(주)조은 세상	1.7 63	중앙북스(주)	1.9 70	중앙북스(주)	0.9 32
-	기타	18.7 1,175	기타	19.1 1,045	기타	9.0 410	기타	11.7 480	기타	8.5 3208	기타	9.7 365	기타	16.2 605

일일만화 판매시장 규모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03 ~ 2009 CAGR (%)
시장규모	347억	283억	283억	205억	197억	163억	130억	-13.88
발행종수	4,963	5,047	5,570	4,892	5,141	4,655	4,454	-0.23
총 발행부수	3,326,000	8,075,200	8,076,500	5,870,400	5,655,100	4,655,000	4,231,300	
평균 발행부수	2,000	1,600	1,450	1,200	1,100	1,000	950	
평균정가	3,500	3,500	3,500	3,500	3,500	3,500	3,537	

일일만화 발행종수 현황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발행종수	4,963	5,047	5,570	4,832	5,141	4,655	4,454
전년대비증감률(%)	4.9	1.7	10.4	-12.2	5.2	-9.5	-4.3
증감종수	232	84	523	(678)	249	(486)	(201)
일평균 발행종수	13.6	13.8	15.3	13.4	14.1	12.8	12.2
주평균 발행종수	95.4	97.1	107.1	94.1	98.9	89.5	85.7
월평균 발행종수	413.6	420.6	464.2	407.7	428.4	387.9	371.2

일일만화 평균 발행부수 현황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평균 발행부수	2,000	1,600	1,450	1,200	1,100	1,000	950
전년대비 증감률 (%)	-28.6	-20.0	-9.4	-17.2	-8.3	-9.1	-5.0

일일만화 평균 발행부수 현황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종수	구성비(%)	종수	구성비(%)	종수	구성비(%)	종수	구성비(%)	종수	구성비(%)	종수	구성비(%)	종수	구성비(%)
무협	2,922	58.9	2,366	46.9	2,849	51.2	2,520	51.5	2,667	51.9	2,806	60.3	2,239	48.1
액션	1,789	36.1	2,187	43.3	2,089	37.5	1,753	35.8	1,731	33.7	888	19.1	846	18.2
스포츠	231	4.7	224	4.4	270	4.9	283	5.8	149	2.9	174	3.7	169	3.6
드라마	21	0.4	270	5.4	304	5.5	121	2.5	134	2.6	57	1.2	162	3.5
성인	0	0.0	0	0.0	58	1.0	215	4.4	460	8.9	730	15.7	1,038	22.3
합계	4,963	100	5,047	100	5,570	100	4,892	100	5,141	100	4,655	100	4,454	100

일일만화의 월평균 발행종수 추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3	447	353	443	392	404	379	437	414	387	434	402	471
2004	439	428	435	394	409	426	372	424	473	450	382	415
2005	431	361	478	454	463	470	468	432	479	517	525	492
2006	426	385	403	392	432	374	410	402	436	374	420	438
2007	410	350	453	398	455	422	433	461	441	475	458	385
2008	354	334	429	405	375	341	425	364	407	404	366	451
2009	423	386	399	384	366	385	431	351	338	347	415	229
합계	3,277	2,941	3,431	3,217	3,261	3,130	3,374	3,247	3,359	3,465	3,431	3,230
평균	410	368	429	402	408	391	422	406	420	433	429	404

만화집지 시장규모 추정액											(단위: 억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추정)	2009 점유율	전년대비	2001~2009) CAGR(%)	
장르만화집지	35.0	35.0	36.0	24.0	16.9	15.1	13.4	11.9	0.4%	-12.2%	-11.59	
어린이만화집지	0.5	14.4	53.1	57.8	66.2	66.4	69.4	71.8	2.0%	4.3%	3.40	
합계	35.5	49.4	89.1	81.8	83.1	81.5	82.9	83.7				

만화집지 대상별 발행 현황-복사본					
구분	청소년잡지	순정잡지	어린이잡지	성인/일반	합계
잡자수	5	5	4	1	15
구성비(%)	33.3	33.3	25.7	6.7	100.00
잡지명	부킹 아이큐잡지 영챔프 천스 코믹챔프	밍크 윙크 이슈 파티 그루	고래가그랬어 어린이 과학동아 개똥이네 놀이터	팝툰	

■ 온라인 만화판매사이트

- 인터넷 유료 만화 서비스 사이트

인터넷 유료 만화 서비스 사이트 (2010년 1월 기준)			
서비스명	URL	운영사	운영시분류
네이버 만화	http://comic.naver.com/charge/charge.nhn	NHN	인터넷포털
네이트 만화	http://comics.nate.com	SK커뮤니케이션즈	인터넷포털
다음 만화	http://comic.daum.net	(주)다음커뮤니케이션	인터넷포털
드림위즈 만화	http://comic.dreamwiz.com	(주)엔조이365	인터넷포털
미스터 블루	http://www.mrblue.com	미스터블루(주)	유료온라인 / 만화서비스전문
싸이월드 만화	http://comics.nate.com/main/	SK커뮤니케이션즈	인터넷포털
야후코리아만화	http://comics.yahoo.co.kr	야후코리아	인터넷포털
이코믹스	http://www.ecomix.co.kr	(주)이코믹스미디어	유료온라인 / 만화서비스전문
인터넷만화방	http://www.manhwa.co.kr	(주)한아름닷컴	유료온라인 / 만화서비스전문
일간스포츠유료만화	http://comics.joins.com	중앙엔터테인먼트스포츠	언론사
잼코믹스	http://www.jamcomic.com	(주)이온스타	유료온라인 / 만화서비스전문
조이코믹	http://joycomic.co.kr/main/	(주)우소프트	유료온라인 / 만화서비스전문
코믹뱅 만화방	http://www.comicbang.com/ebooks	씨앤씨레블루션(주)	유료온라인 / 만화서비스전문
코믹스투데이	http://www.comicstoday.com	(주)엔조이365	유료온라인 / 만화서비스전문
코믹일구	http://www.comic19.com	씨앤씨레블루션(주)	유료온라인 / 만화서비스전문
코믹타운	http://www.comictown.co.kr/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만화지원기관
코믹플러스	http://www.comicplus.com	(주)엔조이이상육오	유료온라인 / 만화서비스전문
툰도시	http://toonosi.nate.com/	SK텔레콤 주식회사	유료온라인 / 만화서비스전문
파란만화	http://comic.paran.com	케이티하이텔(주)	인터넷포털
프리챌만화	http://comic.freechal.com	(주)프리챌	인터넷포털
하나포스트닷컴만화	http://comic.hanafos.com	하나로드림주식회사	유료온라인 / 만화서비스전문

- 인터넷 중고 만화 판매 사이트

인터넷 중고만화장터 (2010년 1월 기준)		
이름	URL	주소
국민서적	http://www.kbmana.com/	대전시 동구 용전동 178번지
누리코믹스	http://www.nuricomics.com/main/index.php	경북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92-11
동프	http://waldam4.cafe24.com/	서울 구로구 오류동 81-155 3층
드래곤만화	http://www.dragonmart.co.kr/	대구시 동구 신평동 314-2
드래곤마트	http://www.dragonmart24.co.kr/	대구시 동구 용계동 420-19
마나보나	http://www.manabona.net/mall/index.php	부산 수영구 망미2동 대림강변 e편한세상 아파트
만화북랜드	http://www.booklandkorea.co.kr/	서울시 강서구 화곡5동 95-34
만화이야기	http://www.manastory.co.kr/html/	
망가진클럽	http://www.mangazin.com/goodshop/shop_index.php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교하리 612-12,13
매니북스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206-49
북마스터	http://www.bookmaster.co.kr/	서울시 강서구 외발산동 429
북앤씨네	http://www.bookncine.co.kr	대구시 달서구 진청동 560-1
비비이마트	http://www.bvmart.co.kr/shop_index.php	대구시 서구 비산동 941-1
세븐북	http://www.sevenbook.co.kr/	대구시 동구 신천동 494 동이 아파트 라동 1층 상가
시네마데이트	http://www.cinematate.co.kr/	대구시 서구 평리동 680-7
애니광	http://www.ani1004.co.kr/	서울 강북구 수유5동 518-121
애니팝	http://www.anipop.co.kr/	영등포구 신길6동 4531
연비디오	http://www.yeonvideo.co.kr/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1641-26 원정빌딩
영화책사랑	http://www.moviebook.co.kr/	울산 남구 무거동 632-4
HONYASAN	http://www.honyasan.co.kr/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69-5번포 쇼핑타운 5동
조이플러스	http://www.joyplus24.co.kr/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623-32 2층
중고만화시장	http://www.joonggomana.co.kr/html/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83-18 지층
중고만화장터	http://www.mana-mana.co.kr/html/	
코믹119	http://www.comic119.com/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92번지 대우중고서점
코믹스몰	http://www.comicsmall.co.kr/	경북 경산시 정평동 221-4 정평빌딩 지하층
코믹툰	http://www.comictoon.co.kr/	대구 달서구 두류2동 110-4
투니안	http://www.toonian.co.kr/toonshop/index.php	대구시 서구 이현동 45-208

■ 만화베스트셀러

온라인리브로 만화베스트 셀러 (2009년 11월 기준)

순위	상품명	작가	출판사
1	흑집사 2	Yana Toboso	학산문화사
2	애플 컬렉션 콰트로(Quattro)	타지마 쇼우 외 45명	서울비주얼웍스
3	원피스 50 - 다시 다다르다	Eiichiro Oda	대원씨아이
4	스킵 비트! 20 -SKIP BEAT!	나카무라 요시키	시공사
5	부디 내게 달지 않기를(뉴루비코믹스 743)	요네다 코우	현대저능개발사
6	가정교사 히트맨 리본(REBORN)! 21 / (캘린더 포함) 한정판	아마노 아키라	학산문화사
7	완전무결하게 사로잡히다 5	유하진	이코믹스미디어
8	어제 뭐 먹었어?!	요시나가 후미	삼양출판사(만화)
9	궁(宮)19	박소희	서울문화사
10	나나20 -NANA	아자와 아이	학산문화사
11	백귀야행 17 -NIGHT OF DEMONS	이마 이치코	시공사
12	노다메 칸타빌레 21	니노미야 토모코	대원씨아이
13	강철의 연금술사 20	아라카와 히로무	학산문화사
14	요초비림! 8	야즈마 키요히코	대원씨아이
15	꽃보다 남자 완전판(세트/ 전20권)	카미오 요코	서울문화사
16	마틴 앤 존 NEW 8	박희정	서울문화사
17	플루토 6	우라사와 나오키	서울문화사
18	신의물방울 18	TakashiAgi	학산문화사
19	실버 다이아몬드 15	스기우라 시호	서울문화사
20	목걸이장인- 유시진 단편집	우시진	서울문화사
21	비밀(秘密)5-THE TOP SECRET	시미즈 레이코	서울문화사
22	디.그레이맨 17	호시노 카즈라	대원씨아이
23	하백의 신부 8	윤미경	서울문화사
24	XXX홀릭 14	클럼프	서울문화사
25	나루토 43	키시모토 마사니	대원씨아이
26	바쿠만	Tsugumi Oba	대원씨아이
27	애플엑스	자넷 외 44인	서울비주얼웍스
28	던전 앤 파이터 아트북	단행본팀	유엔유키커뮤니케이션
29	식객(食客)22-임금님 밥상	허영만	김영사
30	뱀파이어 기사 8	히노 마츠리	학산문화사
31	너에게 달기를	카루호 시이나	대원씨아이
32	팔견전	야베 미유키	서울문화사
33	3월의 라이온1-March comes in like a lion	우미노 치카	학산문화사
34	러스트 블래스터- Rust BLASTER	야나 토보소	학산문화사
35	이마 이치코의 뷰티풀 월드	이마 이치코	시공사
36	나츠메 우인장 7	미도리카와 유키	학산문화사
37	순애보III - 純愛普III	윤지운 외	대원씨아이
38	명탐정 코난 63	야오야마 고쇼	학산문화사
39	어떤과학자의 초전자포1-어떤 미술의 금서목록 외전	카마치 카즈마	대원씨아이
40	뱃사로드 3 - VASSALORD	쿠로노 나나에	북박스
41	열혈강호48	전극진/양재현	대원씨아이
42	블리치 36 - 텐백더 펜들럼	쿠보 타이토	서울문화사
43	나비 5 -Nabi	김연주	대원씨아이
44	오오쿠 4	요시나가 후미	서울문화사
45	너의 시선 끝에 내가 있다 2	서문다미	대원씨아이
46	크게 휘두르며 11	히구치 아사	학산문화사
47	총사 10 (완결) - 忠邪	우루시바라 유키	대원씨아이
48	캐릭캐릭 체인지 7	피치 핏	서울문화사
49	파이브 스타 스토리 12 - The Five Star Stories	나가노 마모루	서울문화사
50	그루	우시진 외	절대교감

예스 24 만화 베스트셀러 목록(2009/1위~50위)

순위	상품명	작가	출판사
1	파페포포 레인보우	심승현	예담
2	식객 23	허영만	김영사
3	신의물방울 19	Tadashi Agi	학산문화사
4	신의물방울 18	Tadashi Agi	학산문화사
5	신의물방울 20	Tadashi Agi	학산문화사
6	심아식당 1	Yaro Abe	미우(대원)
7	식객 24	허영만	김영사
8	식객 22	허영만	김영사
9	요조바랑 8	아즈마 키요히코	대원
10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스콧 피츠제럴드	노블마인
11	심아식당 3	Yaro Abe	미우(대원)
12	심아식당 2	Yaro Abe	미우(대원)
13	식객 25	허영만	김영사
14	원피스 ONE PIECE 51	Eiichiro Oda	대원
15	그대를 사랑합니다 1	강풀	문학세계사
16	원피스 ONE PIECE 52	Eiichiro Oda	대원
17	그대를 사랑합니다 3	강풀	문학세계사
18	원피스 ONE PIECE 53	Eiichiro Oda	대원
19	그대를 사랑합니다 2	강풀	문학세계사
20	고우영 삼국지 세트	고우영	애니북스
21	신의 물방울 21	Tadashi Agi	학산문화사
22	100°C	최규석	창비
23	심아식당 4	Yaro Abe	미우(대원)
24	PLUTO 플루토 007	우라사와 나오키	서울문화사
25	노다메 칸타빌레 21	니노미야 토모코	대원
26	파이브 스타 스토리 The Five Star Stories 12	나가노 마모루	서울문화사
27	궁 19	박소희	서울문화사
28	식객 21	허영만	김영사
29	원피스 ONE PIECE 54	Eiichiro Oda	대원
30	신의물방울 17	Tadashi Agi	학산문화사
31	궁 20	박소희	서울문화사
32	강철의 연금술사 21	아라카와 히로무	학산문화사
33	어제 뭐 먹었어? 2	요시나가후미	삼양(만화)
34	고우영 심팔사략 전 10권 세트	고우영	애니북스
35	백귀야행 17	이마 이치코	시공사
36	어떤 과학의 초전자포 1	후유카와 모토이	대원
37	NANA 나나 20	아자와 아이	학산문화사
38	십시일반	박재동 외	창비
39	식객 19	허영만	김영사
40	식객 20	허영만	김영사
41	강철의 연금술사 22	아라카와 히로무	학산문화사
42	미남이시네요 1	편집부	북로그컴퍼니
43	NANA 나나 21	아자와 아이	학산문화사
44	꽃보다 남자 완전판 1	Kamio Youko	서울문화사
45	혈액형에 관한 간단한 교찰	박동성	소담출판사
46	본격 제2차 세계대전 만화 2	굽시니스트	애니북스
47	어제 뭐 먹었어?1	요시나가 후미	삼양(만화)
48	어떤 과학의 초전자포 2	카미치 카즈마	대원
49	꽃보다 남자 완전판 2	Kamio Youko	서울문화사
50	바쿠만 BAKUMAN 2	Tsugumi Oba	대원

인터파크 만화베스트셀러 목록 (2009년 1위~50위)

순위	상품명	작가	출판사
1	고우영 삼국지 세트	고우영	애니북스
2	고우영 십팔사략 세트	고우영	애니북스
3	도쿠가와 이에야스 세트 (전3권)	Mitsuteru Yokoyama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4	그대를 사랑합니다 1~3권 세트	강풀	문학세계사
5	바보 1,2 세트	강풀	문학세계사
6	박경리 원작, 만화 토지 세트 1부	오세영	마로니에북스
7	진유동 삼국지 2부 세트	천웨이동	WISDOM
8	진유동 삼국지 1부 세트	천웨이동	WISDOM
9	일지매 세트	고우영	애니북스
10	미스터 초밥왕 애장판 박스 세트	Daisuke Terasawa	학산문화사
11	사랑해 1~12권 세트	허영만	김영사
12	식객 23	허영만	김영사
13	순정만화 1,2 세트	강풀	문학세계사
14	신의물방울 세트 (1~20권)	Tadashi Agi	학산문화사
15	열국지 세트	고우영	자음과 모음
16	식객 22	허영만	김영사
17	식객 24	허영만	김영사
18	꽃보다 남자 1 (완전판)	Kamio Youko	서울문화사
19	초한지 세트	고우영	자음과 모음
20	조선아사실록 세트(전 7권)	고우영	애니북스
21	덕터노구찌-DELUX (1권-9권 세트)	Toshiyuki Mutsu	학산문화사
22	꽃보다 남자 2(완전판)	Kamio Youko	서울문화사
23	꽃보다 남자 20 (완전판)	Kamio Youko	서울문화사
24	꽃보다 남자 3 (완전판)	Kamio Youko	서울문화사
25	꽃보다 남자 4 (완전판)	Kamio Youko	서울문화사
26	벼랑위의 포노(양장)	Hayao Miyazaki	대원주니어
27	꽃보다 남자 19 (완전판)	Kamio Youko	서울문화사
28	꽃보다 남자 6 (완전판)	Kamio Youko	서울문화사
29	꽃보다 남자 5 (완전판)	Kamio Youko	서울문화사
30	꽃보다 남자 7 (완전판)	Kamio Youko	서울문화사
31	꽃보다 남자 10 (완전판)	Kamio Youko	서울문화사
32	꽃보다 남자 9 (완전판)	Kamio Youko	서울문화사
33	꽃보다 남자 18 (완전판)	Kamio Youko	서울문화사
34	꽃보다 남자 8 (완전판)	Kamio Youko	서울문화사
35	꽃보다 남자 17 (완전판)	Kamio Youko	서울문화사
36	식객 25	허영만	김영사
37	꽃보다 남자 16 (완전판)	Kamio Youko	서울문화사
38	꽃보다 남자 15 (완전판)	Kamio Youko	서울문화사
39	꽃보다 남자 14 (완전판)	Kamio Youko	서울문화사
40	꽃보다 남자 12 (완전판)	Kamio Youko	서울문화사
41	꽃보다 남자 13 (완전판)	Kamio Youko	서울문화사
42	꽃보다 남자 11 (완전판)	Kamio Youko	서울문화사
43	28년 1~3세트 (전 3권)	강풀	문학세계사
44	그대를 사랑합니다 1	강풀	문학세계사
45	Watchmen 세트	Alan Moore	시공사
46	그대를 사랑합니다 3	강풀	문학세계사
47	아기공룡둘리 애장판(1~5권)	김수정	대원씨아이
48	그대를 사랑합니다 2	강풀	문학세계사
49	2009 마음의 소리 Ver.1	조석	코리아하우스
50	탐나는 도다 1-7권 세트	정혜나	서울문화사

한양문고

순위	상품명	작가	출판사
1	원피스	Eiichiro Oda	대원씨아이
2	나루토	Masashi Kishimoto	대원씨아이
3	노다메칸타빌레	TOMOKI NINOMIYA	대원씨아이
4	강철의 연금술사	Hiromu Arakawa	학산문화사
5	20세기 소년	Urasawa Naoki	학산문화사
6	히나와 클로버	Chika Umino	학산문화사
7	블리치	Tite Kubo	서울문화사
8	신의물방울	Tadashi Agi	학산문화사
9	심야식당	ABE YARO	대원씨아이
10	바쿠만	Tsugumi Ohba	대원씨아이
11	피아노의 숲	MAKOTO ISSHIKI	삼양출판사
12	너에게 달기를	KAROHO SHIINA	대원씨아이
13	씨엘	임주연	대원씨아이
14	스킵비트	Yoshiki Nakamura	시공사
15	백구야행	Ichko ima	시공사
16	은혼	Hideaki Sorachi	학산문화사
17	마틴 앤 존	박화정	서울문화사
18	열혈강호	전국진/양재현	대원씨아이
19	3월의 라이온	Chika Umino	학산문화사
20	나츠메우인장	YUKI MIDORIKAWA	학산문화사
21	치카타 구구	Tono	조은세상
22	유리가면	SUZUE MIUCHI	대원씨아이
23	제멋대로 함선 디오티마	권교정	길찾기
24	플루토	Urasawa Naoki	서울문화사
25	파이브 스타 스토리	MAMORU NAGANO	서울문화사
26	데스노트	Tsugumi Ohba	대원씨아이
27	가정교사 히트맨 리본	AKIRA AMANO	학산문화사
28	오랑고교 호스트부	BISCO HATORI	학산문화사
29	명탐정코난	Aoyama Gosho	서울문화사
30	그린빌에서 만나요	유시진	서울문화사
31	탐나는도다	정혜나	서울문화사
32	흑집사	YANA TOBOSO	학산문화사
33	군청학사	Irie Aki	중앙books
34	용비불패	문정후	학산문화사
35	헌터x헌터	Yoshihiro Togashi	학산문화사
36	마인탈정 네우로	Yusei Matsui	서울문화사
37	XXX홀릭	CLAMP	서울문화사
38	슬램덩크	TAKEHIKO INOUE	대원씨아이
39	파란집	윤지운	대원씨아이
40	총사	Yuki Urushibara	대원씨아이
41	퍼니퍼니 학원 앨리스	TACHIBANA HIGUCHI	대원씨아이
42	하백의 신부	윤미경	서울문화사
43	동물의사 닥터 스쿠르	NORIKO SASAKI	대원씨아이
44	비사라	Tamura Yumi	서울문화사
45	식객	허영만	김영사
46	기생수	HITOSHI IWAACKI	학산문화사
47	하늘은 붉은 강가	SHINOHARA Chie	학산문화사
48	궁	박소희	서울문화사
49	의룡	NOGIZAKA TARO	대원씨아이
50	후르츠 비스킷	Natsuki Takaya	서울문화사

2. 국내 만화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현황

국내만화산업 관련 기관 및 협단체 (가나다 순)		
기관명	홈페이지	주소
한국만화영상진흥원	www.komacn.kr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2
우리만화연대	www.urimana.co.kr	서울시 중구 예장동 8-20 만화의집 1층
전국사시만화작가회의	www.newstoon.net	서울시 노원구 중계본동 107-3 201호
한국만화가협회	www.cartoon.or.kr	서울시 중구 예장동 8-20 만화의 집 1층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www.cafe.naver.com/kcstory	온라인에서만 운영 중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www.koscas.or.kr	서울시 중구 예장동 서울애니메이션센터 E동 201호
한국여성만화가협회	www.kwca.or.kr	온라인에서만 운영 중
한국가툰협회	www.coreacartoon.com	서울시 구로구 구로6동 144-23 2층
한국만화출판협회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777-4

지역문화진흥원 현황						
연번	기관명	성명	직위	사무실	우편번호	주소
1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김규철	원장	051-749-9406	612-02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2동 1475번지 센텀벤처타운 1층
2	(재)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김동관	사무 총장	043-219-1001	360-805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596
3	(재)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설기환	원장	041-589-0902	330-816	충남 천안시 직산읍 삼은리 511 영상관 6층
4	(재)전주정보영상진흥원	이흥재	원장	063-281-4100	560-827	전북 전주시 완산구 문화로 71
5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권택민	원장	032-223-8001	420-12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02번지 춘의테크노파크II 202동 9층
6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	김인환	원장	064-725-2024	690-0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315-14번지
7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	박흥수	원장	033-245-6001	200-957	춘천시 후평동 강변로 50 하이테크벤처타운 M102
8	목포벤처지원센터	이중필	소장	061-270-8820	530-400	목포시 석현동 1175
9	(재)광주정보문화진흥원	이상길	원장	062-350-2408	502-220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60-37 금호생명빌딩 24층
10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박광진	원장	053-655-5600	705-033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3동 2139-12번지
11	대전문화산업진흥원	강병호	원장	042-479-4100	305-340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3-1
12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이영수	원장	032-250-2000	402-711	인천시 남구 도화동 592-5 인첸타워 20층
13	(재)전남문화산업진흥원	김기훈	원장	061-280-7000	534-821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970
14	한국콘텐츠진흥원	이재용	원장	02-3153-1100	135-080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길 250-15

3. 국내외 만화관련 전시회

■ 국내 만화관련 전시회

대학만화애니메이션최강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 2009년 3월 27일~29일• 장소: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주최: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2009 유럽한국만화페스티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 5월20일~6월24일• 장소: 주영한국문화원 전시실• 주최: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SICAF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 7월22일~26일• 장소: 서울 COEX• 주최: 서울특별시, SICAF 조직위원회

부천국제만화축제(BICOF)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 7월22일~26일• 장소: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주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서울캐릭터라이선싱페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 매년 7월 마지막주 수요일~일요일• 장소: COEX 3층 대서양홀, 컨벤션홀• 주최: 한국콘텐츠진흥원, COEX

대한민국 콘텐츠 페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 매년 9월경• 장소: 서울 COEX•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와우북페스티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 매년 9월중• 장소: 홍대 주차장거리, 갤러리, 카페, 복합문화공간, 클럽 등• 주최: (사)서울와우북페스티벌조직위원회

■ 해외 만화관련 전시회

Festival international de la bande dessinée d'Angoulême			
개최장소	앙굴렘시 프랑스	개최시기	2009년 1월 29일~2월 1일
주관	프랑스 앙굴렘시		
행사규모	매년 방문자 수 약 20만 명/예산 약 350만 유로		
메인 스폰서	Fnac/SNCF		
행사목적	도시 활성화와 프랑스 만화에 대한 지원		
주요특징	만화계의 칸느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추진 됨		

San Diego Comic Convention International(Comic-Con)			
개최장소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컨벤션 센터	개최시기	2009년 7월 23일~26일
주관	Comic-Con International		
행사규모	약 12만 5,000명 참석		
참여업체	-		
행사목적	만화뿐만 아니라 게임 상품, 영화를 포함한 모든 캐릭터 · 엔터테인먼트 산업 활성화		
주요특징	`Comic-con 2009'에는 다수의 3D 영화가 공개되고 유명 할리우드 스타가 대거 참석했음		

Anime EXPO			
개최장소	Los Angeles, California, USA	개최시기	2009년 7월 2일~7월 5일
주관	The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Japanese Animation (SPJA)		
행사규모	43,000명(2008): 44,000명(2009)		
참여업체	FUNimation, VIZ media etc.		
행사목적	일본 애니메이션 및 만화를 미국 내에서 원활히 전파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		
주요특징	세계 4대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Tokyo International Anime Fair			
개최장소	도쿄 빅사이트	개최시기	2009년 3월 18일~3월 21일
주관	도쿄 국제 애니메이션 페어 실행위원회		
행사규모	참가기업 255개사, 방문자 수 12만 9,189명 기록(Business Day 26,026명/Public Day 103,793명)		
참여업체	일본 기업 199개사 및 해외 기업 56개사 참여 - 캐나다(1), 중국(19), 싱가포르(1), 체코(1), 헝가리(1), 대만(6), 프랑스(1), 인도네시아(1), 아랍에미리트(1), 이란(1), 한국(19), 미국(2) -		
행사목적	일본 애니메이션을 소개하고,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함으로써 일본 애니메이션의 육성과 진흥을 목표로 함		
주요특징	전반부는 Business Day, 후반부는 Public Day로 구성됨, 이벤트 기간 동안 애니메이션 관련 기업들의 신상품 발표나 기자회견 등이 이루어지며, 애니메이션을 테마로 한 심포지엄 등도 개최됨		

Seoul International Cartoon and Animation Festival			
개최장소	한국	개최시기	2009년 7월 22일 ~ 7월 26일
주관	(사)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사)한국만화가협회, (사)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사)우리만화연대, (사)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사)한국만화출판협회, (재)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서울애니메이션 센터		
행사규모	60개국 1,673편 상영		
참여업체	-		
행사목적	한국 만화와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		
주요특징	공식경쟁 및 공식초청 부문 영화 상영, 시상 SICAF 2009 전시행사의 컨셉은 '타임캡슐 100년의 여행'		

4. 2009 대한민국콘텐츠어워드 만화부문 수상작

구분	작품명(출판사)	수상자	주요내용 및 특징
대상 (대통령상)	파페포포 레인보우 (예담출판사)	심승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페'와 '포포'를 중심으로 진정한 사랑의 가치, 가족의 소중함, 우정의 의미, 그리고 희망을 찾기 위해 달려가는 젊은이들의 꿈 이야기를 다룬 카툰에세이(1권) - 2001우수문화콘텐츠 사전제작지원작, 2009년 교보총합 베스트셀러 1위, 10만부 판매 누적
우수상 (문화부장관상)	플리즈플리즈 미 (팝툰)	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애와 결혼, 사랑 등 20~30대 현대여성이 궁금해 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화상을 그린 코믹멜로물(현 2권 출간)
	3단한채 김창남 (학산문화사)	하일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의 대한민국 서울에서 완벽한 인간소녀로봇과 왕따 소년간의 사랑과 우정 이야기를 그린 SF청소년성장드라마(전3권 완결)
	공 (서울문화사)	박소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방 후 우리나라가 임한군제제를 채택했다는 전제로부터 시작해서 평범한 여고생이 세자빈이 되면서 겪는 이야기를 그린 순정 학원물(현1권 출간) - 2006년 드라마화(시즌1, 2), 수출액10억원 이상, 11개국 수출
	안녕자두야 (학산문화사)	이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년대 어린 시절 '자두'의 어린 시절 추억담을 옮겨 놓은 작품. 현재의 어린이에게 엄마 세대들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전 연령이 볼 수 있는 가족드라마(현13권 출간) - 2010년 애니메이션 제작 방영 예정
특별상(신인) (콘텐츠진흥원장상)	탐나는도다 (서울문화사)	정혜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세기 동방물품마니아인 한 영국청년이 조선땅 중에서도 제일 끝에 있는 섬 탐나도에 표류하면서 시작되는 신세대 코믹 퓨전 사극 순정만화(현8권 출간) - 2009년 드라마화
특별상(인기) (콘텐츠진흥원장상)	마음의 소리 (중앙북스)	조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이버 온라인 인기투표로 선정 • 일상에서 마주치는 소소한 에피소드를 작가특유의 만화적 상상력으로 표현한 웹만화 - 네이버 누적조회수 6억, 초히트 웹툰

5. 2009 유럽 수출 작품 현황

서울문화사 유럽 수출작품		
작품명	작가	수출국가
그래피티 1-5	최중훈	프랑스
까공 4-6	엄재경/이충호	프랑스
나무 1-10	박성우	프랑스
넌너무멋져 1-3	이영희	프랑스
러브팝 1-3	김수연	프랑스
레전드 2-4	우수정/카라	프랑스
메리고드윈 1-2	유진수/박설아	프랑스
분녀네 선물가게 1-10	이은	프랑스
시니컬오렌지 1-2	윤지은	프랑스
시화용 7-13	이종은	프랑스
아기장수 잡지연재	이정아	프랑스
왕자님에게 키스를 1-5	김희은	프랑스
용잡이 15-17	서홍석	프랑스
위키드 1-3	김수용	프랑스
작은아씨들 1-3	김희은	프랑스
절정 1-3	이영희	프랑스
천일야화1-7	전진석	프랑스
카페오컬트3-6	오래밝음/안노은	프랑스
캐쉬길 7-11	김수연	프랑스
폭주기판차 1-9	조재호	프랑스
플라티나 4-9	김연주	프랑스
하나미 1-4	PLUS/박성재	프랑스
하백의 신부 1-7	윤미경	프랑스
항아리 1-4	옥새름	프랑스
하상1-3	강은영	프랑스
Angel Shop 4	황속지	프랑스
CAT 1-5	강현준	프랑스
Claw 1-2	강은영	헝가리
DVD 1-3	천계영	헝가리
FEVER 4	박희정	헝가리

학산문화사 유럽수출작품		
작품명	작가	수출국가
여왕의 기사	김강원	프랑스
마인언 전기	임달영/정수철	이탈리아
몽환백서	임애주/임진주	프랑스
불꽃의 인페르노	김광현/임달영	프랑스
월요일소년	이영유	프랑스
잭프루스트	고진호	프랑스
폭주배달부 반야	김영오	프랑스
XS	송지형	프랑스

대원씨아이 유럽 수출 작품

작품명	작가	수출국가
라 모스카	강형규	프랑스
언밸런스 언밸런스	임달영, 이수현	프랑스
호러컬렉터	이소영	프랑스
아크로드	박진환	세르비아
하이로	김환	세르비아
순애보2	심해진, 나예리, 이현숙, 강혜진, 이시영	독일
벵티스트	유경원, 문성호	프랑스
마제	라인수, 김재환	프랑스

신원에이전시 유럽 수출 작품

작품명	작가	국내출판사	수출국가
마왕일기-4	카라/이지형/이윤희	카라	러시아
I.N.V.U 4-5	김강원	학산문화사	덴마크
궁 18-19	박소희	서울문화사	이탈리아
귀 4-5	김영오/오래밝음	학산문화사	이탈리아
덩더쿵 1-3	이두호	도서출판열림원	스페인
리젠드 3-4	카라/우수정	서울문화사	체코
매지컬 JXR 1-3	이선영	학산문화사	프랑스
버스터 1-3	호아	학산문화사	프랑스
버스터 1-6	호아	학산문화사	이탈리아
산타대작전 1-2	원현재	학산문화사	프랑스
아스카론 1-3	김성재/박철호	학산문화사	이탈리아
여친만! 1-3	류병민/박현준	학산문화사	프랑스
왕자님에게 키스를 1-5	김희은	서울문화사	프랑스
용잡이 1-2	서홍석	서울문화사	체코
월요일 소년 1-8	이영유	학산문화사	프랑스
작은아씨들 1-3	김희은	서울문화사	프랑스
지피지기 1-3	김은정/황승만	학산문화사	프랑스
천추 13-15	김성재/김병진	학산문화사	독일
티아라 1-2	카라/이윤희	서울문화사	독일
하나미 1-4	박성재/Plus	서울문화사	프랑스
하백의 신부 1-3	윤미경	서울문화사	프랑스
하백의 신부 4-7	윤미경	서울문화사	헝가리
하백의 신부 7-8	윤미경	서울문화사	이탈리아
향아리 4-5	옥새롬	서울문화사	독일
Claw 1-2	강은영	서울문화사	프랑스
I.N.V.U 5	김강원	학산문화사	이탈리아

오렌지에이전시 수출 작품

작품명	작가	국내출판사	수출국가
황토빛 이야기	김동화	김동화	인도네시아
하백의 신부	윤미경	서울문화사	러시아
나쁜 음식	채민	채민	벨기에
합합	김수용	케나즈	태국
평양프로젝트	오영진	창비	프랑스
고스트페이스	형민우	케나즈	프랑스
고스트페이스	형민우	케나즈	독일

6. 만화콘텐츠계약메뉴얼 (수출분야)

1) 수출계약

수출계약은 국내출판사와 해외출판사 또는 해외 에이전시와 이루어진다. 수출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역시 대가의 지급부분이다. 통상 미니멈게런티를 지급받고, 판매부수에 따라 러닝개런티를 받는 형식을 많이 취하고 있다. 그리고 약정한 부수 이상 인쇄하여 판매하고 개런티 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등도 예상할 수 있으므로 '부수의 제한'에 대한 조항과, 분쟁발생시 국내법을 근거법으로 하고, 관할법원도 국내법원으로 하는 조항도 달아두어야 향후 유리하다. 이는 수입계약을 보면 외국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외국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수출계약은 주로 영문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영문서식 견본을 제시하였으며, 작성시 참고할 수 있도록 책자의 사양, 금액 및 시한 등 예시를 들어 두었다. 아래 샘플계약틀어식은 단행본 위주 계약이며, 잡지 관련 내용이 일부 첨부되어 있는 것이다.

Licensing Agreement

This Agreement is entered into as of the 1st of January, 20XX by and ABC Publishing Co., Ltd., a company incorporated under the laws of Republic of Korea, with its principal office at _____, Seoul, Korea (hereinafter 'Licensor') and USA Comics Inc., a company incorporated under the laws of New York, with its principal office at _____, New York, NY10018, USA (hereinafter 'Licensee').

Witnesseth

Whereas, Licensor has heretofore designed and published the Work (hereinafter defined) in the Korean language in Korea;

Whereas, the Licensor has the exclusive right to enter into this Agreement on behalf of the authors, illustrators, and/or copyright owners of the Work which is the subject of the Agreement and whereas both parties hereto agree as follows regarding the Work published by the Licensor, the titles of which shall be specified in the Exhibit(s) attached hereto;

Whereas, the Licensee desires to publish the Licensee's Edition of the Work (hereinafter defined) as a Book (hereinafter defined) to be distributed in the Territory (hereinafter defined);

Now, therefore, the parties agree as follows:

1. Definition of terms.

1.1 In this Agreement the following definitions shall apply:

- (a) The term Work shall mean the work or series of works described in the Exhibit(s) attached hereto.
- (b) The term Licensee's Edition of the Work shall mean a translated edition of the Work into the language(s) listed in the Exhibit(s) attached hereto.
- (c) The term Book shall mean the Licensee's Edition of the Work in such format as set forth in the Exhibit(s) attached hereto.
- (d) The term Characters shall mean any persons, animals, icons and/or symbols which appear in the Work.
- (e) The term Territory shall mean the countries and associated territories, possessions and military installations listed in the Exhibit(s) attached hereto.
- (f) The term Language shall mean the language(s) granted for translation of the Work with respect to the Licensee's Edition of the Work and listed in the Exhibit(s) attached hereto.

2. GRANT OF RIGHTS

In consideration of the payments herein mentioned the Licensor grants to the Licensee, subject to the reserved rights set out in Article 12, the exclusive right and license to publish the Licensee's Edition of the Work in the form of the Book for distribution and sale in the Territory. If the Licensee wishes to reproduce the Licensee's Edition of the Work in other forms than that of the Book, the Licensee should conclude a separate agreement with the Licensor. It is agreed and confirmed that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such reproduction shall be decided upon mutual consent.

3. TERM

This Agreement shall come into force on the date first written above and shall remain in force for a period of years unless earlier terminated, pursuant to Articles 11, 18, 19 and 20. Provided that the Licensee continues to publish the subsequent volumes of the Work (if available) in the form of the Book, the Licensor may extend the term of this Agreement at its own discretion for an additional one year and consecutive years on a year to year basis. However, the Licensor reserves the right to terminate this Agreement with ____ month prior notice before the end of the extended term of this Agreement. If the Licensee fails to sign this Agreement within days of signature by the Licensor, or should the Licensor have not received from the Licensee the advance payment mentioned below in Article 8 within the period specified below in Article 8 then this Agreement shall be deemed not to have come into effect and all rights granted hereunder may at the sole option of the Licensor and on notice in writing from the Licensor to the Licensee revert to the Licensor, without prejudice to any claim which the Licensor may have for sums due, for damages or otherwise.

4. FIRST NEGOTIATION RIGHTS

During the period of one year after the execution of this Agreement, the Licensor hereby grants the Licensee the rights to first negotiate with the Licensor with a view to publishing the Licensee's edition of any subsequent volumes of the Work, on similar terms and conditions to those set out in this Agreement ("First Negotiation Rights"). If this Agreement is terminated or cancelled according to Article 11 and/or Article 18, the First Negotiation Rights will expire automatically.

5. MATERIALS

5.1 The Licensor agrees to supply data in digital form on CD-ROM of the Work (such materials hereinafter called the "Material") at the Licensee's reasonable request, at actual cost. The Licensee shall pay the full cost of the Materials within days after the Licensor issues an invoice, and such payments shall be made separately from royalty payments. The Licensee shall also pay all transportation charges of the Material. The Material shall not be sent unless the Licensor charges the Licensee above Material cost. In the event that the Licensee wishes to scan inside pages directly from the Work, the Licensee shall do so only with the Licensor's prior written approval.

5.2 The Licensor agrees to supply the Licensee with sample copies per volume of the Work upon the receipt of the advance payment specified in Article 8.

6. PRODUCTION AND PROMOTION

6.1 The translation of the Licensor's text of the Work into the Language and the modification to the illustrations mentioned above shall be conducted by the Licensee at its own cost and responsibility and shall be made faithfully and accurately. The Licensee shall not make any other modifications, abbreviations or alterations to the Work without the prior written approval of the Licensor.

6.2 The Licensor may request a copy of the translation of the Licensor's text of the Work and may request the Licensee to make such changes to the text of the Work, as it requires. The Licensee shall comply with any such request, and provide the Licensor with a copy of the revised translation of the Licensor's text of the Work, within working days of receiving the request.

6.3 The Licensee shall send the final version of the cover design to the Licensor for approval promptly after the cover design has been finalized and the Licensor shall confirm in writing its approval of the cover design, or request any changes, within working days of receipt of the cover design. The Licensee shall make any changes requested by the Licensor, and provide the Licensor with a revised version of the cover design, within working days of being requested to do so.

6.4 The Licensor may also request color proofs of all inside pages of the Licensee's Edition of the Work and request the Licensee to make such changes to the color proofs as it requires. The Licensee shall make any changes requested by the Licensor, and provide the Licensor with a revised version of the color proofs of all inside pages affected, within working days of being requested to do so.

6.5 The Licensee shall make its best efforts to ensure that the quality of the Licensee's Edition of the Work is

comparable and equivalent to that of the sample copies of the Work supplied under Article 5.2.

6.6 The Licensee shall have the right to use the title, text and images taken from the Work for purposes of advertising the Licensee's Edition of the Work, provided that the Licensee has first furnished the Licensor with a detailed manufacturing plan including the design and number of advertising and promotional materials, including give away promotional materials, to be produced, and has obtained the written approval of the Licensor. The Licensee shall ensure that the appropriate copyright notice appears on all the advertising and promotional materials produced.

7. COPYRIGHT AND COPYRIGHT NOTICE

7.1 The Licensee shall ensure that the following copyright notice appears conspicuously on the copyright notice page in all copies of the Licensee's Edition of the Work.

© 20XX, Hong Gil Dong-ABC Publishing Co., Ltd., All rights reserved.
First published in Korea in (printing year) by ABC Publishing Co., Ltd. in Korea
Publication rights for this English edition arranged through ABC Publishing Co., Ltd.

7.2 The name of the Author of the Work shall appear in due prominence on the front cover, title page and spine on all the copies of the Licensee's Edition of the Work.

7.3 The Licensee shall promptly secure, in the name of the Author, whatever copyright protection may be available with respect to the Work and said translation in the Territory. The entire copyright in the Work shall be and remain in the Author's hands subject only to the rights herein granted. The Licensee agrees that the trademarks of the Work shall be registered solely in the name of the Licensor and that any and all title shall be acquired or held by the Licensor at its discretion.

7.4 All the charges and expenses required to execute this Article 7.3 shall be borne by the Licensee.

8. ADVANCE PAYMENT AND ROYALTY

< 단행본의 경우 >

8.1 The Licensee shall pay to the Licensor US Dollars as a non-refundable Minimum Guarantee against and on account of royalties as specified in Article 8.2 of this Agree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payment schedule:

50% of MG amount (US\$_____) no later than (MM/DD/YR)
50% of MG amount (US\$) no later than (MM/DD/YR)

This advance payment of US Dollar_____ per volume of each Book shall be a non refundable minimum guarantee against and on account of royalties for each volume of the Book. It is specifically understood and agreed that all volumes published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accounted for separately and shall not be cross-collateralized.

8.2 The Licensee shall pay to the Licensor the following royalties (hereinafter called the "Royalties") on a non refundable basis:
Up to copies: % of the full cover price of each copy of the Licensee's Edition of the Work sold.
Up to copies: % of the full cover price of each copy of the Licensee's Edition of the Work sold.
More than copies: % of the full cover price of each copy of the Licensee's Edition of the Work sold.

8.3 The Royalties shall be paid by the Licensee within days after each accounting period set out in Article 10.1. The royalty payment indicates the net amount Licensor receives. Any, or all tax, levy, or fee imposed on the royalty payment by Licensee's government will be borne by Licensee, with exception of the Withholding Tax only, as agreed by both parties.

< 잡지의 경우 >

8.1 The Licensee shall submit the statements to Licensor as specified in Article 8.2 of this Agreement, showing all the pages per title serialized and the amount of the royalties accrued thereon. Such statements shall be deemed to be accepted in the absence of contrary indication sent to Licensee not later than one month from receipt of the statement.

8.2 The Licensee shall pay royalties to Daiwon as follows:
- Circulation up to _____ copies, royalty for each page valued at US\$_____
- Circulation up to _____ copies, royalty for each page valued at US\$_____

- Circulation up to _____ copies, royalty for each page valued at US\$ ____
- Circulation up to _____ copies, royalty for each page valued at US\$ ____

8.3 The Royalties shall be paid by the Licensee within days after each accounting period set out in Article 10.1. The royalty payment indicates the net amount Licensor receives. Any, or all tax, levy, or fee imposed on the royalty payment by Licensee's government will be borne by Licensee, with exception of the Withholding Tax only, as agreed by both parties.

9. PAYMENT

9.1 All payments payable hereunder shall be paid by the Licensee to the Licensor in the currency specified in this Agreement or, in the case of any amount invoiced, in the currency specified in the relevant invoice. All amounts shall be paid by the Licensee in full, without any set-off, deduction or counterclaim. Nevertheless if, by law, the Licensee is required to deduct the withholding tax of ()% of the gross advance payment and royalties specified in Article 8, the Licensee shall:

9.1.1 pay the net amount due to the Licensor's account at Korea Exchange Bank, Banbae-Dong Branch which address is _____, Seoul, Korea. The account number is XXX-XX-XXXX-X (SWIFT address : KOEX KRSE);

9.1.2 pay immediately to the relevant tax authorities the amount deducted or withheld for or on account of tax;

9.1.3 send immediately to the Licensor any receipt or certificate issued by the relevant tax authorities in respect of tax deducted or withheld and, if so requested by the Licensor, contact the relevant authorities in order to ensure the speedy issue of such receipt or certificate.

9.2 The Licensee shall make its best efforts to minimize the withholding tax rate according to the tax treaties, if available.

10. STATEMENTS AND RIGHT OF AUDIT

10.1 The Licensee shall close relevant accounts on March 31, June 30, September 30 and December 31 of each year, and shall submit to the Licensor a statement together with all due payments within days after each period, certified as true by the Licensee's Chief Financial Officer, showing, issue by issue, any and all print, circulation, returns, and sales quantity for the immediately preceding accounting period.

10.2 The Licensee shall keep all corporate records and detailed books of account in an accurate and orderly manner according to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and all such books and records and all supporting documents and all financial budgets and copies of any entries therein.

10.3 The Licensee, upon the Licensor's request, shall permit the authorized representatives of the Licensor at any time during business hours, with at least working days' prior notice, to enter upon the premises of the Licensees to examine any books, accounts, documents and papers of whatever nature that related to this Agreement. The Licensee shall, upon the Licensor's or its authorized representative's demand, provide full information as to the nature, identity and whereabouts of all such books, accounts, documents and papers and shall give all information and assistance to the Licensor for the purpose of ascertaining that the Licensor's principles of operation are being observed to a standard acceptable to the Licensor. In the event that such investigation and inquiries show that the number of copies sold is percent (%) greater than the number notified by the Licensee to the Licensor, the Licensee shall bear all the costs of such investigation and inquiries. Otherwise the costs shall be borne by the Licensor.

11. DATE OF PUBLICATION AND PUBLISHING FREQUENCY

11.1 The Licensee agrees to publish the initial issue of the Licensee's Edition of the Work within months after the date of this Agreement first written above.

11.2 The Licensee shall publish successive volumes of the Licensee's Edition of the Work, each within a month period of the other, until all chapters and volumes of the Licensee's Edition of the Work, together with any subsequent volumes of the Work that the Licensor has agreed to license to the Licensee, have been published.

11.3 If the Licensee fails to meet requirements stated in Article 11.1 and 11.2, other than by force majeure defined in Article 19 or as a result of any delays by the Licensor in providing materials to the Licensee, the Licensor shall have the right to terminate this Agreement immediately on notice in writing to the Licensee. Upon such termination all rights granted to the Licensee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shall automatically revert to the Licensor without prejudice to any rights or liabilities which may have arisen before such termination.

12. RESERVED RIGHTS

12.1 The Licensor shall hereby retain the right to use or authorize a third party to use the translation for the Licensee's Edition of the Work for any other edition in the Language in a different format provided that no such edition shall be published in

the Territory for the duration of this Agreement without the Licensee's consent. In the event that the Licensor uses or authorizes a third party to use the translation of the Licensee's Edition of the Work for the other edition in the Language in the Territory for the duration of this Agreement, the Licensor and the Licensee shall negotiate in good faith a usage fee which shall be mutually agreed upon.

12.2 The Licensor and the Licensor's nominee shall have the right to receive, upon the Licensor's request, any films and/or transparencies and/or any type of materials used for the Licensee's Edition of the Work, at actual cost. The transportation cost from the Licensee's warehouse to the Licensor or a place designated by the Licensor shall be borne by the Licensor and/or the Licensor's nominee.

13. ASSIGNMENT

The Licensee shall not assign, sublicense, pledge or otherwise dispose of its rights or delegate its duty under the terms of this Agreement.

14. COMPLIMENTARY COPIES

Within working days after the publication of each volume of the Licensee's Edition of the Work, the Licensee shall send to the Licensor complimentary copies thereof by airmail to:

ABC Publishing Co., Ltd. International Rights Division, Seoul, Korea

Tel: 82-2-792-5749, Fax:82-2-444-4444

Attn: _____ / Executive Managing Director

15. VIOLATION OF LOCAL LAWS

The Licensee shall be solely responsible for the contents of the Licensee's Edition of the Work (and/or promotional materials, if any) with regard to the violation of local laws, and keep the Licensor entirely harmless against any liability in respect thereof, especially for the images or sequences that might be considered obscene, indecent and/or violent. In addition, the Licensee shall take sole responsibility for ensuring that the translation of the Work into the Language does not infringe any existing copyright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Territory and is not defamatory or libelous in any way in the Territory and shall keep the Licensor entirely harmless against any liability in respect thereof. The Licensee may make requests for the Licensor's prior approval to modify the Work or to delete illustrations to avoid violation of local laws. If the Licensee is sued on any or all of these grounds, the suit(s) shall be settled solely by the Licensee at its own cost and expense.

16. INFRINGEMENT

16.1 In the event that the Licensee becomes aware of any infringement or any pending or threatened infringement of the copyright in the Work and/or the Licensee's Edition of the Work within the Territory, the Licensee shall forthwith notify the Licensor in writing of such infringement or threatened infringement.

16.2 In the event that the copyright in the Work and/or the Licensee's Edition of the Work is infringed within the Territory, the Licensee shall take such steps, in consultation with and with the prior agreement of the Licensor, as may be necessary to restrain such infringement at its own expense. The Licensor shall retain the right to engage counsel at its own option, and at its own expense, to join with the Licensee in any action to restrain any such infringement, or to bring separate action in the name of the Licensor and/or the Licensee. Should any settlement or judgment for any monetary damages and cost take place, the Licensee shall pay to the Licensor of all sums collected, after deduction of all legal expenses and court fees paid by the Licensee to enjoin the said proceedings.

17. EXPENSES AND TAXES

All expenses, taxes, and duties in connection with the conclusion and execution of this Agreement which may arise in the Territory shall be borne by the Licensee and those arising in Korea shall be borne by the Licensor.

18. OUT OF PRINT

In the event of the Licensee's Edition of the Work going out of print and/or less than ____ copies of the Licensee's Edition of the Work are in the Licensee's stock, the Licensor may give the Licensee notice in writing requesting the Licensee to reprint the Licensee's Edition of the Work, and if such reprint has not been made within months of such notice, this Agreement shall automatically terminate.

19. FORCE MAJEURE

Either party shall be excused from performance of its obligations hereunder to the extent that and for any period during which such performance is hindered or prevented by reason of any government action, riot, armed conflict, accident, extremes of weather or event of nature.

20. TERMINATION OF AGREEMENT

20.1 Either party hereto may immediately terminate this Agreement by giving notice to the other party:

20.1.1 if the other party is adjudicated bankrupt or insolvent; or if a receiver, liquidator or trustee is appointed for their property; or if any of its property is sequestered or attached by court order and such order remains in effect for more than days; or

20.1.2 if a petition is filed against or by the other party for bankruptcy, reorganization or similar relief in any jurisdiction and is not dismissed within days; or

20.1.3 if the other party makes an assignment for the benefit of their creditors; or

20.1.4 if the other party commits a material breach of any of the provisions hereof and such breach is incapable of remedy, or the other party fails to cure such breach within days after it receives a notice from the party not in default complaining of such breach.

21. CONSEQUENCES OF TERMINATION

21.1 From and after the effective date of expiry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s 3, 11, 18, 19 or 20:

21.1.1 all rights herein granted by the Licensor to the Licensee shall automatically revert to the Licensor; and

21.1.2 the Licensee shall forthwith deliver to the Licensor a full accounting, including a statement showing all payments collected and/or expended and a statement of all moneys held by it, covering the period following the date of the last accounting furnished by the Licensee; and

21.1.3 the Licensee shall not distribute, directly or indirectly, in whole or in part, the Licensee's Edition of the Work.

21.2 Upon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the Licensor shall have the right to either purchase at cost from the Licensee or instruct the Licensee to destroy any material produced for the Book in the Licensee's possession or under its control.

21.3 The termination or expiry of this Agreement for whatever cause shall not affect any rights granted to the Licensor or the Author under Article 7 and shall not affect the rights of any party in respect of any breach of this Agreement or in respect of any moneys payable in relation to this Agreement.

22. NOTICE

Any notice to be given hereunder shall be in writing and shall be given in the form of facsimile or e-mail, followed immediately by a registered letter by airmail with appropriate postage prepaid. Such notice shall be directed to the address first above written or such other addresses as any of the parties hereto may designate by written notice given to the other party hereto.

23. INDEMNITY

The Licensee hereby agrees to indemnify and hold the Licensor harmless from and against any and all liability (including liability to third parties for infringement of copyright or contravention of local laws), loss (whether direct, indirect or consequential and including any economic loss, including loss of profits, revenue or savings), damage, cost or expense (including legal fees) which it may sustain or incur as a consequence of any default by the Licensee in the performance of any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and in particular, without limitation,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5 and 16 hereof.

24. NO WAIVER AND AMENDMENT

None of the terms of this Agreement can be waived or modified except by an express agreement in writing signed by the parties hereto. There are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covenants or undertakings other than those contained in this Agreement which represents the entire understandings of the parties hereto. The failure of either party hereto at any time to require performance by the other party of any of its obligations hereunder shall in no way affect the full rights to require such performance at any time thereafter. The waiver by either party hereto of any remedy with respect to a breach of any provision hereof shall not be taken as a waiver of a remedy with respect to any succeeding breach of such provision or any breach of any other provision.

25. AGENCY

Nothing contained herein shall be deemed or constructed to make one party the agent or partner of the other in a legal sense.

26. SEVERABILITY

If any provision of the Agreement is invalid, illegal or unenforceable, the balance of this greement shall remain in effect and if any provision is inapplicable in any circumstances, it shall nevertheless remain applicable to all other persons and circumstances.

27. GOVERNING LAW AND JURISDICTION

27.1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c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Korea.

27.2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or breach t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in the Seoul District Court in Korea, and the parties hereto irrevocably submit to the jurisdiction of the said courts and waive any rights to object to or challenge the appropriateness of the said forums. The decision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Nothing contained in this Article shall limit the right of the Licensor to apply to any competent judicial authority for interim or conservatory measures whether before or after the legal proceeding are filed.

IN WITNESS WHEREOF, the parties hereto have caused their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s to execute the Agreement the day and year written above.

Date: _____

Young Kim
Executive Managing Director
ABC Publishing Co., Ltd.

John V. Kenedy
President
USA Comics Inc.

단행본의 경우

EXHIBIT A

- 1. Contract period: from January 1st 2009 to _____
- 2. The Work : [] written and drawn by Hong Gil Dong
- 3. The volumes of the Work: Vol.1-Vol.10

Volume No.	Book Size	No. of Pages	ISBN #	Printing Year
1	130 mm x 190mm	190	89-7196-964-0	2001
2	130 mm x 190mm	1950	89-7196-964-1	2001
3	130 mm x 190mm	191	89-7196-964-2	2001
4	130 mm x 190mm	192	89-7196-964-3	2002
5	130 mm x 190mm	195	89-7196-964-4	2002
6	130 mm x 190mm	194	89-7196-964-5	2002
7	130 mm x 190mm	196	89-7196-964-6	2003
8	130 mm x 190mm	196	89-7196-964-7	2003
9	130 mm x 190mm	194	89-7196-964-8	2003
10	130 mm x 190mm	198	89-7196-964-9	2004

- 4. Royalty calculation: All the sold copies x Retail Price (without VAT) x Royalty rate(%)
- 5. Color in print : Black and White
- 6. Cover: Soft Cover with dust jacket
- 7. Book Size: 130 x 190mm
- 8. Number of pages: same as the Work
- 9. Expected cover(retail) price: US\$
- 10. Initial print run per volume: copies
- 11. Reading way: Left to Right (Original way)
- 12. Installation of Minimum Guaranteed amount:

50% of MG amount, US\$, no later than September 15th, 2009(MM/DD/YR)

50% of MG amount, US\$, no later than December 15th, 2009(MM/DD/YR)

13. Territory: English speaking territories (USA, Canada, UK only)

14. Language: English language

15. Copyright notice

© 200X, Hong Gil Dong-ABC Publishing Co., Ltd., All rights reserved.

First published in Korea in (printing year) by ABC Publishing Co., Ltd. in Korea

Publication rights for this English edition arranged through ABC Publishing Co., Ltd.

잡지의 경우

EXHIBIT A

1. The Work : [_____] written and drawn by Hong Gil Dong

2. The volumes of the Work: Vol.1-Vol.10

3. Contract period: from January 1st 2009 to _____

4. The name of Magazine:

5. Magazine Size: 180mm x 290 mm

6. Frequency: biweekly

7. Circulation: copies

8. Cover Price: US Dollars

9. Reading: Left to Right (Original way)

10. Royalty

- Circulation up to _____ copies, royalty for each page valued at US\$ _____

- Circulation up to _____ copies, royalty for each page valued at US\$ _____

- Circulation up to _____ copies, royalty for each page valued at US\$ _____

- Circulation up to _____ copies, royalty for each page valued at US\$ _____

11. Color in print : Black and White

12. Reading way: Left to Right (Original way)

13. Territory: English speaking territories (USA, Canada, UK only)

14. Language: English language

15. Copyright notice

© 200X, Hong Gil Dong-ABC Publishing Co., Ltd., All rights reserved.

First published in Korea in (printing year) by ABC Publishing Co., Ltd. in Korea

Publication rights for this English edition arranged through ABC Publishing Co., Ltd.

본 계약은 200년__월__일 대한민국 법에 의거 설립되어 존속하고__(지역)___에 그 주요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는____회사(이하, '라이선시'라고 칭함)와__국가의(__주)법에 의거 설립되어 존속하고____에 그 주요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는____회사(이하, '라이선시'라고 칭함)간에 체결되었다.

라이선시는 한국지역에서 한국어로 본 계약상의 '저작물'(이하 규정)을 디자인하고 출판하였다.

라이선시는 본 저작물의 원작자, 일러스트레이터 및 저작권 소유자를 대리하여 본 계약을 체결할 독점적 권리를 소유하고 있으며, 본 계약당사자 쌍방은 별첨에서 규정된 라이선서가 출판한 본 저작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라이선시는 본 계약상의 저작물의 '라이선시 판본'(이하 규정)을 '단행본'(이하 규정)형식으로 출판하여 '계약지역'(이하 규정)에서 유통하고자 한다.

이상의 합의를 약인으로 본 계약의 양당사자는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용어의 정의

1.1 본 계약서에서의 용어는 다음의 각호에서 규정에 따라 해석한다.

- (a) '저작물'은 별첨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시리즈를 의미한다.
- (b) '라이선시 판본'은 별첨에서 규정하는 언어로 번역된 저작물의 번역본을 의미한다.
- (c) '단행본'은 별첨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태로 제작된 라이선시 판본을 의미한다.
- (d) '캐릭터'란 본 저작물상에 등장하는 인물, 동물, 아이콘 및 상징물을 의미한다.
- (e) '계약지역'이란 별첨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또는 이의 관할지역, 소유지역, 또는 군사주둔지역을 의미한다.
- (f) '언어'란 본 계약의 별첨에서 규정하는 라이선시 판본으로의 번역에 이용된 언어를 말한다.

2. 권리의 부여

본 계약상 라이선시의 지불에 대한 약인으로, 12조에 규정된 유보권리를 조건으로, 라이선시는 라이선시에게 계약지역에서 라이선시 판본의 단행본의 출판, 유통 및 판매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 라이선시가 단행본 이외의 형태로 본 저작물을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 라이선시는 라이선서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러한 복제물의 거래조건은 쌍방의 동의에 따른다.

3. 계약기간

본 계약은 11조, 18조, 19조, 20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에 기재된 날짜로부터 효력을 발휘하여, 본 계약이 중도 해지되지 않는 한__년 동안 그 효력이 지속된다. 라이선시가 저작물의 속권을 지속적으로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 (속권이 있을 경우), 라이선서는 자유재량에 따라 계약기간을 1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는 매년 1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단, 라이선서는 연장된 계약기간의 종료일의__(개월)이전에 사전 통지로 계약을 종료할 권리를 가진다. 만약 라이선서가 계약에 서명한 날로부터__(일) 이내 라이선시가 본 계약에 서명하지 아니하거나, 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선지급금이 지불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의 효력은 발생되지 아니하고 본 계약에서 부여하고 있는 모든 권리는, 권리의 반환에 대한 서면통지로 라이선서에게 귀속되며, 라이선시는 라이선서에게 발생했을 지불액 또는 피해 및 기타사항에 대한 클레임을 면할 수 없다.

4. 우선협상권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년 동안의 기간에, 라이선시는 라이선시에게 본 저작물의 속권의 출판에 대하여, 본 계약과 유사한 조건의 계약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부여한다("우선협상권"). 본 계약의 11조 또는 18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 우선협상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5. 소재

5.1 라이선서는, 라이선시의 정당한 요구라면, 본 저작물을 CD-롬의 디지털 형태로 실비의 금액으로 라이선서에게 제공하는 것에 합의한다(이하 "소재"라 칭함). 라이선시는 라이선서가 청구서를 발행한 날로부터__(일) 이내에 소재비를 완납하여야 하며, 이 비용은 로열티의 지급과 별도로 지불 되어야한다. 본 소재의 운송비도 라이선시가 지불하며, 라이선서가 비용을 수령하기 전까지 소재를 보내지 아니한다. 라이선시가 저작물의 내지를 직접 스캔하고자 할 경우, 라이선서에게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5.2 라이선시는 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지급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본 저작물 샘플 소재를 단행본 각권당__부를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6. 제작 및 홍보

- 6.1 라이선시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계약지역 언어로 저작물을 번역하고 일러스트를 수정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 충실하고 정확한 내용을 보증하여야 한다. 라이선시는 임의로 그 어떠한 변경, 축약 또는 개작 할 수 없으며, 필요시 라이선서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 6.2 라이선서는 저작물의 번역본에 대한 납본 1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이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라이선시는 이러한 수정요구를 반드시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라이선서의 요구로부터 ____ 영업(일) 이내 수정 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6.3 라이선시는 표지 디자인이 완결되는 즉시 라이선서에게 송부하여 최종승인을 얻어야 하며, 라이선시는 커버 디자인 최종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____ (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승인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라이선시는 라이선서로부터의 그 어떠한 변경 요구에도 응해야 하며, 이러한 요청이 있는 후로부터 ____ (영업일) 이내에 이의 수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6.4 라이선서는 라이선시 판본이 포함하는 전체 페이지에 대한 색고정지의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시 이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라이선시는 라이선서의 요청에 따라 반드시 이를 수정해야 하며, 이러한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____ (영업일) 이내에 전 페이지가 수정된 수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6.5 라이선시는 라이선시 판본이 5.2조의 규정에 따라 샘플 납본과 동등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품질이 보증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6.6 라이선시는 라이선시 판본 광고를 목적으로, 원본으로부터 발췌된 타이틀, 텍스트, 이미지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우선 라이선시는 무료 배포용 유형물을 포함한 광고 및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되는 모든 유형물에 대한 디자인과 수량 등을 포괄하는 상세한 생산계획을 라이선서에게 제출하고 라이선서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이선시는 광고 및 판촉용 유형물에 유효하고 적절한 저작권 표기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저작권 및 저작권 표기

- 7.1 라이선시는 모든 라이선시 단행본의 저작권 표시 페이지에 아래의 저작권 표시가 명확히 인식되도록 표시할 의무가 있다.

© 20XX, 원저작권자명, 출판사명(저작권자명)

All rights reserved.

First published in Korea (출판년도) by (출판사명).

Publication right for this (해당언어) edition arranged through (라이선시)

- 7.2 본 저작물 원작자의 성명은 표지커버, 제목 페이지, 도서측면에 명확히 인식되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 7.3 라이선시는 계약지역 내에서 원작자의 명의로 모든 저작권이 보호되도록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본 계약상 라이선서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제외한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귀속된다. 라이선시는 저작물에 대한 상표권이 라이선서의 단독 명의로 등록되고, 라이선서의 자유재량에 따라 모든 권리가 취득 및 보유되는 것에 합의한다.
- 7.4 7.3항을 이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수수료는 라이선시가 지불한다.

8. 선지급금 및 로열티

< 단행본의 경우 >

- 8.1 라이선시는 아래의 일정에 따라 8.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로열티에 대한 최소보증금액에 대한 반환불가의 조건으로 선지급금 US 달러 ____를 지불한다.

최소보증로열티의 50% (US\$____) (____년 ____월 ____일 이내)

최소보증로열티의 50% (US\$____) (____년 ____월 ____일 이내)

각 단행본에 대한 선지급금 (US\$)은 각 단행본의 로열티에 대한 최소보증로열티에 대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이는 환불되지 아니한다. 본 계약상 출판된 모든 각 단행본은 권별로 정산되며, 서로 연계하여 상계처리하지 아니한다.

- 8.2 라이선시는 라이선서에게 반환불가의 조건으로 다음의 로열티를(이하 “로열티”) 지급키로한다.

____부 이하: 판매수량 x 라이선스 판본 표지 정가 x 요율 ____%

____부 이하: 판매수량 x 라이선스 판본 표지 정가 x 요율 ____%

____부 이상: 판매수량 x 라이선스 판본 표지 정가 x 요율 ____%

- 8.3 로열티는 10.1조에서 규정하는 매 회계기간으로부터 ____ (일) 이내에 지불되어야 한다. 로열티 지불액은 라이선서가 수령하는 순

수 총액을 의미한다. 로열티에 대하여 라이선시 정부에서 부과하는 모든 세금, 징수액, 수수료는 라이선시가 지불한다. 단 원천 징수세는 상호간 합의에 따라 예외로 한다.

< 단행본의 경우 >

라이선시는 본 계약의 8.2조에서 규정에 따라, 잡지의 모든 연재 페이지 수 및 해당 로열티를 명기한 명세서를 라이선서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 명세서의 경우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라이선서의 반대 의사표현이 없을 경우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8.2 라이선시는 라이선서에게 다음의 로열티를 지급한다.

- 잡지 발행부수 _____ 부 이하일때, 페이지당 로열티 ____US\$
- 잡지 발행부수 _____ 부 이하일때, 페이지당 로열티 ____US\$
- 잡지 발행부수 _____ 부 이하일때, 페이지당 로열티 ____US\$
- 잡지 발행부수 _____ 부 이하일때, 페이지당 로열티 ____US\$

8.3 로열티는 10.1조에서 규정하는 매 회계기간으로부터 ____ (일)이내에 지불되어야 한다. 로열티 지불액은 라이선서가 수령하는 순수 총액을 의미한다. 로열티에 대하여 라이선시 정부에서 부과하는 모든 세금, 징수액, 수수료는 라이선시가 지불한다. 단 원천징수세는 상호간 합의에 따라 예외로 한다.

9. 지불

9.1 라이선시가 라이선서에게 지불해야 하는 모든 금액은 본 계약에서 규정하는 통화로 지불해야하며,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규정하는 통화로 지불한다. 모든 지불은 그 어떠한 장부보전 공제, 상계 처리 없이 완결하게 지불되어야 한다. 단, 본 계약의 8조 규정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선지급금 총액 및 로열티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 ()%를 공제하여야 할 경우에는 라이선시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9.1.1 라이선시는 지불해야 하는 총액을 라이선서의 계좌로 송금한다.

은행명: _____ 은행 _____ 지점

은행주소: _____
계좌번호: _____
Swift Address: _____

9.1.2 라이선시는 관할 세무당국에 즉시 공제액 또는 원천 징수된 세금을 납입한다.

9.1.3 라이선시는 관할 세무당국으로부터 세금공제액 또는 원천징수세의 납입완료를 증명하는 영수증 또는 증명서를 라이선서에 제출 하고, 라이선서로부터 이러한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영수증 또는 증명서의 신속한 발급을 위하여 즉시 관할 세무당국과 접촉해야 한다.

9.2 라이선시는 국제조세조약에 따라 가능한 원천징수세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0. 회계기록 및 감사권

10.1 라이선시는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자로 결산하고, 각 정산회기의 종료일로부터 ____ (일) 이내로, 라이선시의 최고 재무 담당자에 의하여 승인된, 직전 회기동안의 단행본 (또는 잡지)의 각각의 판본 및 간행본에 대한 인쇄부수, 판매부수, 반품부수 등 판매량을 입증하며 예정지급액이 명기된 회계장부를 라이선서에게 제출한다.

10.2 라이선시는 일반적 회계준칙에 따라 정확하고 완결한 회사기록 및 회계장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10.3 라이선시는 라이선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라이선서의 합법적 대리인으로 하여금 영업시간에 라이선시의 사업장소에서 기록 및 회계장부, 관련서류 및 문서등 본 계약과 관련한 모든 관련 기록 및 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라이선서의 열람에 대한 청구는 최소한 (____) (영업일) 이전에 사전 고지를 통해 고지하여야 한다. 라이선시는 라이선서 또는 그의 합법적 대리인의 요구에 따라 모든 관련 기록, 장부, 서류, 문서 등에 대한 정확한 특징, 실제, 위치에 대한 온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라이선서와의 계약이 원칙에 따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모든 정보를 지원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감사에

대한 비용은 라이선서가 부담한다. 단, 감사의 결과 판매 수량과 라이선시가 라이선서에게 고지했던 수량의 차이가 ____%를 초과하는 경우, 본 감사에 대한 비용은 라이선시가 부담한다.

11. 출판일 및 출판 주기

- 11.1 라이선시는 본 계약이 체결로부터 ____ (개월) 이내에 라이선시 판본의 초판 단행본을 출판하는 것에 합의한다.
- 11.2 라이선시 판본의 모든 챕터와 후속 편이 모두 출판될 때 까지, 라이선시는 전(前)권 출판 후 ____ (개월)의 이내 기간에 라이선시 판본의 그 다음 권수를 지속적으로 출판하여야 하며, 또한 라이선서가 라이선시에게 허가한 작품의 추가 속권이 완간될 때까지 단행본을 출판하여야한다.
- 11.3 라이선시가 19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 사유에 의하거나 라이선서로부터 저작물 제공이 지연된 사유를 제외하고, 11.1조와 11.2조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라이선서는 서면고지를 통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의 해지와 동시에 본 계약상 라이선시에게 허가된 모든 권리는 자동적으로 라이선시에게 귀속되며, 라이선시는 본 계약의 해지 이전에 라이선서에게 발생했을 수도 있는 권리관계에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진다.

12. 유보 권리

- 12.1 라이선서는 라이선시 판본에 이용된 번역물을 라이선시 판본과 다른 형태의 판본을 제작하는 데 이용할 권리 또는 제3자에게 동 권리를 허가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단, 이러한 새로운 판본은 라이선시의 동의 없이 계약기간동안 계약지역 내에서 출판될 수 없다. 그러나 라이선시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 양당사자는 상호의 이익을 위하여 선의로 이용수수료에 대하여 협의하기로 한다.
- 12.2 라이선서 및 라이선서가 지명한 대리인은 라이선서로부터의 요구가 있는 즉시 필름, 슬라이드 및 기타 어떤 형태의 유형물이든 라이선시 판본에 활용된 소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의 배송에 대한 비용은 라이선서 또는 라이선서의 지명인이 부담한다.

13. 양도

라이선시는 제3자에게 본계약상 부여된 권리를 양도, 재이용허락, 담보제공 또는 처분하거나, 의무를 위임할 수 없다.

14. 무상증정

라이선시 판본의 출판일로부터 ____ (영업일) 이내에 라이선시는 항공우편을 통해 아래의 주소로 본 단행본의 ____ (권)을 납본하여야 한다.

라이선서 주소

15. 현지 법률 위반

라이선시는 외설, 저속 또는 폭력적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일러스트 또는 스토리의 전개 등 라이선시 저작물의 내용(판촉용 유형물 포함)의 현지법을 규정 위반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하여 라이선서를 면책한다. 또한 라이선시에 의한 원저작물의 번역물이 계약지역 내에서 저작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받지 않으며, 그 어떤 방식으로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하지 않도록 할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책임으로부터 라이선서를 면책한다. 라이선시는 현지법을 위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러스트의 수정 또는 삭제가 필요할 경우 라이선시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지법률의 위반과 관련된 법적소송이 발생할 경우, 라이선시는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6. 침해

- 16.1 라이선시는 계약지역 내에서 원저작물 또는 라이선시 판본에 대한 저작권의 침해 또는 침해의 임박 또는 위협을 인지하였을 경우, 즉시 서면을 통해 라이선서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 16.2 계약지역 내에서 본 저작물 또는 라이선시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라이선시는 라이선서와의 협의 및 사전 동의를 통해서 자신의 비용으로 침해를 중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이선서는 자유재량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라이선시와 공동으로 침해를 중지하기 위한 그 어떠한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자신 또는 라이선서의 명의의 개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손해배상 또는 비용에 대한 구제결정 또는 판결이 있을 경우, 라이선시는 자신이 지불한 모든 법적비용을 공제한 총금액의 _____를 라이선시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17. 비용 및 세금

본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세금, 관세는 계약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우 라이선시가 지불하며, 라이선서 국가에서

발행하는 비용은 라이선서가 지불한다.

18. 재판

라이선시 판본이 절판되거나, 재고 잔량이 ____부 이하일 경우, 라이선서는 라이선시에게 서면 고지를 통해 재판 발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고지가 있는 후로부터 ____ (개월) 이내에 재판발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된다.

19. 불가항력

본 계약의 의무 불이행이나 이행지체가 천재지변, 소요사태, 전쟁, 정부의 규제,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기간에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이로부터 발생하는 책임으로부터 면책한다.

20. 계약의 해지

20.1 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서면고지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1.1 일방 당사자가 파산 또는 지급불능 판결을 받은 경우, 재산의 처분을 위하여 관리인, 청산인, 관재인등이 지정된 경우, 또는

법원에 의한 재산물수나 압류처분을 받았거나, 그런 결정으로부터 ____ (일) 이상이 남은 경우, 또는

20.1.3 상대 당사자로부터의 파산, 구조조정, 또는 기타 유사한 법적 구제에 대한 청원이 있고, 그 청원이 ____ (일) 이내로 기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또는

20.1.3 상대 당사자가 채권자를 위해 양도를 하는 경우, 또는

20.1.4 일방 당사자에게 계약상 이행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구제가 불능하거나, 상대 당사자로부터 구제에 대한 최고를 받은 날로부터 ____ (일) 이내에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1. 계약 해지의 결과

본 계약은 3, 11, 18, 19, 20조에 의거 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의 결과는 다음의 각호에 따른다.

21.1.1 라이선서로부터 라이선시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는 자동적으로 라이선시에게 귀속된다.

21.1.2 라이선시는 발생한 모든 징수액과 지출액 및 기타 제금액을 증명하는 명세서를 포함하는 회계장부를 최종 회계기간 이후 분까지 포함하여 라이선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1.3 라이선시는 직접 또는 간접, 전체적 또는 부분적이든 상관없이, 그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라이선시 판본을 유통할 수 없다.

21.2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발생하는 즉시 라이선서는 제조원가로 이를 라이선시로부터 구매하거나, 자신의 통제 하에 라이선시가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에 대한 패기를 지시할 수 있다.

21.3 그 어떠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이든지,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는 본 계약의 7조에 의거하여 라이선서 또는 원작자에게 부여된 권리에 그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며,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상대방사자의 권리 및 본 계약이 규정하는 지불에 대한 권리에도 그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2. 고지

본 계약에 의거 고지는 팩스송신, 이메일에 의한 서면통지를 하고, 곧바로 선불의 항공 등기 우편을 통해, 본 계약의 전문에 기재된 주소 또는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고지한 지정된 주소지로 송부되어야 한다.

23. 면책

라이선시는 본 계약상 라이선시의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그 어떠한 책임(저작권의 침해 또는 계약지역의 법률위반에 대한 제3자의 책임 포함), 손실(직접, 간접, 부수적 손실 또는 수익, 이익, 예금등의 경제적 손실 포함), 손해, 비용(법정비용 포함)에 대해서, 본 계약과 계약서의 조항 특히 7, 15, 16조에서 규정으로 부터의 아무런 제한이 없이 라이선서를 면책하는 것에 동의한다.

24. 권리포기 및 수정 불가

본 계약은 양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서명하고 합의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본 계약의 그 어떠한 조항 및 권리관계도 포기되거나 수정될 수 없다. 본 계약은 양당사자의 완전한 합의와 동의로 구성되며, 어느 당사자도 본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그 어떤 단언, 보증, 약정, 의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에 의한 특정시점의 의무불이행은 향후 동의무의 이행에 대한 상대방사자의 권리에 그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본 계약의 특정 조항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구제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 포기는 향후 발생하는 동 조항 또는 기타 조항의 위반에 대한 구제의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25. 대리인

본 계약은 당사자들은 본 계약으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한 법적인 의미의 대리인이나 파트너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6. 일부무효

본 계약의 특정 조항이 무효 또는 불법, 또는 집행 불능이 될 경우에도, 본 계약의 기타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며, 특정 조건하에서 일부 조항이 무효 또는 집행 불능일 경우라 할지라도, 본 조항은 기타 당사자 및 조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그 효력을 발휘한다.

27. 준거법 및 분쟁해결

27.1 본 계약은 한국 법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된다.

27.2 본 계약상 양 당사자간의 발생하는 모든 분쟁, 쟁점, 불일치 또는 이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불이행은 한국 서울지방법원이 관할하며, 양 당사자는 본 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여, 이에 반하는 권리는 포기하여야 한다. 본 법원의 결정은 최고 결정으로 양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본 조항은 본 관할법원에 의한 소송의 이전이나 이후에 관계없이, 임시조치나 보전조치를 위해 그 어떠한 적법한 사법당국에도 청구할 수 있는 라이선서의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양당사자는 이상을 보증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표자로 하여금 맨 처음 기재된날짜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일시 : _____

(서명)

대표자

직함

회사명

(서명)

대표자

직함

회사명

별첨 A

단행본의 경우

1. 계약기간 : _____ 부터 _____ 까지
2. 저작물 : (_____) 글/그림 : _____ 작가명 _____
3. 단행물 시리즈

시리즈 번호	단행본 규격	페이지	ISBN 번호	인쇄일자
1	130 mm x 190mm	190	89-7196-964-0	2001
2	130 mm x 190mm	1950	89-7196-964-1	2001
3	130 mm x 190mm	191	89-7196-964-2	2001
4	130 mm x 190mm	192	89-7196-964-3	2002
5	130 mm x 190mm	195	89-7196-964-4	2002
6	130 mm x 190mm	194	89-7196-964-5	2002
7	130 mm x 190mm	196	89-7196-964-6	2003
8	130 mm x 190mm	196	89-7196-964-7	2003
9	130 mm x 190mm	194	89-7196-964-8	2003
10	130 mm x 190mm	198	89-7196-964-9	2004

4. 로열티 정산방법 : 총판매부수 × 소비자가(VAT 미포함) × 로열티요율(%)
5. 인쇄 색상 : 흑백
6. 표지 : 소프트커버, 더스트 재킷(dust jacket)
7. 판형 : 130 × 190mm
8. 페이지 수 : 원저작물과 동일
9. 예상 소매가 : US\$ _____
10. 권당 초판인쇄부수 : _____ 부
11. 펼치기 : 왼쪽펼치기 (원본과 동일)

12. 최소보증금액 지급방법

최소보증로열티의 50% (US\$ _____) (____년 ____월 ____일 이내)

최소보증로열티의 50% (US\$ _____) (____년 ____월 ____일 이내)

13. 계약지역 : 영어권 지역(미국, 캐나다, UK에 한함)

14. 언어 : 영어

15. 저작권 표기

© 20XX, 원저작권자명, 출판사명(저작권자명)

All rights reserved.

First published in Korea (출판년도) by (출판사명).

Publication right for this (해당언어) edition arranged through (라이선서)

별첨 B

잡지의 경우

1. 저작물 : [_____] 글/그림 : 원작자

2. 단행본 시리즈 : 1권-10권

3. 계약기간 : 2009년 1월 1일 ____부터 _____까지

4. 잡지명 : _____

5. 잡지 사이즈 : 180mm × 290 mm

6. 발행주기 : 2주

7. 발행부수 : _____부

8. 표지 정가 : US\$ _____

9. 펼치기 : 왼쪽펼치기 (원본과 동일)

10. 로열티

- 잡지 발행부수 _____부 이하일때, 페이지당 로열티 _____US\$

- 잡지 발행부수 _____부 이하일때, 페이지당 로열티 _____US\$

- 잡지 발행부수 _____부 이하일때, 페이지당 로열티 _____US\$

- 잡지 발행부수 _____부 이하일때, 페이지당 로열티 _____US\$

11. 인쇄 색상 : 흑백

12. 펼치기 : 왼쪽펼치기 (원본과 동일)

13. 계약지역 : 영어권 국가(미국, 캐나다, 영국에 한함)

14. 사용언어 : 영어

15. 저작권 표기

© 20XX, 원저작권자명, 출판사명(저작권자명)

All rights reserved.

First published in Korea (출판년도) by (출판사명).

Publication right for this (해당언어) edition arranged through (라이선서)

7.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개정 (부문별 디지털콘텐츠 공급표준계약서 제정)

1. 개정 이유

디지털콘텐츠 거래의 증가와 다양화에 부응한 대형 포털·모바일사업자와 콘텐츠제공자간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필요

- 디지털콘텐츠(Digital Contents : 이하 "DC"라고 함)의 이용 및 거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DC 거래에 관한 세부기준이 결여되어 거래 당사자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디지털콘텐츠산업은 DC 유통경로에 있어서 대형 인터넷포털 및 이동통신사업자와 중소·영세콘텐츠제작자(Contents Providers : 이하 "CP"라고 함) 간에 콘텐츠공급을 위해 체결하는 계약서에 포털 및 통신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조항을 강제하는 등 콘텐츠 제작·유통 환경의 건전성을 해치고 산업 발전에 장애요소로 작용
- 포털 및 이동사와 CP간의 불공정한 수익분배, DC 유통량과 정산의 투명성 제고의 문제, 일방적인 저작권 귀속 및 저작물 사용, 사업 활동 방해 행위,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 부당한 공동행위 등 다양한 문제 발생

디지털콘텐츠의 다양성을 반영한 부문별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제정 필요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16조의3 제3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 5월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를 공시하였으나, 부문별 DC 서비스의 차이 및 특징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여 다양한 DC 부문에 일률적으로 적용 곤란
- 음악·영상·이러닝·포털·모바일 등 주요 5개 DC 분야를 중심으로 포털 또는 이동통신사업자와 콘텐츠제작자(Contents Providers : 이하 "CP"라고 함) CP 간에 체결되는 부문별 DC 공급표준계약서를 제시하여 콘텐츠 제작 및 유통환경 개선에 기여

2. 법적 근거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16조의3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콘텐츠의 건전한 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디지털콘텐츠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지침,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음

3. 주요 개정 내용

1) 공통(포털 일반)

가. 부문별 표준계약서 제시

- 현행 표준계약서는 부문별 DC 서비스의 차이 및 특징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여 다양한 DC 부문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움. 포털·음악·영상·이러닝·모바일 등 주요 5개 DC 분야를 중심으로 포털 또는 이동통신사업자와 CP 간에 체결되는 부문

별 DC 공급 표준계약서를 제시

- ※ (1)디지털콘텐츠(포털 일반) 공급표준계약서, (2)디지털콘텐츠(음악) 공급표준계약서, (3)디지털콘텐츠(영상) 공급표준계약서, (4)디지털콘텐츠(이러닝) 공급표준계약서, (5)디지털콘텐츠(모바일) 공급표준계약서

나. 계약서 명칭의 변경

- 계약서 명칭이 계약의 구체적인 성격과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지 못하여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를 "디지털콘텐츠 공급표준계약서"로 변경

다. 온라인콘텐츠 서비스사업자의 의무에 자회사에 대한 특혜 금지 명시(제3조 제3항)

- 계약상 온라인콘텐츠 서비스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자회사에 대한 특혜로 인한 차별 금지 포함

라.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데이트 수준을 벗어난 추가 비용은 온라인콘텐츠 서비스 사업자가 부담(제4조 제3항)

-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데이트를 넘어 온라인콘텐츠 제공자에게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는 업데이트인 경우에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온라인콘텐츠 서비스 사업자가 온라인콘텐츠 제공자에게 그 업데이트 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줄이도록 함

마. 콘텐츠에 대한 권리 규정 등 신설(제11조)

- 콘텐츠에 대한 권리는 콘텐츠제공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는 일반 당사자에 의한 권리의 부당한 탈취를 방지하도록 함
- 최근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분쟁 및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콘텐츠제공자의 콘텐츠가 타인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콘텐츠제공자로 하여금 진술 보증하게 함

바. 명예 훼손 및 브랜드 가치 저해 방지에 대한 일반조항 신설(제14조)

- 양 당사자는 상호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한다는 거래의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본 콘텐츠의 공급 및 이용과 관련하여 어느 일방이 타방의 명예 및 브랜드가치 혹은 저작권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여 타방을 보호한다는 일반조항을 둬으로써 불측의 피해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

사. 기술적 보호조치 신설(제15조)

- 웹 또는 모바일을 기반으로 콘텐츠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

자는 콘텐츠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 수준의 기술적 보호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아. 정산 지연배상금의 이율 규정 신설 등 (제17조 제3항 및 제4항)
○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정보제공료의 지급을 수개월 지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산 지연배상금의 이율을 규정함으로써 그러한 관행을 방지하고자 함
○ 정산자료 제공과 관련된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해 규정한 현 표준계약서상의 “2배”는 산출기준이 사안에 따라 상이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당사자가 정하도록 함

자. DC거래사실인증제도 활용 신설(제17조 제6항)
○ DC거래사실인증이란 온라인콘텐츠 거래에서 거래내역과 사실을 검증된 제3의 인증기관을 통해 확인 및 증명 받는 것을 말함. 이 제도를 통해 DC를 구매 또는 이용한 후 결제하게 되면 화폐단위, 결제금액, 결제수단 및 거래조건과 거래주체는 물론 위·변조 사실까지 증명할 수 있음

차. 이용실의 저하 시 서비스 중단 등 신설(제19조)
○ 이용의 실익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 즉 서비스 개시 이후 몇 개 월 동안 월 평균 매출액이나 콘텐츠이용량이 얼마 이하일 경우에는 “갑” 또는 “을”이 서비스 혹은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해제시킬 수 있도록 하되,
○ 콘텐츠의 매출은 서비스 화면상에서 콘텐츠의 배치 및 노출정도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중단 기준을 정하여 납용의 소지를 최소화 함

카. 계약종료 시 이용자 보호(제20조)
○ 계약이 종료된 경우라도 이용자의 권리가 관계된 동안에는 해당 콘텐츠의 폐기, 삭제를 유보함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함

타. 분쟁의 해결 시 조정, 중재 해결 방안 제시(제23조)
○ 분쟁해결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조정위원회의 조정이나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할 수 있도록 함

2) 부문별 특이사항

(1) 음악콘텐츠

가. 계약 당사자 및 목적(제1조)
○ 음악콘텐츠를 관리하여 공급하는 신탁기관(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또는 개별 권리자 등인 “을”과 당해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사용료를 “을”에게 지급하는 콘텐츠서비스업자인 “갑”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임
○ 음악콘텐츠의 사용허락범위와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련 업무 및 절차, 분쟁발생시 그 해결의 기준 등을 규정하여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이용자의 청약철회권리와 저작권 보호(제3조 제2항 및 제4조 제6항)
○ 온디콘법 제16조의2 및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음악콘텐츠의 미리듣기 등 시용상품의 제공, 한시적 또는 일부 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청약철회 권리 행

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그러나 미리듣기를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을”과 협의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함

다. 사용허락의 범위(제5조)
○ 음악콘텐츠의 계약에 있어서 사용허락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사용허락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용의 경우에는 “을”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하여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를 예방함

라. 저작인격권 침해의 책임(제11조)
○ 저작인격권(저작자와 실연자에 한함)을 침해하거나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사업자는 책임을 지도록 함

마. 정보제공료 산정(제15조)
○ 콘텐츠 제공자가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참조하여 정보제공료를 산정하도록 기준을 제시함(저작권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실연자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음반제작자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의 징수규정을 참조하도록 함)

(2) 영상콘텐츠

가. 콘텐츠제공자의 콘텐츠 내 광고 삽입 허용 등(제3조)
○ 영상콘텐츠는 시각적 콘텐츠이므로 인터넷 서비스사이트에서 이용자에게 보여주는 동영상 등 콘텐츠에 광고를 삽입할 수 있으며 그 여부는 CP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야 하며 서비스사업자가 이를 부당하게 금지하지 않도록 함
○ 만일 서비스사업자가 CP가 제공한 콘텐츠에 광고를 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협의하도록 함

나. 콘텐츠 제공자가 저작권 및 영상물등급 심의 등에 대해 보증하도록 함(제4조)
○ 최근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분쟁 및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을”의 콘텐츠가 타인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 각종 등급 등에 위반되지 않았음을 “을”로 하여금 진술보증하게 함

다. 서비스의 범위 및 정보이용료(제5조)

○ 영상콘텐츠 제공방식에는 ‘VOD 스트리밍 방식’ 또는 ‘다운로드 방식’ 등이 있으므로 그 제공방식에 대해서 사전협의하도록 함

라. 서비스제공의 중단 등(제19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나아가 콘텐츠 제공자는 서비스 사업자에게 청소년유해물 등에 대한 삭제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사업자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서비스의 중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조치사항을 규정함

(3) 이러닝콘텐츠

가. 이러닝 서비스의 특징에 따른 특수한 권리의무관계 규정(제3조 및 제4조)

○ 이러닝서비스의 특징상 당사자는 특수한 의무를 짐. 사업자 사업자의 경우 교육운영시스템 및 네트워크 환경 등 '서비스' 환경을 마련하고 교육과정운영에서부터 홍보, 마케팅 등을 부담하는 반면, 콘텐츠 제공자의 경우 '이러닝콘텐츠' 제공 및 유지보수 그리고 콘텐츠 제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는 학습 장애요소 및 불만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 콘텐츠의 내용과 관련된 학습자의 질문사항 처리를 하도록 함

나. 정보제공료 산정에 있어 이러닝 서비스 특징 반영(제2조 및 제16조)

○ 정보제공료의 산정에 있어서 이러닝 서비스의 특징상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수한 매출액 총액에서 교육과정의 특징에 따라 서비스사업자가 지출하는 일정한 수수료(강사료, 카드수수료 등)를 제외하고 당사자가 정한 비율에 따라 정보제공료를 콘텐츠 제공자에게 지급함

다. 교육과정의 폐강 근거 및 기준 마련(제19조)

○ 교육과정의 수강생이 동일수준의 다른 교육과정에 비해 현저히 적어 서비스 사업자의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서비스 사업자는 콘텐츠 제공자와 협의하여 폐강을 할 수 있도록 함
○ 이러닝 서비스의 특징상 콘텐츠의 품질하자 또는 시스템의 문제 등으로 동일한 불만사항이 다수의 회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경우 해당 교과과정을 협의하여 폐강할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서비스 사업자가 해당 과정을 폐강하려고 할 경우 그 사실을 콘텐츠 제공자에게 통보하고 콘텐츠 제공자가 당해 문제를 시정, 개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제공해야 함
○ 만일 위의 사유로 서비스의 일부가 중단될 경우에는 서비스 사업자는 그에 따른 비율로 정보제공료를 감액할 수 있음

(4) 모바일콘텐츠

가. 계약당사자 등(제1조)

○ 모바일콘텐츠 공급계약은 "을"(CP)이 직접 제작 또는 다른 CP로부터 확보한 콘텐츠를 이동통신사업자인 "갑"의 모바일 포털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을"이 "갑"에게 콘텐츠를 제공하고 "갑"은 그 대가로서 정보이용료 수익 및 정보제공료를 "을"에게 지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계약임
○ 표준계약서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모바일 콘텐츠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가능한 많이 포함하였음

나.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본정보 제공의무 및 부당행위 금지 의무(제3조)

○ 이동통신사업자는 콘텐츠 관련 시스템 구축방향, 제작비 지원 기준, 메뉴구성 기준, 지원업체 선정 기준 등 콘텐츠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모바일콘텐츠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이동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익배분 기준, 비율, 메뉴노출, 접속경로, 요금제, 설비제공방식 등 거래조건 및 지원에 있어 자회사, 계열사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사업자와 모바일콘텐츠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하여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토록 함

다. 정보이용료 및 수수료 책정(제7조)

○ 정보이용료 수익규모는 이동통신사업자와 CP간 공정한 계약에 따라 정보이용료 청구액 또는 이용자가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함

○ 정보이용료 청구액과 이용자의 실제 납부액에 따라 정보이용료 미납·체납예상액을 미리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CP에게 신속한 수익 분배가 가능하도록 함

○ 기타 서비스 및 과금 개시일, 요금제 종류, 요율 등 이용자에 대한 정보이용료의 책정은 "갑"과 "을"간 합의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된 부속서에서 정하도록 함

라. 정보이용료 및 정보제공료 정산(제8조)

○ 이용자가 콘텐츠 이용의 대가로 지불하는 정보이용료는 기본적으로 CP의 수익으로 규정하여, 정보이용료 수익은 과금 및 수납 대행에 따른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전액 CP에게 배분되도록 함

○ CP가 이동사에게 콘텐츠를 공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기타 콘텐츠 관련 수입(정보이용료와 데이터통화료 제외)은 "갑"이 "을"에게 정산하여 정보제공료로 지급하되, 정보제공료를 월정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

마. 콘텐츠에 대한 권리 등(제14조)

○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일방 당사자에 의한 콘텐츠에 대한 권리의 부당한 탈취를 방지함
- "을"이 제작한 모바일콘텐츠에 대한 권리는 "을"이 갖는 것으로 원칙으로 정하되,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개발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이를 직접 개발한 당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정함

바. 마케팅(제19조)

○ 홍보와 마케팅에 있어서 "갑"과 "을"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 모바일 콘텐츠 마케팅을 실시하되 상대방의 마케팅을 부당하게 강제하지 않도록 원칙을 정함. 또한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모바일 콘텐츠 공동 마케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부담 방식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마케팅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고객정보 등을 관련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갑"이 "을"에게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함

4. 부문별 표준계약서 : 불임

- (1) 디지털콘텐츠(포털 일반) 공급표준계약서
- (2) 디지털콘텐츠(음악) 공급표준계약서
- (3) 디지털콘텐츠(영상) 공급표준계약서
- (4) 디지털콘텐츠(이러닝) 공급표준계약서
- (5) 디지털콘텐츠(모바일) 공급표준계약서

디지털콘텐츠(포털 일반) 공급표준계약서

온라인콘텐츠서비스사업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온라인콘텐츠제공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온라인 서비스 사업에 필요한 디지털콘텐츠 제공과 관련하여 상호간의 업무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온라인 서비스 사업을 위하여 “갑”에게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고, “갑”은 그 대가로서 “을”에게 정보제공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련 업무 및 절차, 분쟁발생시 그 해결의 기준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해석한다.

1. ‘디지털콘텐츠’ (이하 ‘콘텐츠’라 한다)라 함은 부호·문자·음성·영상·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한다.
2. ‘서비스’라 함은 “갑”이 온라인상 접속 가능한 단말기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시스템’이라 함은 서비스를 위하여 “갑” 또는 “을”이 혹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개발·구축하여 운영하는 서버 및 홈페이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 ‘정보제공료’라 함은 “을”이 “갑”에게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취득하는 대가를 말하며, ‘정보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콘텐츠를 이용한 대가로서 “갑”에게 납부해야 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자’라 함은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 또는 서비스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콘텐츠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배출액’이라 함은 “갑”이 이용자에게 청구한 정보이용료 등 “을”이 제공한 콘텐츠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합계를 말한다.

제3조 [“갑”의 의무] ① “갑”은 본 계약에 의하여 “을”로부터 제공받은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을”에게 정보제공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②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의 비용 및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 ③ “갑”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갑”의 자회사 또는 특수 관계에 있는 사업자와 “을”을 거래조건의 지원 등에 있어서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제4조 [“을”의 의무] ① “을”은 서비스의 이용범위 내에서 “갑”에게 콘텐츠를 사용하도록 허락한다. 이때, “을”이 “갑”에게 제공한 콘텐츠 목록은 부속서에 별첨한다.

- ② “을”은 “갑”에게 제공하는 콘텐츠를 서비스에 적합한 형태로 편집, 가공하는 일체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때 “을”이 저작권자가 아닌 경우 “을”은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갑”은 “을”과 사전협의 후 서비스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콘텐츠를 편집, 가공할 수 있다.

③ “을”은 “갑”에게 제공하는 콘텐츠 중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갑”과 “을”이 협의한 콘텐츠의 경우,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콘텐츠의 업데이트가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데이트

수준을 벗어나서 “을”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협의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그 업데이트 비용을 지급한다.

- ④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을”의 비용 및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제5조 [서비스의 범위 및 정보이용료] ① “갑”의 서비스는 부속서에 정해진 범위에 한한다. 단, “갑”이 제3의 매체 혹은 서비스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을”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제1항에서의 매체별 서비스 제공시기에 대해서는 “을”의 동의를 얻어 “갑”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이용자에 대한 정보이용료는 상호협의로 정한다.

제6조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① 양 당사자는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의 개발 및 구축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된 내용에 따라 각자의 비용과 책임 하에 자신의 시스템을 개발, 구축하여야 하며, 그 운영과 유지보수에 대하여 각각 책임을 부담한다.

- ② 시스템 장애에 의하여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장애원인, 복구 예정일시 및 복구책임자 등을 지체 없이 타방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복구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개발·구축·유지보수 등과 관련하여 “갑”과 “을”이 상호 분담할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부속서에 별첨한다.

제7조 [비밀유지] ① “갑”과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업무상 제공받은 자료와 부수적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모든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계약의 목적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의무는 계약 종료 후 ___년 간 유효하다.

제8조 [계약기간 및 갱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___년(월)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의 만료 1개월 전까지 양 당사자에 의한 계약종료 또는 계약조건의 변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계약은 1회에 한하여 동일한 기간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계약내용의 변경] “갑”과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라이선스] “갑”이 본 계약에 의하여 “을”로부터 취득하는 권리는 콘텐츠를 온라인 방식으로 서비스하기 위하여 콘텐츠를 복제, 전송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단, 기타 권리 및 사용범위 등은 부속서에 정한다.

제11조 [권리 및 보충] ① “을”은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갑”은 본 계약의 범위 내에서 사용 권리를 가진다.

- ② “을”은 “갑”에게 공급한 콘텐츠가 타인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음을 보증한다.

제12조 [권리의 양도] “을”은 본 계약상의 “갑”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콘텐츠에 관한 지적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저작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침해금지 및 예방] ① “갑”은 제3자가 본 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을”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갑”은 “을”로 하여금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제기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이 제1항의 소송을 할 경우 증거수집 및 기타 소송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해야 하며, 필요시 그 소송비용 및 법률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명예훼손 및 브랜드가치 저해 방지] “갑”과 “을”은 상호 이익을 위하여 거래하며, 본 계약상 콘텐츠의 공급 및 이용과 관련하여 어느 일방이 타방의 명예 및 브랜드가치 혹은 저작권권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기술적 보호조치] “갑”과 “을”은 “을”의 콘텐츠에 대한 권리 및 “갑”의 서비스권리를 상호 보호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콘텐츠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정보제공료] ① “갑”은 “을”의 콘텐츠 매출액의 ____%를 “을”이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매월 콘텐츠에 관한 실적 데이터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매출액과 상관없이 월정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7조 [정산방법 등] ① “갑”은 “을”의 콘텐츠를 서비스한 해당 월을 기준으로 익월 ____일까지 “을”에게 정산자료를 통보하고, “을”은 정산서를 받은 후 ____일 이내에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갑”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____일 이내에 “을”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정산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② “갑”이 “을”과 계약체결 이전에 “을”의 콘텐츠를 사용한 경우 “갑”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____일 이내에 사전 사용분에 대한 정산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____일 이내에 정산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③ “갑”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산액의 입금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따라 연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갑”과 “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익금 정산자료의 허위작성, 매출의 누락, 상호간의 승인여 없는 서비스의 제공, 매출증가를 위한 허위이용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계약기간 동안 제공된 콘텐츠 매출액 중 타방 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배를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⑤ “을”은 콘텐츠에 대한 서비스 통계 및 정산자료를 조회할 목적으로만 “갑”의 서비스 관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으며, 관리시스템 보안과 관련한 “갑”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해당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갑”은 “을”과 협의하여 서비스 관리시스템 접근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⑥ “갑”과 “을”은 이 계약상의 정산을 위하여 ‘디지털콘텐츠 거래사실인증제도’를 합의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 [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2.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이 서면으로 그 이행을 요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당사자 일방이 부도,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을 이유로 하여 정상적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4. “을”이 제공한 콘텐츠의 하자 등이 발생하여 “갑”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갑”의 서비스 지연, 오류 등이 발생하여 “을”이 월 2회 이상 또는 계약기간 동안 누적하여 3회 이상 시정요구를 하게 된 경우
6. 기타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해하는 등 본 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본조에 따른 해지의 효력은 이미 발생한 권리관계 및 일방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9조 [서비스 중단 등] ① “갑” 또는 “을”은 서비스 개시후 ____개월 동안 월 평균 매출액이 ____이하이거나 콘텐츠이용량이 ____이하일 경우에는 서비스 혹은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갑”과 “을”은 서비스 화면상 콘텐츠의 배치,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로 “갑” 또는 “을”이 서비스 일부의 공급을 중단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비율에 따라 정보제공료를 감액할 수 있다.

제20조 [계약종료의 효과]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갑”은 즉시 콘텐츠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을”를 “반환하여야 하며, “을”의 모든 콘텐츠 내용을 폐기·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권원을 가진 이용자가 “을”의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손해배상] ①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인하여 타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3자가 “을”이 제공한 콘텐츠에 대하여 지적재산권 주장, 이의제기 또는 소제기 등을 하는 경우, “갑”은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 [불가항력] “갑” 또는 “을”은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폭동,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발생시킨 의무불이행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할 수 있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제24조 [통지] 본 계약상 양당사자의 타방 당사자에 대한 일체의 통지, 통고 등은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의 주소로 우편, 전자문서 등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양당사자는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계약의 유보조항]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당사자들은 상기 모든 조항을 확인한 후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대표자의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소:

성명: (인)

을

주소:

성명: (인)

<첨부>

1. 부속서

디지털콘텐츠(음악) 공급표준계약서

온라인음악콘텐츠서비스사업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음악콘텐츠제공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온라인 서비스 사업에 필요한 음악콘텐츠 제공과 관련하여 상호간의 업무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온라인 서비스 사업을 위하여 "갑"에게 음악콘텐츠를 제공하고, "갑"은 그 대가로서 "을"에게 정보제공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 관련 업무 및 절차, 분쟁발생시 그 해결의 기준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해석한다.

1. "음악콘텐츠(이하 "콘텐츠"라 한다)라 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음반과 음악파일 및 음악콘텐츠 관련 앨범 이미지,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파일 등을 포함한다.
2. '서비스'라 함은 "갑"이 온라인상 접속 가능한 단말기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제공료'라 함은 "을"이 "갑"에게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취득하게 되는 대가를 말하며, '정보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콘텐츠를 이용한 대가로서 "갑"에게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 또는 서비스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콘텐츠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배출액'이라 함은 "갑"이 이용자에게 청구한 정보이용료 등 "을"이 제공한 콘텐츠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합계를 말한다.
6.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이하 "징수규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원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의 신작관리저작물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산정 및 징수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규정을 말한다.
7. '관리콘텐츠'라 함은 최종 이용자가 이용하는 콘텐츠 중 "을"이 관리하고 있는 콘텐츠를 말한다.

제3조 ["갑"의 의무] ① "갑"은 본 계약에 의하여 "을"로부터 제공받은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을"에게 정보제공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이용자의 청약철회권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콘텐츠의 미리듣기

등 사용상품의 제공 및 일부 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하기 위하여 "을"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의 비용 및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제4조 ["을"의 의무] ① "을"은 서비스의 이용범위 내에서 "갑"에게 콘텐츠를 사용할도록 허락한다. 이때, "을"이 "갑"에게 제공한 콘텐츠 목록은 부속서에 별첨한다.

② "을"은 "갑"이 서비스의 적합한 범위 내에서 콘텐츠를 편집, 가공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에게 제공하는 콘텐츠 중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갑"과 "을"이 협의한 콘텐츠의 경우,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콘텐츠의 업데이트가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데이트 수준을 벗어나서 "을"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협의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그 업데이트 비용을 지급한다.

④ "을"은 특별한 사정으로 본 계약상 콘텐츠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거나 중단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을"의 비용 및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⑥ "을"이 저작권자가 아닌 경우 제3조 제2항 및 동조 제2항과 관련하여 "을"은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 [사용허락의 범위] ① "갑"의 콘텐츠의 사용은 아래에 정해진 범위에서만 한다.

사이트명 또는 서비스명					
서비스기간					
서비스지역					
서비스형태	서비스개시일	기간/곡수	서비스가격	DRM유무	
스트리밍서비스					
다운로드 서비스	곡당				
	기간제한				
	곡수제한				
	무제한 월정액				
통합 서비스	기타				
	기간제한				
	곡수제한				
배경음악 서비스					
기타					

② "갑"은 "관리콘텐츠"를 전항에 명시된 사용허락범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할 경우에는 "을"에게 사전동의를 통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6조 [비밀유지] ① "갑"과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업무상 제공받은 자료와 부수적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모든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계약의 목적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의무는 계약 종료 후 2년 간 유효하다.

제7조 [계약기간 및 갱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____년(월)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의 만료 1개월 전까지 양 당사자에 의한 계약 종료 또는 계약조건의 변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계약은 1회에 한하여 동일한 기간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8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체결당시에 상호 예상하지 못한 사안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본 계약사항의 일부조항을 변경하거나 별도의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과 합의하여 서면으로 본 계약을 수정 및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라이선스] "갑"이 본 계약에 의하여 "을"로부터 취득하는 권리는 콘텐츠를 온라인 방식으로 서비스하기 위하여 콘텐츠를 복제, 전송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단, 기타 권리 및 사용범위 등은 부속서에 정한다.

제10조 [권리 및 보충] ① "을"은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갑"은 본 계약의 범위 내에서 사용권리를 가진다.

② "을"은 "갑"에게 공급한 콘텐츠가 타인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음을 보증한다. 다만, "갑"이 이를 보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저작인격권 침해의 책임] "갑"은 관리콘텐츠를 사용함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저작자와 실연자에 한함)을 침해하거나,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제12조 [권리의 양도] "을"은 본 계약상의 "갑"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콘텐츠에 기한 지적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저작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침해금지 및 예방] ① "갑"은 제3자가 본 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을"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갑"은 "을"로 하여금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제기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이 제1항의 소송을 할 경우 증거수집 및 기타 소송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해야 하며, 필요시 그 소송비용 및 법률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기술적 보호조치] "갑"과 "을"은 "을"의 콘텐츠에 대한 권리 및 "갑"의 서비스권리를 상호 보호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콘텐츠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제15조 [정보제공료] ① "갑"은 "을"의 콘텐츠를 서비스한 해당 월을 기준으로 익월__일까지 "을"에게 정산자료를 통보하고, "을"은 정산서를 받은 후__일 이내에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갑"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__일 이내에 "을"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정산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② "갑"이 "을"에게 지급해야 하는 정보제공료에 관한 상세한 산정기준 등은 해당 "정수규정"을 참조하여 부속서에 정한다.(저작권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실연자는 한국음악신연자연협회, 음반제작자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의 정수규정을 참조한다.)

③ "갑"이 제1항에 따른 정산액의 입금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따라 연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갑"과 "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익금 정산자료의 허위작성, 매출의 누락, 상호간의 승인인 없는 서비스의 제공, 매출증가를 위한 허위이용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타방 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배를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⑤ "을"은 콘텐츠에 대한 서비스 통계 및 정산자료를 조회할 목적으로만 "갑"의 서비스 관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으며, 관리시스템 보안과 관련한

"갑"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해당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갑"은 "을"과 협의하여 서비스 관리시스템 접근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⑥ "갑"과 "을"은 계약상의 정산을 위하여 '디지털콘텐츠 거래사실인증제도'를 합의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 [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2.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이 서면으로 그 이행을 요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당사자 일방이 부도,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을 이유로 하여 정상적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4. "을"이 제공한 콘텐츠의 하자 등이 발생하여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갑"의 서비스 지연, 오류 등이 발생하여 월 2회 이상 또는 계약기간동안 누적하여 3회 이상 시정요구를 하게 된 경우
6. 기타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해하는 등 본 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본조에 따른 해지의 효력은 이미 발생한 권리관계 및 일방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7조 [서비스 제공의 중단 등] ① "을"이 본 계약상 제공하는 콘텐츠의 구성 및 수량은 상호 협의의 하에 정하되 "을"은 제공이 가능한 최대한의 콘텐츠를 제공하여야 한다. 콘텐츠의 구성 및 수량은 상호 협의의 하에 추후 변경 및 추가될 수 있다.

② "을"은 콘텐츠의 원활한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갑"에게 콘텐츠 서비스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을"과 협의의 하에 이를 최대한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삭제한다. "을"은 "갑"에게 청소년유해물 등에 대한 삭제요청을 할 수 있고, "갑"에게 '주의' 조치를 전달할 수 있으며 주의 조치가 3회 이상 누적될 경우에는 "갑"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19세 이상의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예외로 한다.

④ "을"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콘텐츠에 대한 판매가격의 변경 혹은 유/무료 전환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을"은 사전에 "갑"과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갑"의 서비스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갑"은 이를 불허할 수 있으며, 동의 없는 변경/전환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18조 [계약종료의 효과]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갑"은 즉시 콘텐츠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을"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을"의 모든 콘텐츠 내용을 폐기·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권원을 가진 이용자가 "을"의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손해배상] ①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인하여 타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3자가 "을"이 제공한 콘텐츠에 대하여 지적재산권 주장, 이익제기 또는 소제기 등을 하는 경우, "갑"은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 [불가항력] “갑” 또는 “을”은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폭동,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발생시킨 의무불이행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할 수 있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제22조 [통지] 본 계약상 양당사자의 타방 당사자에 대한 일체의 통지, 통고 등은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의 주소로 우편, 전자문서 등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양당사자는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계약의 유보조항]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당사자들은 상기 모든 조항을 확인한 후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대표자의 서명날인 후 각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소:
성명: (인)

을
주소:
성명: (인)

<첨부>

1. 부속서

디지털콘텐츠(영상) 공급표준계약서

온라인영상콘텐츠서비스사업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영상콘텐츠제공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온라인 서비스 사업에 필요한 영상콘텐츠 제공과 관련하여 상호간의 업무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온라인 서비스용 영상콘텐츠를 제공하고, “갑”은 그 대가로서 “을”에게 정보제공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련 업무 및 절차, 분쟁발생 시 해결의 기준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해석한다.

1. ‘영상콘텐츠’ (이하 ‘콘텐츠’라 한다)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부호·문자·음성·영상·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연속적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으며 송수신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서비스’라 함은 “갑”이 온라인상 접속 가능한 단말기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시스템’이라 함은 서비스를 위하여 “갑” 또는 “을”이 혹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개발·구축하여 운영하는 서버 및 홈페이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 또는 서비스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콘텐츠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정보제공료’라 함은 “을”이 “갑”에게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취득하는 대가를 말하며, ‘정보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콘텐츠를 이용한 대가로서 “갑”에게 납부해야 하는 요금을 말한다.
6. ‘배출액’이라 함은 “갑”이 이용자에게 청구한 정보이용료 등 “을”이 제공한 콘텐츠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합계를 말한다.

제3조 [“갑”의 의무] ① “갑”은 본 계약에 의하여 “을”로부터 제공받은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을”에게 정보제공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②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의 비용 및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 ③ “을”은 자신이 제작한 콘텐츠에 광고를 삽입할 수 있으며, “갑”과 “을”과의 협의를 통하여 “을”이 제공한 콘텐츠에 광고를 유지할 수 있다.
- ④ “갑”은 이용자의 청약철회권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영상콘텐츠의 미리보기 등 사용상품의 제공 및 일부 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하기 위하여 “을”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을”의 의무] ① “을”은 서비스의 이용범위 내에서 “갑”에게 콘텐츠를 사용하도록 허락한다. 이때, “을”이 “갑”에게 제공한 콘텐츠 목록은 부속서에 별첨한다.

- ② “을”은 “갑”에게 제공하는 콘텐츠를 서비스에 적합한 형태로 편집, 가공하는 일체의 업무를 담당한다. 단, “갑”은 “을”과 사전협의 후 서비스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콘텐츠를 편집, 가공할 수 있다.
- ③ “을”은 “갑”에게 제공하는 콘텐츠 중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갑”과 “을”이 협의한 콘텐츠의 경우,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콘텐츠의 업데이트가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데이트 수준을 벗어나서 “을”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협의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그 업데이트 비용을 지급한다.
- ④ “을”은 특별한 사정으로 본 계약상 콘텐츠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거나 중단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을”은 “갑”에게 제공하는 콘텐츠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필하였거나 등급허가 기준에 충족하였으며, 타인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음을 보증한다.
- ⑥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을”의 비용 및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 ⑦ “을”이 저작권자가 아닌 경우 제3조 제4항 및 동조 제2항과 관련하여 “을”은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 [서비스의 범위 및 정보이용료] ① “갑”의 서비스는 부속서에 정해진 범위에 한한다. 단, “갑”이 제3의 매체 혹은 서비스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을”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갑”은 콘텐츠를 제공함에 있어서 그 제공방식에 대해서 “을”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의 매체별 서비스 제공시기에 대해서는 “을”의 동의를 얻어 “갑”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④ 이용자에 대한 정보이용료는 상호협의로 정한다.

제6조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① 원칙적으로 콘텐츠의 유통과 관련된 시스템의 개발·구축·운영은 “갑”이, 콘텐츠제작과 관련된 설비는 “을”이 구축·운영한다.

② 시스템 장애에 의하여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갑”은 장애원인, 복구 예정일시 및 복구책임자 등을 지체 없이 “을”에게 통보하고 복구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유지] ① “갑”과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업무상 제공받은 자료와 부수적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모든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계약의 목적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의무는 계약 종료 후 ____년 간 유효하다.

제8조 [계약기간 및 갱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____년(월)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의 만료 1개월 전까지 양 당사자에 의한 계약 종료 또는 계약조건의 변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계약은 1회에 한하여 동일한 기간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계약내용의 변경] “갑”과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라이선스] “갑”이 본 계약에 의하여 “을”로부터 취득하는 권리는 콘텐츠를 온라인 방식으로 서비스하기 위하여 콘텐츠를 복제, 전송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단, 기타 권리 및 사용범위 등은 부속서에 정한다.

제11조 [권리 및 보증] ① “을”은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갑”은 본 계약의 범위 내에서 사용권리를 가진다.

② “을”은 “갑”에게 공급한 콘텐츠가 타인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음을 보증한다.

제12조 [권리의 양도] “을”은 본 계약상의 “갑”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콘텐츠에 관한 지적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저작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침해금지 및 예방] ① “갑”은 제3자가 본 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을”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갑”은 “을”로 하여금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제기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이 제1항의 소송을 할 경우 증거수집 및 기타 소송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해야 하며, 필요시 그 소송비용 및 법률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명예훼손 및 브랜드가치 저해 방지] “갑”과 “을”은 상호 이익을 위

하여 거래하며, 본 계약상 콘텐츠의 공급 및 이용과 관련하여 어느 일방이 타방의 명예 및 브랜드가치 혹은 저작권권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기술적 보호조치] “갑”과 “을”은 “을”의 콘텐츠에 대한 권리 및 “갑”의 서비스권리를 상호 보호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콘텐츠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정보제공료] ① “갑”은 “을”의 콘텐츠 매출액의 ____%를 “을”이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매일 콘텐츠에 관한 실적 데이터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매출액과 상관없이 월정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7조 [정산방법 등] ① “갑”은 “을”의 콘텐츠를 서비스한 해당 월을 기준으로 익월 ____일까지 “을”에게 정산자료를 통보하고, “을”은 정산서를 받은 후 ____일 이내에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갑”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____일 이내에 “을”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정산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② “갑”이 “을”과 계약체결 이전에 “을”의 콘텐츠를 사용한 경우 “갑”은 계약체결일로부터 ____일 이내에 사전 사용분에 대한 정산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____일 이내에 정산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③ “갑”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산액의 입금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따라 연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갑”과 “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익금 정산자료의 허위작성, 매출의 누락, 상호간의 승인이 없는 서비스의 제공, 매출증기를 위한 허위이용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계약기간 동안 제공된 콘텐츠 매출액 중 타방 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배를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⑤ “을”은 콘텐츠에 대한 서비스 통계 및 정산자료를 조회할 목적으로만 “갑”의 서비스 관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으며, 관리시스템 보안과 관련한 “갑”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해당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갑”은 “을”과 협의하여 서비스 관리시스템 접근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⑥ “갑”과 “을”은 이 계약상의 정산을 위하여 ‘디지털콘텐츠 거래사실인증제도’를 합의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 [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2.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이 서면으로 그 이행을 요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당사자 일방이 부도,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을 이유로 하여 정상적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4. “을”이 제공한 콘텐츠의 하자 등이 발생하여 “갑”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갑”의 서비스 지연, 오류 등이 발생하여 “을”이 월 2회 이상 또는 계약기간 동안 누적하여 3회 이상 시정요구를 하게 된 경우
6. 기타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해하는 등 본 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본조에 따른 해지의 효력은 이미 발생한 권리관계 및 일방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9조 [서비스 제공의 중단 등] ① “을”이 본 계약상 제공하는 콘텐츠의 구성 및 수량은 상호 협의 하에 정해지되 “을”은 제공이 가능한 최대한의 콘텐츠를 제공하여야 한다. 콘텐츠의 구성 및 수량은 상호 협의 하에 추후 변경 및

추가될 수 있다.

② “을”은 콘텐츠의 원활한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갑”에게 콘텐츠 서비스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을”과 협의 하에 이를 최대한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삭제한다. “을”은 “갑”에게 청소년유해물 등에 대한 삭제요청을 할 수 있고, “갑”에게 주의 조치를 전달할 수 있으며 주의 조치가 3회 이상 누적될 경우에는 “갑”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19세 이상의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예외로 한다.

④ “을”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콘텐츠에 대한 판매가격의 변경 혹은 유/무료 전환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을”은 사전에 “갑”과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갑”의 서비스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갑”은 이를 불허할 수 있으며, 동의 없는 변경/전환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20조 [계약종료의 효과]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갑”은 즉시 콘텐츠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을”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을”의 모든 콘텐츠 내용을 폐기·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권원을 가진 이용자가 “을”의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손해배상] ①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인하여 타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3자가 “을”이 제공한 콘텐츠에 대하여 지적재산권 주장, 이의제기 또는 소제기 등을 하는 경우, “갑”은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 [불가항력] “갑” 또는 “을”은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폭동,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발생시킨 의무불이행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할 수 있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제24조 [통지] 본 계약상 양당사자의 타방 당사자에 대한 일체의 통지, 통고 등은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의 주소로 우편, 전자문서 등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양당사자는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계약의 유보조항]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당사자들은 상기 모든 조항을 확인한 후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대표자의 서명날인 후 각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소:

성명:(인)

을

주소:

성명:(인)

<첨부>

1. 부속서

디지털콘텐츠(이러닝) 공급표준계약서

이러닝 콘텐츠 서비스사업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러닝콘텐츠 제공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온라인 서비스 사업에 필요한 이러닝콘텐츠 제공과 관련하여 상호간의 업무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온라인 교육용 콘텐츠(이하 “이러닝콘텐츠”라 한다)를 제공하고, “갑”은 그 대가로서 “을”에게 정보제공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련 업무 및 절차, 분쟁발생시 그 해결의 기준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해석한다.

1. '이러닝콘텐츠' (이하 '콘텐츠'라 한다)라 함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이러닝과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말한다.
2. '서비스'라 함은 “갑”이 온라인상 접속 가능한 단말기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부가서비스'라 함은 콘텐츠와 관련된 각종 학습 및 정보자료 제공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시스템'이라 함은 서비스를 위하여 “갑” 또는 “을”이 혹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개발·구축하여 운영하는 서버 및 홈페이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5. '이용자'라 함은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 또는 서비스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콘텐츠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정보제공료'라 함은 “을”이 “갑”에게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취득하는 대가를 말하며, '정보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콘텐츠를 이용한 대가로서 “갑”에게 납부해야 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배출액'이라 함은 “갑”이 이용자에게 청구한 정보이용료 등 “을”이 제공한 콘텐츠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합계에서 강사료, 카드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갑”의 의무] ① “갑”은 본 계약에 의하여 “을”로부터 제공받은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을”에게 정보제공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갑”이 본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이행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운영시스템 및 네트워크 환경 등 ‘서비스’ 환경 마련
2. 교육과정운영 및 회원불만 접수/처리
3. 홍보 및 마케팅

②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의 비용 및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이용자의 청약철회권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콘텐츠의 미리사용 등 사용상품의 제공 및 일부 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하기 위하여 “을”과 협의하여야 한다. 만일 “을”이 저작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을”은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조 [“을”의 의무] ① “을”이 본 계약에 의하여 “갑”에게 이행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콘텐츠 제공. 콘텐츠 목록은 부속서에 별첨함
2. 콘텐츠 유지보수 및 “갑”의 개선 요청사항 처리
3.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는 학습 장애요소 및 불만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
4. 콘텐츠 내용과 관련된 학습자의 질문사항 처리

②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을”의 비용 및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제5조 [서비스의 범위 및 정보이용료] ① “갑”의 서비스는 부속서에 정해진 범위에 한한다. 단, “갑”이 제3의 매체 혹은 서비스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을”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서의 매체별 서비스 제공시기에 대해서는 “을”의 동의를 얻어 “갑”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이용자에 대한 정보이용료는 상호협의로 정한다.

제6조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① 양 당사자는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의 개발 및 구축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된 내용에 따라 각각의 비용과 책임 하에 자신의 시스템을 개발, 구축하여야 하며, 그 운영과 유지보수에 대하여 각각 책임을 부담한다.

② 시스템 장애에 의하여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장애인, 복구 예정일시 및 복구책임자 등을 지체 없이 타방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복구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개발·구축·유지보수 등과 관련하여 “갑”과 “을”이 상호 분담할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부속서에 별첨한다.

제7조 [비밀유지] ① “갑”과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업무상 제공받은 자료와 부수적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모든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계약의 목적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의무는 계약 종료 후 ____년간 유효하다.

제8조 [계약기간 및 갱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____년(월)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의 만료 1개월 전까지 양 당사자에 의한 계약종료 또는 계약조건의 변경에 대한 의사표시가 A_한, 본 계약은 1회에 한하여 동일한 기간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계약내용의 변경] “갑”과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변경하지

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하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라이선스] “갑”이 본 계약에 의하여 “을”로부터 취득하는 권리는 콘텐츠를 온라인 방식으로 서비스하기 위하여 콘텐츠를 복제, 전송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단, 기타 권리 및 사용범위 등은 부속서에 정한다.

제11조 [권리 및 보증] ① “을”은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갑”은 본 계약의 범위 내에서 사용권리를 가진다.

② “을”은 “갑”에게 공급한 콘텐츠가 타인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음을 보증한다.

제12조 [권리의 양도] “을”은 본 계약상의 “갑”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콘텐츠에 기한 지적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저작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침해금지 및 예방] ① “갑”은 제3자가 본 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을”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갑”은 “을”로 하여금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제기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이 제1항의 소송을 할 경우 증거수집 및 기타 소송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해야 하며, 필요시 그 소송비용 및 법률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명예훼손 및 브랜드가치 저해 방지] “갑”과 “을”은 상호 이익을 위하여 거래하며, 본 계약상 콘텐츠의 공급 및 이용과 관련하여 어느 일방이 타방의 명예 및 브랜드가치 혹은 저작인격권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기술적 보호조치] “갑”과 “을”은 “을”의 콘텐츠에 대한 권리 및 “갑”의 서비스권리를 상호 보호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콘텐츠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정보제공료] ① “갑”은 “을”의 콘텐츠 매출액의 ____%를 “을”이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매월 콘텐츠에 관한 실적 데이터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매출액과 상관없이 월정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7조 [정산방법 등] ① “갑”은 “을”의 콘텐츠를 서비스한 해당 월을 기준으로 익월 ____일까지 “을”에게 정산자료를 통보하고, “을”은 정산서를 받은 후 ____일 이내에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갑”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____일 이내에 “을”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정산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② “갑”이 “을”과 계약체결 이전에 “을”의 콘텐츠를 사용한 경우 “갑”은 계약체결일로부터 ____일 이내에 사전 사용분에 대한 정산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____일 이내에 정산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③ “갑”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산액의 입금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따라 연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갑”과 “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익금 정산자료의 허위작성, 매출의 누락, 상호간의 승인이 없는 서비스의 제공, 매출증가를 위한 허위이용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계약기간 동안 제공된 콘텐츠 매출액 중 타방 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배를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⑤ “을”은 콘텐츠에 대한 서비스 통계 및 정산자료를 조회할 목적으로만 “갑”의 서비스 관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으며, 관리시스템 보안과 관련한

“갑”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해당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갑”은 “을”과 협의하여 서비스 관리시스템 접근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⑥ “갑”과 “을”은 이 계약상의 정산을 위하여 ‘디지털콘텐츠 거래사실인증 제도’를 합의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 [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2.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이 서면으로 그 이행을 요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당사자 일방이 부도,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을 이유로 하여 정상적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4. “을”이 제공한 콘텐츠의 하자 등이 발생하여 “갑”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갑”의 서비스 지연, 오류 등이 발생하여 “을”이 월 2회 이상 또는 계약기간 동안 누적하여 3회 이상 시정요구를 하게 된 경우
 6. 기타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해하는 등 본 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본조에 따른 해지의 효력은 이미 발생한 권리관계 및 일방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9조 [교육과정의 폐강] ① “갑”은 본 계약상의 교육과정 중 동일수준의 다른 교육과정에 비해 매출액이 ____% 이하이거나, 월별 교육생 수가 ____% 이하인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해당 과정을 폐강할 수 있다.

② “갑”은 “콘텐츠” 품질이나 시스템상의 문제로 인한 동일한 불만사항이 다수의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경우 “을”과 협의하여 해당 과정을 폐강할 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사유로 “갑”이 서비스의 일부 공급을 중단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비율에 따라 정보제공료를 감액할 수 있다.

제20조 [계약종료의 효과]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갑”은 즉시 콘텐츠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을”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을”의 모든 콘텐츠 내용을 폐기·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권원을 가진 이용자가 “을”의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손해배상] ①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인하여 타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3자가 “을”이 제공한 콘텐츠에 대하여 지적재산권 주장, 이의제기 또는 소제기 등을 하는 경우, “갑”은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 [불가항력] “갑” 또는 “을”은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폭동,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발생시킨 의무불이행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할 수 있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제24조 [통지] 본 계약상 양당사자의 타방 당사자에 대한 일체의 통지, 통고 등은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의 주소로 우편, 전자문서 등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양당사자는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계약의 유보조항]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당사자들은 상기 모든 조항을 확인한 후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대표자의 서명날인 후 각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소:

성명: (인)

을

주소:

성명: (인)

<첨부>

1. 부속서

디지털콘텐츠(모바일) 공급표준계약서

이동통신사업자(이하 “갑”이라한다)와 모바일콘텐츠사업자(이하 “을”이라한다)는 모바일서비스 사업에 필요한 모바일 콘텐츠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의성실로서 이를 이행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모바일콘텐츠(이하 “콘텐츠”라 한다) 서비스를 위하여 “갑”에게 콘텐츠를 제공하고, “갑”이 정보이용료 수익과 정보제공료를 “을”에게 지급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련 업무 및 절차, 분쟁발생시 그 해결의 기준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해석한다.

1. “이동통신사업자”란 이용자가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선 네트워크, 모바일 포털 등의 콘텐츠 유통을 위한 설비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2. “모바일콘텐츠사업자”란 콘텐츠를 이동통신사업자의 모바일 포털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3. “시스템”이라 함은 서비스를 위하여 “갑” 또는 “을”이 혹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개발·구축하여 운영하는 서버 및 모바일 포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 “정보이용료”란 이용자가 “을”의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거나 이용한 대가로 해당 콘텐츠에 별도로 부과되는 금액을 말하며, 데이터통화료와는 별도로 부과되는 금액을 말한다.
5. “정보제공료”라 함은 “을”이 “갑”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대가로 정보이용료 이외에 “갑”이 “을”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제3자”란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보유하자, 해당 권리를 위탁받은 자, “갑” 이외의 콘텐츠 유통 및 제작과 관련된 설비 또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 등을 뜻한다.
7. “MCP(Master-CP)”란 “갑”의 콘텐츠 매뉴구성, 마케팅 등을 지원하거나 대행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8. “이용자”라 함은 “갑”의 모바일 포털에 접속하여 본 계약에 따라 “갑”이 제공하는 “콘텐츠” 및 제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9. “기타 콘텐츠 관련 수입”이라 함은 “을”이 “갑”에게 콘텐츠를 공급함에 따라 발생한 수입의 합계를 말하며 정보이용료와 데이터통화료는 제외한다.
10. “통신회선”이란 모바일콘텐츠 서비스를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와 모바일콘텐츠사업자의 시스템 간에 연결하는 전용회선 또는 인터넷 접속회선을 뜻한다.
11. “콘텐츠(정보)”란 모바일콘텐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공하는 모든 데이터를 뜻한다.

제3조 [“갑”의 의무] ① “갑”은 본 계약에 의하여 “을”로부터 제공받은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정보이용료 수익 정산액 및 정보제공료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이용자의 청약철회권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콘텐츠의 미리사용 등 사용상품의 제공 및 일부 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하기 위하여 “을”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갑”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의 비용 및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④ “갑”은 콘텐츠 관련 시스템 구축방향, 제작비 지원 기준, 매뉴구성 기준, 지원업체(MCP 등) 선정 기준 등 콘텐츠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갑”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익배분의 기준, 비용뿐만 아니라 매뉴노출, 접속경로, 요금제, 설비제공방식 등 거래조건 및 지원에 있어서 “갑”의 자회사 또는 특수 관계에 있는 사업자와 “을”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⑥ “갑”은 “을”이 자기책임 하에 추진하는 콘텐츠 광고주 유치, 타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사업자 등에 대한 콘텐츠제공 등 자율적인 마케팅 활동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약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마케팅으로 인하여 발생한 정보이용료에 대해 추가적인 수익배분을 요구할 수 없다.

제4조 [“을”의 의무] ① “을”은 서비스의 이용범위 내에서 “갑”에게 콘텐츠를 사용하도록 허락한다. 이때, “을”이 “갑”에게 제공한 콘텐츠 목록은 부속서에 별첨한다.

② “을”은 “갑”에게 제공하는 콘텐츠를 서비스에 적합한 형태로 편집, 가공하는 일체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갑”은 “을”과 사전협의 후 서비스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콘텐츠를 편집, 가공할 수 있다.

③ “을”은 “갑”에게 제공하는 콘텐츠 중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갑”과 “을”이 협의한 콘텐츠의 경우,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콘텐츠의 업데이트가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데이트 수준을 벗어나서 “을”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협의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그 업데이트 비용을 지급한다.

④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을”의 비용 및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⑤ “을”이 저작권자가 아닌 경우 제3조 제2항 및 동조 제2항과 관련하여 “을”은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장 시스템 운영 및 통신회선

제5조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① 양 당사자는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의 개발 및 통신회선 구축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된 내용에 따라 각자의 비용과 책임 하에 자신의 시스템 개발 및 통신회선 구축을 하여야 하며, 그 운영과 유지보수에 대하여 각각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원칙적으로 모바일콘텐츠의 유통과 관련된 설비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제작과 관련된 설비는 모바일콘텐츠사업자가 구축·운영·유지보수 한다.

② 통신회선 또는 시스템 장애에 의하여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장애원인, 복구 예정일시 및 복구책임자 등을 지체 없이 상대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복구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스템 및 통신회선 개발·구축·유지보수 등과 관련하여 “갑”과 “을”이 상호 분담할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부속서에 별첨한다.

제3장 서비스 및 수익배분

제6조 [서비스의 범위] “갑”의 서비스는 부속서에 정해진 범위에 한한다. 단, “갑”이 타 매체에 서비스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 [정보이용료 및 수수료 책정] ① 정보이용료 수익규모는 “갑”과 “을”의 계약에 따라 정보이용료 청구액 또는 이용자가 실제 납부한 금액(이하 “수납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갑”이 “을”의 요청에 따라 정보이용료 청구액을 기준으로 수익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정보이용료 미납·채납예상액을 미리 공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이용료 미납·채납예상액은 지난 12개월간의 이동전화 요금 중 미납·채납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이용료 수납액을 기준으로 정보이용료 수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동전화 요금의 최종적인 수납액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정보이용료 수익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갑”이 정보이용료의 과금 및 수납을 대행하는 경우, “을”은 이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수수료는 전체 정보이용료 수익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⑥ “을”이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한 정보이용료의 책정 및 집행에 관한 기타 사항은 “갑”과 “을”의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첨부된 부속서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제8조 [정보이용료 및 정보제공료 정산] ① “갑”은 정보이용료 수익을 전액 “을”에게 지급하되, 정보이용료 과금 및 수납 대행에 따른 수수료 등 ___%를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외되는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부속서에 별첨한다.

② “갑”은 “을”의 기타 콘텐츠관련 수입의 ___%를 정보제공료로 지급키로 한다. 단, 정보제공료를 월정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갑”은 “을”의 콘텐츠를 서비스한 해당 월을 기준으로 익월 ___일까지 “을”에게 정산자료를 통보하고, “을”은 정산서를 받은 후 ___일 이내에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갑”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___일 이내에

“을”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정산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정산자료에는 해당 콘텐츠의 정보이용료 수익, 기타 콘텐츠관련 수입, “갑”·“을”·“제3자”별 정산액, 번호별 수납내역 등이 포함된 자료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을”은 수익배분과 관련된 자료에 이의가 있을 경우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갑”에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번호별 수납내역은 “갑”이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을”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⑤ “갑”이 “을”과 계약체결 이전에 “을”의 콘텐츠를 사용한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을”은 콘텐츠에 대한 서비스 통계 및 정산자료를 조회할 목적으로만 “갑”의 서비스 관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으며, 관리시스템 보안과 관련한 “갑”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해당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갑”은 “을”과 협의하여 서비스 관리시스템 접근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⑦ “갑”과 “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익금 정산자료의 허위작성, 매출의 누락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타방 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배를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⑧ “갑”과 “을”은 이 계약상의 정산을 위하여 디지털콘텐츠 거래사실인증 제도를 합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⑨ 이 밖에 정보이용료 수익배분의 기준에 관하여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모바일 콘텐츠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기타 상관습에 따른다.

제4장 계약기간 및 해지 등

제9조 [계약기간 및 갱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____년(월)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의 만료 1개월 전까지 양 당사자에 의한 계약 종료 또는 계약조건의 변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계약은 1회에 한하여 동일한 기간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계약내용의 변경] “갑”과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2.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이 서면으로 그 이행을 요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당사자 일방이 부도,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을 이유로 하여 정상적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4. “을”이 제공한 콘텐츠의 하자 등이 발생하여 “갑”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갑”의 서비스 지연, 오류 등이 발생하여 “을”이 월 2회 이상 또는 계약기간 동안 누적하여 3회 이상 시정요구를 하게 된 경우
 6. 기타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해하는 등 본 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본조에 따른 해지의 효력은 이미 발생한 권리관계 및 일방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 [계약종료의 효과]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갑”은 즉시 콘텐츠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을”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을”의 모든 콘텐츠 내용을 폐기·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권원을 가진 사용자가 “을”의 콘텐츠

를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장 정보이용의 권리 및 보호

제13조 [라이선스] “갑”이 본 계약에 의하여 “을”로부터 취득하는 권리는 콘텐츠를 모바일로 서비스하기 위하여 콘텐츠를 복제, 전송할 수 있는 권리가 다. 단, 기타 권리 및 사용범위 등은 부속서에 정한다.

제14조 [권리 및 보충] ① “을”은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갑”은 본 계약의 범위 내에서 사용권리를 가진다.

② “을”은 “갑”에게 공급한 콘텐츠가 타인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음을 보증한다.

③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개발된 시스템 및 이와 관련되어 내제된 설계, 규격, 자료, 기술, know-how, 특허권, 실용신안, 콘텐츠 등 모든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은 실제 개발을 담당한 계약 당사자에게 귀속한다.

제15조 [권리의 양도] “을”은 본 계약상의 “갑”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콘텐츠에 기한 지적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저작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침해금지 및 예방] ① “갑”은 제3자가 본 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을”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갑”은 “을”로 하여금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제기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이 제1항의 소송을 할 경우 증거수집 및 기타 소송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해야 하며, 필요시 그 소송비용 및 법률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명예훼손 및 브랜드 가치 저해 방지] “갑”과 “을”은 상호 이익을 위하여 거래하며, 본 계약상 콘텐츠의 공급 및 이용과 관련하여 어느 일방이 타방의 명예 및 브랜드가치 혹은 저작권권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당사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18조 [기술적 보호조치] “갑”과 “을”은 “을”의 콘텐츠에 대한 권리 및 “갑”의 서비스권리를 상호 보호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콘텐츠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기타

제19조 [마케팅] ① “갑”과 “을”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 콘텐츠 마케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마케팅을 부당하게 강제하지 않는다.

② “갑”은 “을”이 콘텐츠 마케팅을 위해 “갑”이 소유하고 있는 정보(고객정보 등)를 요청할 경우 관련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한다.

③ “갑”과 “을”은 협의에 의하여 “갑”이 “을”의 마케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콘텐츠 공동 마케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부담 방식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의 요청에 의해 문자메시지 등 “갑”이

소유한 설비를 활용한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을”에게 부담토록 할 수 없다.

제20조 [비밀유지] ① “갑”과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업무상 제공받은 자료와 부수적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모든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계약의 목적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의무는 계약 종료 후 ___년 간 유효하다.

제21조 [손해배상] ①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인하여 타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3자가 “을”이 제공한 콘텐츠에 대하여 지적재산권 주장, 이의제기 또는 소제기 등을 하는 경우, “갑”은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 [불가항력] “갑” 또는 “을”은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폭동,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발생시킨 의무불이행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할 수 있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제24조 [통지] 본 계약상 양당사자의 타방 당사자에 대한 일체의 통지, 통고 등은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의 주소로 우편, 전자문서 등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양당사자는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계약의 유보조항]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당사자들은 상기 모든 조항을 확인한 후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대표자의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소:
성명: (인)

을
주소:
성명: (인)

<첨부>
1. 부속서

편집위원장 이재용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집필위원장 김진규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정책실 본부장

외부집필진(가나다 순)
강진숙 한국만화영상진흥원 ICC&BICOF 총감독
김병수 우리만화연대 부회장
김승미 일본 히토치바시대학교 강사
김원제 유펠러스연구소 소장
김창현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교수
박강서 포커스컴퍼니 연구원
박석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콘텐츠개발비즈니스팀 수석
박성만 메이븐스퀘어 팀장
박성식 서울국제만화페스티벌(SCIAF) 디렉터
박인하 청강문화산업대학 교수
박호상 한국출판연구소 연구원
서석민 포커스컴퍼니 팀장
이상민 카톨릭대학교 디지털문화연구소 연구원
이용철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산업진흥팀 수석
조병권 서울문화사 만화1팀 팀장
최영철 남서울대학교 교수
한상정 우리만화연대 이사

내부집필진
윤재식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분석팀장
노준석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분석팀 과장(총괄 책임)
유은영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분석팀 주임
배향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분석팀 보조연구원

검수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한국콘텐츠진흥원 창작콘텐츠팀

편집위원장

이재웅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집필위원장

김진규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정책실 본부장

외부집필진(가나다 순)

강진숙 한국만화영상진흥원 ICC&BICOF 총감독
김병수 우리만화연대 부회장
김승미 일본 히토치바사대학교 강사
김원제 유플러스연구소 소장
김창현 청강문화산업대학 교수
박강서 포커스컴퍼니 연구원
박석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콘텐츠개발비즈니스팀 수석
박성만 메이븐스퀘어 팀장
박성식 서울국제만화페스티벌(SCIAF) 디렉터
박인하 청강문화산업대학 교수
박호상 한국출판연구소 연구원
서석민 포커스컴퍼니 팀장
이상민 카톨릭대학교 디지털문화연구소 연구원
이용철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산업진흥팀 수석
조병권 서울문화사 만화팀 팀장
최영철 남서울대학교 교수
한상정 우리만화연대 이사

내부집필진

윤재식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분석 팀장
노준석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분석팀 과장(총괄 책임)
유은영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분석팀 주임
배향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분석팀 보조연구원

검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한국콘텐츠진흥원 창작콘텐츠팀